

영국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21
외교관계 / 23
주한주재 국기관 / 31
한국과의 주요이슈 / 31

II. 경제

경제정책 / 34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35
주요 산업 동향 / 40
정보조사 자료원 / 57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58
무역통계 / 59
투자통계 / 62

IV. 출장가이드

기후 / 63
시차.근무시간 / 63
도량형 / 64
출입국.비자 / 64
환율.환전 / 68
물가정보 / 69
교통.통신 / 72
호텔.식당 / 74
관공서 관행 / 75
공휴일 / 76
여행시 유의사항 / 77
유용한 연락처 / 78
관광명소 / 79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82
수입규제제도 / 83
관세제도 / 87
주요인증제도 / 88
지적재산권 / 95
소비자보호제도 / 96
교역관련 국가기관 / 98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102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5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6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0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108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109
운송 / 117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117
유형별 분쟁사례 / 118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118

우리기업 투자동향 / 119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120

투자인센티브 / 132

타당성조사 / 142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44

입지선정 / 152

공장 설립 / 153

투자관련 정부기관 / 15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55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57

조세제도 / 160

외환관리 / 162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63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 일반 사항

- 국명: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위치: 서부 유럽
- 면적: 242,514 km²
 - 영국의 남북 최장거리는 잉글랜드 최남단에서 스코틀랜드 최북단에 이르기까지의 대략 1,000 km 정도이며, 동서 최장거리는 대략 500 km 임
 -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 위치한 벤 네비스(Ben Nevis)산으로서 높이가 1,343m 이며, 가장 넓은 호수는 노던아일랜드에 위치한 렉네 (Lough Neagh) 호수로서 넓이가 382 km² 임
 - 영국에서 가장 긴 강은 웨일스에서 브리스톨 해협에 이르는 세번(The Severn)강으로서 길이가 354 km 임
 - 영국 본토의 최북단은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던넛 헤드(Dunnet Head)이며, 최남단은 잉글랜드 콘월(Cornwall)에 위치한 리자드 포인트(Lizard Point)임
-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 영국의 기후는 일반적으로 온화한 편임
 - 기온은 일반적으로 최고 영상 32 도 미만이며 최저 영하 10 도 이상을 유지함
 - 봄철은 3 월-5 월이며, 여름은 6 월-8 월, 가을은 9 월-11 월, 그리고 겨울은 12 월-2 월임

인구: 59,834.900 명 (2005 년, 영국 통계청)

	Population	Percent of total UK population
ENGLAND	50,093,800	83.7
WALES	2,952,500	4.9
SCOTLAND	5,078,400	8.5
NORTHERN IRELAND	1,710,300	2.9
UNITED KINGDOM	59,834,900	

- 민족: 앵글로색슨 (Anglo-Saxons)
- 언어: 영어(English) (* Wales 지방인구의 19%는 웨일즈 어 사용)
- 한국과의 시차: 3 월말-10 월말(8 시간, 서머타임), 10 월말-3 월말(9 시간)

환율 (2006 년 8 월 30 일 기준)

화폐단위	원	USD	EUR
1 £	1,825.8	1.9036	1.4844

자료원 : 영국 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영국 은행 (Bank of England)

□ 정치 개요

- 건국일: 450 년(앵글로-색슨 왕국 수립)
-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1952.2.6 즉위)
 - 정식명칭: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 총리(실권자): Tony Blair
 - 1953 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생하였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법대 졸업
 - 1979 년 노동당에 입문하여 1997 년 5 월 1 일 총리 당선
 - 2005 년 5 월 총선 승리로 3 연임 수상 취임

의회제도: 양원제

구분	영문	의석수	비고
상원	House of Lords	674 석	세습(92 석), 종신(558 석), 주교(24 석)
하원	House of Commons	647 석	잉글랜드(529 석), 웨일즈(40 석), 스코틀랜드(60 석), 노던 아일랜드(18 석)

- 정당: 여당(노동당, Labour Party), 야당(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참고: 2005 년 5 월 총선결과

정당	의원수	전체유권자 득표비율(%)
Labour	356	55.0
Conservative	197	30.4
Liberal Democrats	62	9.6
Others	31	4.8
Total	647	100.0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일반 사항

입헌군주제 국가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왕에 귀속되며 국왕은 또한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수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행위는 국왕의 이름 하에 국왕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며, 행정의 책임은 내각 수반인 수상이 맡는다.

여왕은 자문기구로 추밀원(Privy Council)을 두고 있다. 추밀원은 노르만 왕조시절 국왕을 도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던 기구로 18 세기에 내각(the Cabinet)의 틀이 잡히면서 추밀원의 기능도 내각으로 흡수되었는데, 실제로 현 행정부의 일부 부처는 당시 추밀원의 각 위원회(committee)가 발전된 것이다.

추밀원의 자문관은 현재 480 명으로 전현 내각 관료 및 정치가, 법관 그리고 영연방에서 임명된 인물들로 구성되는데, 추밀원의 자문관들은 'Right Honourable' 호칭을 부여 받으며 종신 지위를 유지한다.

나. 국가 조직 및 정치제도

1) 국 왕(Monarchy)

영국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제도(Secular Institution)로서 지난 1 천여 년간 한차례 중단(1649~1660 년간의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치)을 제외하고는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음. 1, 2 차 세계대전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된 이후에는 53 개 영연방 국가들의 상징적 수장(Head of Commonwealth)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6 개 영연방국가의 국가원수이기도 함.

여왕이 국가원수인 영연방 국가에서는 Governor-General, 여타영국 속령에서는 Governor 가 여왕을 대리하여 통치권 행사

국왕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Head of Executive)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고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Supreme Governor)임. 그러나 1215 년의 Magna Carta 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현재에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의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 하에 여왕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국정수행에 있어서 여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여왕은 의회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 외에도 의회 소집·정회·해산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승인, 정부고위관리, 법관, 군 간부, 총독, 외교관 및 주교의 임명과 작위, 훈장의 수여, 사면·감형,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승인 및 조약체결, 영토통합 및 할양행위에 있어서는 여왕의 재가가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권한(Royal Prerogative) 행사에 있어서 여왕은 내각의 권고에 따르게 됨.

○ 현 국왕

-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 1926. 4.21 George VI의 장녀로 런던에서 출생(공식 생일축하행사는 6월 중 거행)
- 1947.11.20 에딘버러 공과 결혼, 3남 1녀를 둠.
- 1952. 2. 6 즉위
- 1953. 6. 2 대관식

< 왕위계승서열 >

1. Prince of Wales(Charles 황태자)
2. William 왕자
3. Henry 왕자
4. York 공(Andrew 왕자)
5. Beatrice 공주
6. Eugenie 공주
7. Edward 왕자
8. Anne 공주

< 영국 내 의전서열 >

1. 여왕
2. 에딘버러 공
3. 왕자(Charles 황태자, Andrew 왕자, Edward 왕자)
4. 공주
5. 캔터베리대주교
6. 상원의장
7. 요크 대주교
8. 수상
9. 추밀원의장
10. 하원의장
11. 국채상서
12. 영연방 고등판무관 및 외국대사
13. 공작
14. 전권공사 및 특사
15. 후작
16. 백작
17. 자작
18. 런던, 더럼, 윈체스터주교
19. 기타주교
20. 남작급 각료
21. 남작
22. 왕실 재무관
23. 왕실 감사관
24. 왕실 부시종장

- 25. 남작급이하 각료
- 26. 가아터 나이트작
- 27. 추밀원위원
- 28. 재무장관
- 29. 내각장관 겸 랑카스터 공
- 30. 잉글랜드대법관
- 31. 항소원 판사

2) 행정부(Government)

○ 추밀원(Privy Council)

-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18 세기까지는 국가 행정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추밀원내 위원회들이 발전되어 구성된 각 정부 부처에 대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되어있음. 오늘날 추밀원의 주요기능은 국왕의 대권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업무와 의회소집 및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 행사에 관해 국왕에게 자문하는 것임. 추밀원 위원(Privy Counsellor)은 수상 추천에 따라 영연방국가의 저명 인사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며, 영국의 각료는 각료임명과 동시에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됨. 현재 추밀원 위원수는 약 400 명으로서 추밀원 총회는 국왕의 사망 또는 결혼 발표 시에만 개최됨. 추밀원 행정사무는 각료인 추밀원의장(Lord President of the Council)이 수행함.

□ 수 상(Prime Minister)

전통에 따라 국왕이 하원 다수당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수상은 재무부 수석장관(First Lord of Treasury)과 공직 장관(Minister for Civil Service)을 겸직함.

행정부 수반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18 세기 이후인 바, 수상의 권위는 하원에서의 다수의 지지확보 및 장관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서 파생됨. 수상은 하원에 의석을 갖는 것이 근대적 전통으로 되어있음.

수상은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국왕에게 보고하며, 각의를 주재하고, 각료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일상 행정업무 외에도 하원 내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하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음.

Blair 수상 취임 이후 수상에 대한 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 시간을 화, 목 15 분씩 주 2 회에서 수요일 30 분 주 1 회로 축소

수상은 영국교회의 주교 등 200 여명의 성직자와 대법원장, 대법관 및 고등 법원판사, 추밀원 위원, 장관 및 BBC 사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을 국왕에게 건의하며, 작위 및 훈장 수여에 관해서도 국왕에게 건의하는 권한을 보유함.

□ 내 각(Cabinet)

○ 구성 및 성격

- 형식상 추밀원의 일부로서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함. 국왕 및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 함.

- 각료 정원 및 업무분장은 추밀원령으로 수시 조정되며, 현재는 수상 포함 21 명임.
- 대부분의 각료는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나 상원의원도 일부 있음.
- 정부부처를 맡고 있는 장관들은 보통 내각의 일원이며, Secretary of State 또는 Minister 로 불리우나 Chancellor of the Exchequer(재무장관)등 전통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 내각에는 또한 추밀원 의장,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Lord Privy Seal 등 전통적 직책을 맡고 있는 장관들도 있으며, 수상은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함.
- 권한 및 기능
 - 정책의 최종 결정, 정부의 최고 통솔기능 및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업무는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 내 관계장관회의(Cabinet Committee)에서 검토되어 각료회의에 상정, 처리됨.
 - 현재의 관계 장관회의는 국방·대외정책(수상이 의장), 경제·생산성, 경쟁력(재무장관이 의장), 반사회적 행위(수상이 의장) 및 이민·망명(수상이 의장) 등이 있음.
- 국무상, 정무차관
 - 많은 부처에서 장관(Secretary of State 등) 밑에 세부업무분장을 위하여 보통 2-4 인의 국무상(Minister of State) 또는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을 두고 있음.

3) 의 회(Parliament)

의회는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3자의 합의가 필요함.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의회는 이론상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의회 제정입법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음. 실제로 있어서는 정당 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입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여론 동향을 의식하며, Common Law 와 관례 및 전통에 따르고 있음.

□ 기 능

입법, 조세를 통한 정부활동 수단제공 및 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 및 협정의 비준 전에 정부의 협의를 받음(조약의 비준은 이론상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시행).

□ 회 기(Session)

- 회기는 보통 1년 단위로 나누어지며 10 월말 ~ 11 월초에 시작됨.
- 매 회기 중 개회기간은 평균 하원 165 일, 상원 150 일 정도임.

- 매 회기 초에 여왕은 상원에 출석하여 정부의 정책 개요 및 회기 중 입법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국정 연설을 행함.
- 각 회기는 정회(Prorogation)로 끝나며 정회 직전 지난 1년간 의회의 업무를 요약하는 여왕의 연설(대독)이 있음.
- 휴회는 미결된 안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회 시에는 미결된 모든 공공 법안은 폐기되며, 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 중에 재 상정 하여야 함.

□ 상 원(House of Lords)

- 구 성: 상원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성직귀족(Lords Spiritual), 세속귀족(Lords Temporal) 및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대법관임)으로 구성되며 이는 종신직임.
 - 성직귀족: 캔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및 기타 주교 26명
 - 세속귀족
 - 세습귀족(Hereditary Peers): 21세 이상의 91명
 - 종신귀족(Life Peers): 세속귀족 중 종신귀족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자를 수상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음.
 -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고용법원 판사중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 귀족
- 권한 및 기능
 - 입법상의 권한
 - 조세 및 재정지출관계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야 하나 1911년 및 1949년의 의회법에 따라 하원은 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이라도 1년을 기다린 후에는 국왕의 재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입법권에 있어서의 하원우위 원칙은 확고하며, 실제로 있어서 상원은 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조세 및 재정지출 관계 법안은 하원통과 후 상원에 회부되어 1개월이 지나면 상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 됨.
 - 사법상의 권한
 - 상원은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 전체,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전체를 관장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함. 이론상으로는 상원의원 누구나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습 및 확립된 전통에 따라서 대법관인 상원의원들만이 재판에 참여함.
- 의 장(Speaker)
 - 내각의 일원으로 수상이 임명하는 Lord Chancellor 가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당적도 보유함. 직책상 대법원장의 역할을 겸하므로 통상 법률가가 임명됨. 수상은 상원 의장

이 되는 Lord Chancellor 를 임명함에 있어 상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상원의장은 하원의장과는 달리 상원 토의에 참여하여 발언하며 표결에도 참가함.

- 현 상원의장: Lord Falconer of Thoroton
- 상원 부의장은 28 명으로 순번에 따라 사회를 봄.

○ 보 수

- 상원의원에 대한 보수는 없으며 회기 중 실비의 교통수당 및 일당이 지급됨.

○ 상원개혁 추진 현황

- 노동당 정부는 1999.12 제 1 단계 상원개혁으로 상원의원 가운데 세습귀족(hereditary peers)의 상원 출석권 및 투표권을 박탈함(사실상 상원의원 자격 박탈).
- 새로운 상원의원 선출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과도기간 동안 세습귀족 91 명의 의원 자격은 유지
- 기존 의원을 대체할 새로운 상원의원 선출방안을 검토할 위원회(Royal Commission)를 설치,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권내 토의를 거쳐 상원의원의 선출 방안을 포함한 제 2 단계 상원개혁이 추진되었으나, 2003.2 월 직선 상원의원비율문제에 관한 하원 투표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상원 개혁작업이 난관에 봉착함.
- 현재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내에서도 직선상원의원 비율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협점 모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한편 2003.6 월 개각 시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대법원장)직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사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를 신설하였으며 사법부 장관으로 임명된 Falconer 장관이 당분간 Lord Chancellor 직을 겸직 하면서 Lord Chancellor 폐지 및 사법분야 개혁을 추진 중임.
- 2005.5 노동당 3 기 정부는 2005-2006 년 의회 회기 기간 중 상원의원 선출 비율에 관한 투표 허용 등 상원개혁 지속에 관한 입법추진 방침 발표

□ 하 원(House of Commons)

○ 구 성

- 직접선거에 의해 646 개 지역 선거구에서 각 1 인씩 선출되는 646 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정당 별 의석현황 (2005.5. 총선결과) >

- 노동당(Labour Party): 356 석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197 석
- 자민당(Liberal Democrats): 62 석
- 기타: 30 석

○ 임 기(Term)

- 최장 5 년이나, 보통 임기 만료 1, 2 년 또는 수개월전에 총선이 실시됨. 1, 2 차 세계 대전 중에는 자체 입법으로 총선 없이 임기가 연장된 경우도 있음. 하원 해산 및 총선은 수상권고에 따라 여왕이 명령함.

○ 권한 및 기능

- 입법 및 국정조사권

- 1911 년의 의회법에 따라 상원에 대한 입법기능상의 우위가 확립 됨. 법안 심의는 3 차 독회를 거침.
- 입법권한외에 국정전반에 걸쳐 수상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기능을 가짐.
- 법안은 보통 정부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위원회

-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감시하는 16 개의 부처별 상임 위원회(Departmental Select Committee), 하원내부 운영 문제를 담당하는 5 개의 내부위원회(Domestic Committee) 등을 운영하고 있음.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해당의회 존속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관련 정부 부처에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특별자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심의 위원회와 구별됨.
- 법안심의 위원회(Standing Committee): 대부분의 법안심의 위원회는 법안 심의 필요에 따라 매번 새로 구성되며, 예외적으로 유럽,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상설 운영되고 있음.

- 3 차 독회제

-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는 것을 1 차 독회(讀會)라고 하며, 2 차 독회에서 법안의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이때 야당은 폐기를 시도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2 차 독회를 통과한 후에는 법안심의위원회로 회부 되어 구체적인 축조 심의가 진행되고 수정이 가해짐. 헌법적 법안이나 정부예산관계 법안은 개별 상설위원회 대신 하원의원전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회부, 심의됨. 법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보고되며 이때는 수정안만 토의됨. 3 차 독회에서는 수정이 가해진 최종 형태의 법안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토의 없이 채택여부만 결정함 (상원에서 3 차 독회제가 채택되고 있는 바, 상설위원회가 없으므로 모든 법안은 전원 회의에서 토의).

- 정족수

- 의사 정족수는 없으나 의결 정족수는 40 명이며, 모든 표결은 단순 과반수로 처리함.

○ 의 장(Speaker)

- 1377 년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는 직책으로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직후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 하에 후보를 내세워 하원에서 선출토록 함.
- 의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불편 부당성이며 소수파의 권한을 보호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

- 상원의장과는 달리 내각의 일원이 아니며,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Casting Vote 를 행사함.
- 일단 의장에 선출되면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은퇴(또는 사망)할 때까지 평생 의장직을 맡게 됨.

4) 사법부(Judiciary)

□ 법의 연원(Sources of the Law)

성문법(Statute Law), 보통법(Common Law,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관습법, 판례 등으로 구성된 불문법) 및 구주 공동체법(European Community Law)으로 구성됨.

성문법은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부령(Orders) 및 지방자치조례(By-laws)로 구분됨.

□ 법체계

지역별로는 England, Wales, Scotland 및 Northern Ireland 가 제각기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 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음.

각 지역 모두 형법과 민법의 양 법체계가 별도로 존재함. 근래에 제정되는 성문법은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형사소추제도(Prosecution)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경찰과 검찰에 분리되어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며,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기초,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절차를 담당함.

Scotland 는 England 및 Wales 와 별도의 소추 기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분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England 와 마찬가지로.

□ 법 정(Courts)

○ Magistrates' Court(치안재판소)

- England 및 Wales 지방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을 재판하는 무배심 법정임. 일반적으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는 무보수 비상근 직책으로서 지역별로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Lord Chancellor 가 임명함. 이들은 각자 본연의 직업을 가진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변호사자격이 있는 서기의 보조를 받아 3 명이 모여 재판에 임하는 바, 약 400 개의 치안재판소가 있음.
- 북아일랜드의 치안재판소도 England 및 Wales 의 경우와 비슷하나 판사가 모두 직업 판사임.

○ Crown Court (형사지방법원)

- England, Wales 및 북아일랜드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High Court(지방법원)의 형사 업무를 취급하는 일종의 지방법원 분원으로서 배심 원제에 의한 재판을 함.
- 치안재판소의 관할권을 초월하는 중죄에 대한 1 심 재판과 치안재판소에서 항소되어 오는 형사사건의 2 심 재판(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맡는 바, 약 90 개의 법원이 있음.
- 치안재판소에서 항소되어 오는 형사 사건 중 법률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항소는 High Court 에서 다루며, 중요한 사건의 재판은 High Court 의 판사가 와서 행하고, Crown Court 의 판사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재판을 맡음.

○ County Court (민사지방법원)

- England, Wales 및 북아일랜드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5 천 파운드 이하의 민사사건, 건물의 구입 및 전세에 따른 사건, 합의 이혼사건 등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민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며, 약 300 개의 법원이 있음.

○ High Court (지방법원)

- England, Wales 및 북아일랜드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민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나, 형사재판 담당판사도 일부 있어서 중요한 형사 사건이 있을 때는 Crown Court 에 가서 재판을 함. 치안재판소에서 올라 오는 법률 해석상 문제로 인한 항소심 재판도 담당함.
- 중요한 민사사건을 다루는 게 주 업무로서 민사부, 가정부 및 비송 사건부로 나누어져 있음.

○ Court of Appeal (고등법원)

- 형사부와 민사부로 나뉘지며, 형사 고등법원장을 Lord Chief Justice 라고 함. 보통 대법관을 지낸 최고원로판사가 이에 임명되며 사법부 서열상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대법원장 다음이나, 실제 법원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음. 고등법원에는 21 명의 고등법원판사(Lord Justice)가 있어 (형사) 지방법원 에서 항소되어 오는 사건의 2 심 재판을 맡고 있는 바,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심리까지 할 수 있음.

○ House of Lords(대법원)

- 상원의 일부로서 상원의장인 대법원장(Lord Chancellor)과 9 명의 대법관(Lord of Appeal in Ordinary, 또는 Law Lord)으로 구성되며 법률심만 함.
-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Scotland 를 제외한 지방에서 상고 되어오는 사건의 최종심을 맡음.
-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영국 전체에서 상고되어 오는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맡고 있음.

- 대법원장은 정치적 직책이므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나, 대법원판사는 1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자중에서 수상의 제청으로 국왕이 상원의원에 임명하게 되므로 종신직임.
- 이론상으로는 모든 상원의원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습에 따라 대법관들만이 재판업무를 맡고 있음.
- Supreme Court 신설(사법부개혁) 동향
 - 2003. 6월 개각 시 Lord Chancellor 직 폐지가 결정되고 상원개혁의 지속적 추진 차원에서 상원 내 법률 귀족직을 폐지하는 대신 Supreme Court를 신설하고, 동 법원에는 법안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의 분리·독립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중임.
 - 2004.2월 사법부 개혁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었으나, Lord Chancellor 직 폐지 및 대법원 신설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될 예정임.
 - 현재까지 사법부 개혁관련 주요 이견은 Lord Chancellor 명칭을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 사법부 장관이 상원의원직을 겸하는 문제, 법원의 독립성 관련 조항 보강, 대법원 신설보다 현 체제 유지 선호의견 상존 및 대법원 신설을 독립청사 확보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 등인 바,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노동당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부개혁 작업이 조기에 완료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함.

5) 정 당

□ 노동당(The Labour Party)

- 창당역사
 - 1832년 이후 제정된 일련의 의회 개혁법안으로 일반노동자 및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 구성의 필요성과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사회에 확산된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사상을 대변할 정치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06년 총선 이후 의회 내에서 노동자 대표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당이 창립되었음.
 - 노동당 창당사의 특징은 보수당 및 자유당 조직이 의회 내의 그룹에서 출발하여 선거구로 확산된 것과는 달리 의회 밖의 정치, 경제, 사회운동이 의회 내에서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으로 발전한 것임.
- 발전과정
 - 1918~39년간에 걸쳐 노동당은 자유당을 대체하여 보수당의상대 정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924년에는 소수정부로서 첫 집권하였음.
 - 그 후 1929~31년간 소수정부로 재집권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5차례 걸쳐 집권함으로써 영국 내 양대 정당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음.

○ 조 직

- 지구당(CLP: Constituency Labour Party)과 중앙당(PLP: Parliamentary Labour Party)으로 구성되어 있음.
- CLP 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주의자 협회 등의 방계기관과 15 세 이상의 개인당원으로 구성됨.
- PLP 는 상하 양원 노동당 의원으로 구성되며, 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위원회(Parliament Committee, Shadow Cabinet 으로 통칭)를 선출하여 정부 부처 업무별로 분담하여 당 정책을 대변함. 각 의원은 총선 후 1 년 6 개월 이내에 CLP 로부터 의원 후보로 재선출되어야 차기 총선에서 재 입후보가 가능함.

○ 당 기구

- 전당대회(Party Conference)
 - 매년 9 월말 경 개최되는 당 최고기관으로서 CLP, PLP 및 노조대표 등 1,000 여명이 참석하는 바, 투표권은 헌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약 1/2 을 노동조합이 보유함.
 - 당헌제정·개정, 당수, 부당 수 및 전국 집행위원들을 선출하며 2/3 찬성으로 당 정책 사항의 채택을 결의함. (Blair 수상은 노조영향력 축소의 일환으로 전당대회의 정책 결정기능 축소 추진)
- 당수
 - 당 규정 제 5 조에 의거, 당수직 공석 시 당수직 입후보자는 하원의원 12.5%, 부당수직 입후보자는 하원의원 20% 이상의 지명을 획득해 야만 입후보가 가능함.
 - 당수 및 부당수는 각각 1/3 의 지분을 갖고 있는 노동당소속 하원의원 및 구주의회의원, 노동당당원, 그리고 노동 조합구성원(430 만)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우편투표로 선출되며, 특별전당대회에서 투표결과를 공식 발표함.

○ 당 정강정책(Manifesto)

-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및 중앙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당정책(Party Programme)중 어느 것을 총선 시 정강정책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총선전에 결정, 발표함.

○ 재 정

- 방계기관 소속당원은 매년 £45 를 정치 헌금으로 납부하며 개인 당원은 매년 £6 이상을 납부토록 되어 있음.
- 당 재정의 약 1/2 이 노동조합 기부금으로 충당됨.

○ 파 별

- 노동당의 좌경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탈당하여 사민당을 창당한 이후 한동안 극좌파 세력이 더욱 득세하였으나, 1983 년의 총선 참패 이후에는 중도좌파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음.

○ 주요정책

- 정치
 - 지방자치정부 권한 강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반대
 - 상원 내 세습의원제 폐지 등 상원개혁
 - 범죄 퇴치,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
- 경제
 - EURO 가입 추진
 - 공공서비스 개혁 등을 위한 정부·민간부문간 협력 강화
 - 조세 및 사회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
 -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 외교·국방
 - EU 및 NATO와의 협력 강화
 - WMD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의 군축협상 적극 참여
 - 군 현대화 추진
 - 국제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원조확대, 외채문제 해결 지원 모색
 - 국제 테러리즘 방지
 - 인권증진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 창당역사

- 17세기 후반에 국교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국왕 편에 섰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Tory 당이 1832년의 의회 개혁법으로 인한 참정권 확대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정당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보수당이라는 표현은 1830년부터 사용되어 점차적으로 Tory 라는 말을 대체하게 되었음.

○ 조직

- 처음에는 원내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1867년의 제2차 의회개혁법으로 참정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원외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였음. 주요 기구로 당 중앙사무소(Conservative Central Office)와 전국연합(National Union of Conservative Association)이 있으며,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국연합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있어 당의 일상업무를 수행함. 전당대회는 1년에 1회, 통상 10월에 개최됨.

○ 지지기반

-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중, 남부 England가 주요 지지기반임.

○ 당 재정

- 당 재정 수입은 개인헌금 및 기업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당수

- 당수선출 방식: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선출한 2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모든 보수당원(약 30 만 명)이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자를 선출

○ 주요정책

- 정치
 - 의회주권에 기반한 강한 중앙정부 유지
 - 공공서비스 개혁
 - EURO 가입 반대
 - 법 질서 강화
- 경제
 - 인플레이션제 및 공공지출감소
 -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의욕 증대
 - 공공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
 - 산업의 자유경쟁 촉진
- 외교, 국방
 - 대유럽관계에 있어 국가주권 유지
 - EU 와 미국관계 강화
 - NATO 와의 협력강화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추진
 -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 창당경위

- 1987.9 월부터 합당을 추진해온 사민당(SDP)과 자유당(Liberal Party)은 양당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합당을 최종 결정하고 88.3 월 정식 출범함.
- 1988.7 실시된 통합 당수 선거에서 자유당(Liberal Party) 출신의 Paddy Ashdown 하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음.
 - Ashdown 당수가 1999.1 월 일신상의 이유로 당수 직을 물러난 후, Charles Kennedy 의원이 1999.8 월 신임 당수에 선출
- 자민당은 2005 년 총선에서 선전하여 22%의 득표율로 62 석(+10)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통적인 영국의 양당정치체제를 자민당을 포함한 3 당구도로 변환을 추진 중임.

○ 주요정책

- 정치
 - 하원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
 - 지방자치 확대 지지
- 경제
 - 세금증액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 교육, 보건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

- 혼합경제 장려(정부통제기능 인정)
-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신설
-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
- 외교, 국방
 - EU 및 NATO와의 협력추구
 -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 군축 추구
 - 환경보호 및 인권존중에 노력하는 저개발 민주국가에 대한 원조 증대.
 - 제 3 세계 외채문제, 저개발국에 대한 불공정 관세장벽 철폐 노력

6)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의 구조

- 영국의 지방자치 구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비 도시지역은 2원적(two-tier) 구조로 되어 있음.
- 농촌지역은 County 와 District 로 되어 있으며, County 의 Council 은 개발계획, 교통, 교육, 소방 등을 담당하며, District 의 Council 은 환경, 보건, 주택, 쓰레기 수거 등을 담당함.
- 잉글랜드 대도시 지역은 1원적 구조로 Metropolitan County 가 지방자치 단위임.
 - 6 개 Metropolitan county: Tyne & Wear, West Midlands, Mersersyside, Greater Manchester, West Yorkshire, South Yorkshire
- 런던
 - 런던은 런던 시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인 Greater London Council 이 있었으나 1985 년 폐지되고, 32 개 Borough 와 Corporation of the City of London 으로 분리, 각각 Council 을 구성, 자치를 실시해 왔음.
 - 1997 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London 지역전체를 관할하는 Greater London Authority (GLA)를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음. 이 제도가 1998.5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어 2000. 5 월에 GLA 시장 선거가 실시되어 노동당 시장 후보경선에서 패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Ken Livingstone 후보가 당선.
 - 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스코틀랜드는 32 개, 웨일즈는 22 개의 단원적인 지방 자치 단체로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선거

- 지방자치단체(Council)는 주민직선에 의해 4 년 임기로 선출된 의원 (Councillor)에 의해 운영되며, 시장은 대의원들이 1년씩 교대로 맡음.
- 스코틀랜드는 매 3년마다 지방선거 실시

□ 대의원의 보수

- 지방자치단체 대의원에게는 약간의 수당이 지불되며, 회의참석이나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 추가 수당이 지불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Council Tax(주거용 부동산에 부과)
- 중앙정부 보조금
- non-domestic rate(비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
- 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입

□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회 개원

- 스코틀랜드 의회 개원 (1999.1 개원)
 - 1997.9.11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구성 등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74.3%의 찬성으로 동 주민 투표안이 통과되어 약 300년 만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부활함.
 -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 추진 배경
 -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폐쇄되고 잉글랜드 의회에 통합된 후에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다른 문화와 법체제 등 독자성을 계속 유지.
 - 1979. 3 당시 노동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을 제안,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자 51.6% 찬성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로(32.9%) 부결(전체 유권자 중 40% 이상의 찬성투표조건에 미달)
 - 1979-1997.5 간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수당 집권기간 중 잉글랜드 지배 체제에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반감을 지닌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노동당 소속 의원들을 계속 지지(97.5%)총선 시 보수당 후보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전원 낙선)
 - 그러나, 보수당이 지배하는 영국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지역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 결정권의 지역정부 이양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잉글랜드 지역과의 갈등 심화
 - 1988년 이래 노동.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온 바,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 시 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 구성을 포함한 헌정 개혁을 공약 (동 공약은 지역간 갈등과 대립의 심화가 분리 독립운동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를 지역분권 형태로 포용하려는 의도)
 - 보수당은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의회 구성이 영국의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운동 전개
 -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60.1%)
 -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 찬성 74.3%, 반대 25.7%
 - 동 의회의 소득세율 조정권한 보유: 찬성 63.5%, 반대 36.5%
 - 2003.5월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결과(총 121석)
 - 노동당: 50석
 - 스코틀랜드 민족당 (SNP): 24석
 - 보수당: 16석
 - 자민당: 16석
 - 기 타: 15석
 - 지역의회 권한
 - 소득세율 조정권(3% 이내) 외에 스코틀랜드부의 업무를 이양 받아 보건, 교육, 경제 개발, 치안, 환경, 주택, 투자유치, 무역,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정책에 관한 입법·행정권 보유

- 필요 시 중앙정부 대표와 함께 EU 각료이사회 참석 및 주 EU 사무실 설치가능
-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안보, 국경 통제, 거시경제, 금융정책, 사회 복지, 인권 정책 등을 계속 담당
- 평가 및 전망
 -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영국의 중앙 집권적인 헌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
- 웨일즈 의회 구성 (1999.5. 개원)
 - 스코틀랜드 의회 구성에 대한 주민투표에 이어 97.9.18 실시된 웨일즈 의회(Welsh Assembly)구성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 50.3%의 찬성으로 (투표율 50%) 동 의회구성안이 통과됨.
 - 웨일즈의회 구성 추진 배경
 - 웨일즈는 1535년 잉글랜드와 통합된 후에도 어느 정도 언어, 문화적 독자성 유지
 - 1282년 잉글랜드왕 Edward I 세, 웨일즈 정복
 - 1485년 웨일즈 투터가의 Henry VII세, 잉글랜드왕 즉위
 - 1535년 Act of Union 에 의해 잉글랜드에 통합
 - 현 노동당 정부의 1997.5 월 총선 공약으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의회 구성을 포함한 헌정개혁 약속
 - 1979년 노동당 집권 시에도 웨일즈 의회 구성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결 (유권자의 12% 찬성, 47% 반대)
 - 웨일즈 의회 선거 결과
 - 2003.5 의회선거 실시결과 총 60 석중 노동당 30 석, 웨일즈 당 12 석, 보수당 11 석, 자유민주당 6 석 등을 각기 차지함.
 - 평가
 - 예산 통제 권한을 가진 웨일즈 독자의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스코틀랜드 의회와 비교할 때, 징세권, 입법권, 대 EU 관계 대표권이 없는 제한적 권한보유

7) 정치정세

□ 총선결과

- 2005. 5. 5 총선결과 총 646 석의 하원의석 중(1 개 지역구는 선거실시 연기) 노동당 356 석, 보수당 197 석, 자민당 62 석, 기타 30 석으로서 노동당의 Majority (집권당과 여타 야당의석 합산차이)가 67 석으로 집계됨.
- 정당 별 지지도는 노동당 35.22%, 보수당 32.33%, 자민당 22.05%, 기타 10.24%로서 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초의 3 기 연속집권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역대최저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당선되는 기록도 세움.
- 노동당의 재집권 성공은 영국 경제의 지속적 호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낮은 이자율, 물가 상승율, 실업율을 유지하면서 유럽 여타국가들에 비해 대적으로 높은 2-3%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보수당은 금번 총선에서 197 석을 차지하여 2001 년 166 석에 비하여 31 석을 추가 획득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민, 범죄 등 특정분야 이슈에만 집중함으로써 보수당 지지층을 제외한 여타 유권자들의 보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낳았으며, 하워드 당수는 자신의 연령(63 세)을 고려, 금년 말 이전 당수직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자민당은 금번 총선에서 의석 및 지지율을 대폭 확대하는 성공적 결실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이라크전이라는 제한적 이슈에서 노동. 보수 양대 정당과 다른 이라크 전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얻은 지지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북아일랜드 문제

- 연혁
 - 12 세기 잉글랜드에 의한 정복 이후 꾸준한 저항을 전개해 오던 아일랜드는 19 세기에 들어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에 자극 받아 아일랜드 민족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함.
 - 아일랜드 자치(Home Rule)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무장투쟁 끝에 아일랜드 남부 지역(전체 22 개 주 중 16 개 주)은 1921 년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이 되고 1949 년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잉글랜드로부터의 독립을 반대하는 신교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북아일랜드 지역이 분리됨.
 - 북아일랜드는 인구 169 만 명 중(2001 년 현재) 신교계 50.6%, 구교계 38.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교계의 약 90%가 북아일랜드의 영국 내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신교계 4%는 아일랜드와의 통합 희망), 구교도 49%는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음.(구교계 36%는 영국 내 잔류 희망)
 - 1921-72 년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executive government)가 유지되었으나, 동 자치 정부는 실질적으로 신교계인 Ulster Unionist Party 의 지배하에 있었고, 60 년대 후반 이후 구교계가 중심이 되어 북아일랜드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
 - 1972 년 이후 영국 정부는 중앙기구를 설치하여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해오던 한편, 74 년 권력분점 집행부(Power-Sharing Executive)설립, 82-86 년간 북아일랜드 의회(Northern Ireland Assembly) 설립, 91-92 년간 영국정부-신.구교계 4 개 정파간 협상 등 지역자치 및 평화정착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영. 아일랜드 정부는 1993. 12 월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추진을 위해 협력해 왔고, 1996. 2 월 영. 아일랜드 수상간 합의에 따라 1996. 6 월부터 구교계 강경파인 Sinn Fein 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아일랜드 제정 당 회의와 포럼을 개최해왔으나, 실질협상의 의제조차 합의되지 못하였음.
-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타결(Good Friday Agreement)
 - 1998. 4. 10 벨파스트 근교 Stormont 에서 개최된 제정당 회의에서 영국의 Blair 수상, 아일랜드 Ahern 수장과 신. 구교 제정당 대표들간 북아일랜드 평화 합의문이 타결됨으로써 1969 년 이래 계속되어온 아일랜드와의 합류를 주장하는 구교도 측과 영국 잔류를 요구하는 신교도 단체간의 유혈분쟁 종결을 위한 역사적 계기 마련
 - 1969 년 이후 양 세력간 갈등으로 3,600 여명 사망

- 평화 합의내용
 - 북아일랜드 의회(Assembly) 설립, 영국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종결 및 자치제도 도입
 - 북아일랜드에 대한 아일랜드 영토 주권을 명기한 아일랜드 헌법조항 개정
 - 남. 북 아일랜드간 협력을 위해 남. 북 각료위원회 설치
 - 북아일랜드 관련, 영국과 아일랜드간 협력을 위해 정상(연 2회)및 각료급 회의 정례개최
 - 신. 구교계 무장단체의 무장 해제
- 평화합의 후속 진전사항
 - 1998.5.22 북아일랜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지지(71.1%)로 동 합의문 채택
 - 동일 실시된 아일랜드 헌법 조항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도 개정안 통과
 - 1998.6.25 북아일랜드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실시
 - 각 정당 별 득표 현황(총 108 석)
 - UUP(Ulster Unionist Party, 온건 신교계): 28 석
 - SDLP(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온건 구교계): 24 석
 - DUP(Democratic Unionist Party, 강경 신교계): 20 석
 - Sinn Fein (IRA 의 정치단체): 18 석
 - Alliance: 6 석
 - UK Unionist: 5 석
 - 기타: 7 석
 - George Mitchell 전 미 상원의원의 중재로 신.구교계간 행정부구성 및 무장해제 절차합의
 - 먼저 북아일랜드 행정부를 구성한 후(Sinn Fein 소속 2명 참여) 무장해제 절차 합의
 - 1999.11.29 북아일랜드 행정부 구성(12명)
 - First Minister : David Trimble (Ulster Unionist)
 - Deputy first Minister : Seamus Mallou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 여타장관 : UUP(3명), SDLP(3명), Sinn Fein(2명), DUP(2명)
 - 1999.11.30 영국 의회 북아일랜드 권력이양법(Devolution Order)승인
 - 1999.12.11 영 여왕의 북아일랜드법 재가
 - 1999.12.2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공식 발족
 - 북아일랜드 의회 및 자치정부 활동 정지 및 복원
 - 무장단체, 특히 IRA 의 무장해제 일정과 관련, 2000.1.31 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긴급 입법을 통해 북아일랜드 의회 및 자치정부의 활동을 정지시킴.
 -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와 북아일랜드 신. 구교 정파간에 IRA 등 무장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된 결과, IRA 측이 자신의 무기고에 대한 국제사찰 허용 등 '완전하고 입증 가능한 무기 불사용'을 위한 절차개시를 제안하였으며, UUP 측이 이를 근거로 자치정부에 복귀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영국정부는 2000.5.29 일자로 자치정부의 기능을 복원시켰으나 IRA 무장해제에 별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한 강경 신교계측의 반발로 북아일랜드 평화과정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 최근 동향
 - Blair 수상은 아일랜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북아일랜드 신.구교계 주요 정파들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98년 Good Friday Agreement 를 타결 시키고, 이에 의거하여 신.구교계 정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를 출범시킴

- 그러나, IRA 에 의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비밀문서 탈취사건을 둘러싼 신교계와 Sinn Fein 측간 대립 격화로 2002.10 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기능이 중단되고 영국의 직접통치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신. 구교계 간의 갈등지속 및 2003.5 월로 예정된 총선에서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신.구교계 제정파의 강경입장 고수 등으로 자치정부 중단사태가 장기화됨.
- 2003.3 월 북아일랜드에서 Blair 수상, Ahern 아일랜드 수상 및 신. 구교계 제정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담에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복원을 위해 신.구교계 간 상호 타협안이 논의되었으나, IRA 제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5.1 개최 예정이었던 북아일랜드 총선을 5.29 로 연기하기로 결정함.
- 2003. 4 월 IRA 측은 민병대 활동 중단 및 무장해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Blair 수상은 민병대 활동의 전면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부재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총선을 2003 가을로 다시 연기함.
- 2003.11.26 마침내 실시된 총선에서 Sinn Fein 측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신교계 강경파인 DUP 측이 최대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자치정부 정상화에 별 진전이 없자 Blair 수장과 Ahern 수장은 막후에서 제정파를 설득, 협상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2004.9.16-18 간 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협상은 별 성과 없이 종결됨.
- 2003. 11 총선 정당별 득표현황: () 1998 년 선거시 의석수
 - DUP(Democratic Unionist Party, 강경 신교계): 30 석(20 석)
 - UUP(Ulster Unionist Party, 온건 신교계): 27 석(28 석)
 - Sinn Fein (IRA 의 정치단체): 24 석(18 석)
 - SDLP(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온건 구교계): 18 석(24 석)
 - 기타: 9 석
- 2005.5 하원 선거 시 총 18 석인 북아일랜드에서 DUP 9 석, Sinn Fein 5 석, SDLP 3 석, UUP 1 석을 각각 획득, 신교계와 구교계 모두 강경파가 득세함에 따라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 난관이 예상됨.

(자료원: 재영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3. 주요 인사

가. 주요인사

1) 영국여왕: HER MAJESTY ELIZABETH II (80 세)

- 생년월일: '26년 4월 21일생
- 가족사항: 3남 1녀
- 주요경력
 - 1944: 추밀원 위원
 - 1947: 필립공과 결혼
 - 1952: 여왕즉위
- 취미: 승마

2) 영국 여왕의 남편: HIS ROYAL HIGHNESS THE PRINCE PHILIP

- 생년월일: '21년 6월 10일
- 가족사항: 3남 1녀
- 학력: 해군사관학교 졸업
- 주요경력
 - 1943-1945: 해군대위로 2차 대전 참전
 - 1947: 결혼
 - 1951-1953: 영국과학진흥협회 회장
 - 1981: 세계 야생동물기금 회장
- 취미: 폴로, 요트, 승마, 비행기조종

3) 영국 수상: Rt Hon Tony Blair

- 생년월일: '53년 5월 6일
- 가족사항: 3남 1녀
- 학력: Oxford St John's College에서 법학 전공
- 주요경력
 - 1975: 노동당 가입
 - 1988: 노동당 shadow cabinet의 에너지장관 피선
 - 1992: 노동당 shadow cabinet의 내무장관 피선
 - 94.7.21: 노동당 당수 피선
 - 2005.5.5: 노동당 3기 연속집권으로 3선 수상 취임

나. 내각진영

Prime Minister, First Lord of the Treasury and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Rt Hon Tony Blair MP
Deputy Prime Minister and First Secretary of State	Rt Hon John Prescott MP
Chancellor of the Exchequer	Rt Hon Gordon Brown MP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Rt Hon Margaret Beckett MP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Rt Hon David Miliband MP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and 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	Rt Hon Douglas Alexander MP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Rt Hon Patricia Hewitt MP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	Rt Hon Hilary Armstrong MP

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and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Rt Hon Peter Hain MP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Rt Hon Des Browne MP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Rt Hon Alistair Darling MP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Rt Hon Tessa Jowell MP
Parliamentary Secretary to the Treasury (Chief Whip)	Rt Hon Hilary Armstrong MP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Rt Hon John Reid MP
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Rt Hon Des Browne MP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Lord Privy Seal	Rt Hon Jack Straw MP
Minister without Portfolio and Party Chair	Rt Hon Ian McCartney MP *
Leader of the House of Lords and Lord President of the Council	Rt Hon Baroness Amos
Secretary of 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s and Lord Chancellor	Rt Hon Lord Falconer of Thoroton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Rt Hon Hilary Benn MP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Rt Hon John Hutton MP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s	Rt Hon Alan Johnson MP
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nd Minister for Women	Rt Hon Ruth Kelly MP

4. 외교관계

가. 외교정책 목표

1) 안보확보 및 국제평화·안정 증진

- NATO 기능을 현대적 역할수행에 적합하도록 강화
- 영·미 협력관계 강화
- EU의 위기관리 능력 및 안보 능력 강화
- 군축 및 비확산 추진
- UN의 역할 강화
 - 국지적·세계적 차원의 분쟁해결, 분쟁방지, 분쟁관리, 평화유지 등에 대한 UN 기능강화 추진
- 영연방 국가간 연대 강화

2) 풍요로운 영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회 확대

- 교역·해외투자 증진 및 해외에서의 금융·기술 분야 활동지원
-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증진
 - EU 내 FDI 최대국 지위 유지
- 자유, 공정, 지속 가능한 국제무역환경 증진
- 영국의 자원 및 자산 보호
- 수출 지원 및 영국의 'business image' 고양

3) 전 세계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영연방, UN,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개발 촉진 지원
- 환경보호 관련 국제활동에 적극 협력
- 마약, 테러 및 국제범죄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처
- 인권, 시민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good governance 확산 노력강화

4) 영국의 외교정책 및 영국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 현대 영국의 이미지 각국 전파
- 영국의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형성총 및 해외 지지 확보
 - BBC world service, 영국문화원 등 적극 활용
- 정부정책 결정에 국제적 여론 등 반영
- 주재국 의회, 국민, 언론 등의 관심사에 적극 대응
 - 외무부 internet website 등 적극 활용

5) 유럽 내 영국 역할 강화

- 유럽국가와의 관계증진 및 국민들의 EU 관련 인식제고 및 지지 확보
- EU 확대 및 통합 적극 추진
- EU 농업정책, 구조조정기금 개혁 등 EU 주민의 수요에 상응한 EU 제도 개혁 추진

6) 해외 거주 영국인 보호강화

- 영사활동 및 교민보호 지원 강화
- 해외 사고자에 대한 지원 강화

나. 대외 관계

1) 테러와의 전쟁 및 대 이라크 전쟁

- 영국은 2001.9.11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전통 우방국 입장에서 대 테러 전쟁관련 미국의 정책 및 입장을 강력 지지
- 아프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2002.6 월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주도 다국적군에 1,800 여 명의 대 테러 작전부대를 파견하였으며, 현재 760 명 병력 유지 중
- 영국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1441 및 그 이전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가 자발적으로 WMD 를 제거해야 하나, 동 이행을 거부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WMD 제거를 위해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라 45,000 명의 병력을 파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대이라크 전 참전 (영국은 현재 약 9,000 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6 개월 주기로 교대하면서 작전 운용)

-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 자국 병력은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이라크가 국경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N과의 협력을 통한 이라크의 정치·경제적 재건 추진

2) 대 유럽정책

- EU 확대 및 통합 관련, 전 유럽의 안보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입장 및 중심역할 추구
- EURO 가입문제는 국민여론을 감안 신중히 추진
 - 5 가지 경제적 조건 충족 여부 평가 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 예정
 - 5 개 경제조건
 - 수렴성(convergence): 영국 경제와 유로권 경제간 경기 순환, 이자율 등이 상호비슷한 수준일 것
 - 유연성(flexibility): 영국 정부가 유연하게 경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
 - 투자: 유로 가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
 - 금융: 런던의 금융 서비스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고용과 성장: 고용 및 성장 증대에 기여할 것
- EU 제도개혁 관련, EU의 효율성 증대 및 자국 이익증대 사이에 균형 추구 입장
 - 특히, 가중다수결제도 적용을 조세·사회보장, 국방, 외교 등 주권과 관계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견지, EU 헌법 조약 안에 영국 측 입장 반영
 - 농업보조금 대폭 감축 등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적극 주장
- EU 장래 문제와 관련, EU가 개별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Superstate가 아닌 Superpower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EU 정상회의 및 EU 의회의 권한 강화 추진

3) 대 미주정책

- 미국·캐나다와는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별동반자 관계 유지 및 강화 입장
-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유럽 및 영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 NATO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특히 핵, 국방, 정보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
 - 미국의 MD 계획 추진관련, 현재는 Fylingdales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미군측이 이용토록 협력하는 수준이나, 향후 MD 계획의 발전여하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참여 가능성 상존
- 경제분야에서도 영·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영국은 미국 내 최대 투자국(825 억 파운드 투자)이며, 미국의 영국 내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 중 약 40% 차지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발전 지원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추진(이 지역에서 영국은 미국 다음의 최대 투자국)

4) 대 아시아 정책

- 1997.7 홍콩 이양 이후 중국과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 노력
- 일본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아시아에서의 경제 실리 추구하고 병행, 도덕외교 정책 추구
 - 동티모르, 미얀마 인권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

5) 대 중동정책

- 동 지역의 안정 및 평화달성에 적극 기여 추진
- 중동평화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Quartet 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특히 미국에 대해 중동평화 road map 이행 등 적극적인 역할 촉구

다.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입장

1) 인권문제

- 영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외교의 중심과제로 설정, 다자 및 양자차원에서 인권가치, 시민 자유권,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
 - 영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여타 국가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이 민주주의, 정의, 법의 지배 등 국제사회의 공통 가치 보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2) 테러리즘 및 WMD

- 9.11 테러 이후 영국정부는 국제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과 재산 보호를 외교 정책을 최고 목표로 설정
- 테러리스트들이 WMD 를 이용한 테러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규정, 이를 막기 위하여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추진
 - EU 회원국간 그리고 EU 와 미국간 또한 UN 차원에서의 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강화
 - 수단, 코소보 등 주요 분쟁해결을 지원, 테러리즘 및 WMD 사용 요인 제거
 -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 이란 및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EU 회원국 및 미국과 협조하여 아랍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랍세계의 평화적 정치·경제 개혁 증진
 - 재래식 무기와 WMD 및 관련 기술, 물질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 강화
 - 국내외 국민 및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보호 및 구조능력 증진을 위해 국제적 협조 체제 강화

3) 지구환경보존

- 지구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노력
 - 환경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보존, 주요자원 공급,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에 적극 대처

4) 아프리카 빈곤문제

- 국제원조
 - 2005-06 년간 흑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원조액을 10 억 파운드로 증가
 - 콩고, 이디오피아, 가나 등 16 개국을 중점 대상국가로 지정, 분쟁해결, 재건, 경제 원조, AIDS 척결, 빈곤퇴치, 부패방지 등 문제의 해결을 지원
- 아프리카 위원회
 - 아프리카 위원회는 Blair 총리의 발의로 2004.2 월 창설, 전세계에 대한 아프리카의 참여 증진을 위해 전문가, 행정가의 회합을 도모
 - 2004.5 월 런던에서 회의 개최
 - 2004.10 월 아디스아바바에서 회의 개최
 - 2005 년도 보고서 발간

라. 영연방(The Commonwealth)

1) 연혁

- 영국 식민지중 1847 년 캐나다가 자치권을 얻은 이후 1901 년 호주, 1907 년 뉴질랜드가 자치령이 되고 1 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이들의 독자적인 내정, 외교권이 견고해짐.
- 1926 년 제국회의에서 각 자치령이 영국 국왕에 대한 공동 충성심으로 단합되어 있고, 자유로운 연합인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의 일원으로서 내정,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종속적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영연방이 탄생함.
- 1931 년 웨스트민스터법에 의해 이러한 원칙의 법적 근거가 확립

2) 발전

- 2 차 대전 이후 인도,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이어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게 됨에 따라 영연방국 수가 53 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The Commonwealth 로만 부르게 되었음.
- 1949 년 영연방 수상 회의는 당초 영연방의 가입조건이었던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영국 국왕은 단순히 "독립 구성국들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 임을 결의함에 따라 인도 등은 공화국이 된 후에도 계속 일원으로 남게 되었음. 일단 영연방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국가는 아일랜드와 짐바브웨 2 개국임

(남아프리카와 피지는 재가입). 구영국 식민지중 영연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미얀마, 수단, 소말리아, 사우디 및 걸프 국가 들 임.

- 짐바브웨는 2003.12.7 영연방 탈퇴(공식탈퇴 문서는 2003.12.11 Don Kinnon 영연방 사무총장에게 제출)

3) 가입조건

- 역사적 경위로 인하여 과거 영국 또는 영연방 국가의 식민지였거나 속령이었던 국가들로만 구성됨. 가입신청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함.

4) 구성국가

- 53 개국 중 16 개 국가(영국 포함)들은 아직도 영국 여왕을 자국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31 개국은 공화국, 6 개국은 독자적인 국왕을 가지고 있음.
- 회원국 :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Bahamas, Bangladesh, Barbados, Belize, Botswana, Brunei Darussalam, Cameroon, Canada, Cyprus, Dominica, Fiji Islands, The Gambia, Ghana, Grenada, Guyana, India,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Malawi, Malaysia, Maldives, Malt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auru, New Zealand,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ri Lanka, Swaziland,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nuatu, Zambia

5) 특징

- 영연방은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구가 아니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 관계에서 발전된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모임으로서 일반적인 상호협력 및 결속유지를 목적으로 함.
- 공식협정 없이 관습과 확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회원국간 국내문제 및 외교에 관해 상호 간섭하지 않음. 회원국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주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며 때에 따라서는 공동입장을 선언하기도 함.
- 회원국간에는 대사 대신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파견함. 이들은 외국대사와 같은 특권·면제를 누리나, 대사들과는 달리 주재국 각 정부부처들과 직접 접촉하며, 영국 여왕과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함.

6) 공식회합

- 1966 년부터 수상회의 명칭을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다가 1971 년부터 개최지를 영국 외 국가로까지 확대하여 매 2 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함.
- 영연방 정상들은 정상회의 시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만나며, 국제정치, 경제 및 영연방 협력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7) 영국 여왕과의 관계

- 당초 영 연방국들은 영국 국왕에 대하여 "공동의 충성심"을 지니는 것(owing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으로 되어 있었으나, 1949 년의 수상회의에서 "자유로운 연합 의 상징"이자 "영연방의 우두머리"(Head of Commonwealth)로서 영국 국왕을 인정하기로 결정함
- 현재 여왕은 영국 외에 아래 15 개 국가들의 국가 원수직을 겸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총독 (Governor-General)이 여왕을 대표함. 총독은 해당국가 정부의 건의에 따라 여왕이 임명함.
- 영 여왕이 국가원수인 국가
 - Antigua and Barbuda
 - Australia
 - Bahamas
 - Barbados
 - Belize
 - Canada
 - Grenada
 - Jamaica
 - New Zealand
 - Papua New Guinea
 - Saint Kitts and Nevis
 - Saint Lucia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Solomon Islands
 - Tuvalu
- Brunei, Lesotho, Malaysia, Swaziland, Tonga 는 국왕이며, Samoa 는 종신직으로 임명 되는 국왕이 있음.

마. 영국 속령(Dependencies)

- 영국정부가 Governor 를 통하여 국방, 치안 및 외교업무를 책임지나 자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아래와 같은 13 개의 속령이 있음(홍콩은 1997.7.1 중국에 환). Anguilla, Bermuda, British Antarctic Territory,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Falkland Islands, Gibraltar, Montserrat, Pitcairn Islands, St.Helena Dependencies (Ascension, Tristan da Cunha), The Turks and Caicos Island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바. 한. 영 관계

1) 기본개요

한국과 영국은 1949 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9 년 양국 수교 50 주년을 맞이, 수교 이후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했다.

영국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개선동향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10월 19일 서울 ASEM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북한과 수교하기로 방침을 결정, 발표했으며 2000년 12월 12일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영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으며 한국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고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2) 한영 외교관계 일지

- 1883.1,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884.4, 한영 국교수립(서울에 총영사관 설립)
- 1900, 주한영국총영사관 공사관으로 격상
- 1901, 주영국 공사관 개설(초대 공사 민영돈 부임)
- 1906,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총영사관으로 격하
- 1949.1.13, 영국정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 1950.2.17, 주영 한국공사관 개설
- 1955.7.11, 양국, 공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 1974, 한-영 경제위원회 설치
- 1986, 한-영 정상회담 (전두환 대통령-대처 수상)
- 1992.11.2-5, 영국 Charles 왕세자 부부 공식방문
- 1995.3.8-10, 한-영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메이저 수상)
- 1996.3.4-5, 한-영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메이저 수상)
- 1998.4, 김대통령, 제 2차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영(訪英)
- 1999.4, Elizabeth II 여왕, 영국 국왕으로 최초 방한
- 2000.10, Blair 총리 방한(제 3차 ASEM 정상회의 참석)
- 2004.12, 노무현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3) 한국전쟁 참전 사

- 1950년 9월, 영국군 UN군의 일원으로 참전
- 한국전쟁 중 영국군은 글로스터 연대의 격전(1951.4.22-4.24)등 큰 전공을 남겼으며, 다수의 사상자 발생(전사자 686명, 부상자 2,498명, 실종자 1,102명)
- 1987년 3월 11일 영국 한국전 참전 용사회의 주관 하에 St. Paul Cathedral 에서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제막식 행사가 엘리자베스 여왕 부처 참석 하에 거행(동 추모비 석재는 우리 정부가 기증)

4) 주요 협정 체결현황

- 1969.12.18, 사증면제협정(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가능)
- 1978.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 1978.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 1979.3.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3.9.22 개정)
- 1982.7.12, 문화협정

- 1984.3.5, 항공협정
- 1985.6.14, 과학기술협력협정
- 1990.10.24, 항공협정 개정
-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92.5.12 제 1 차 한영 원자력협의회-런던개최)
- 1996.10.25(서명), 이종과세방지협정(신협약)
- 1999.4.20, 사회보장협약(2000.8.1)

5) 한인사회 규모 (2005.8 월 기준, 출처: 주영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교민: 6,000 여명
- 체류자: 29,000 여명
 - 정부, 민간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가족 등 14,000 여명
 - 어학연수생 15,000 여명
- 지역별: 런던(25,000 여명), 기타(10,000 여명)

(주요 자료원: 주영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5. 주한주재국기관

□ 영국 대사관

- 주 소: 서울 중구 정동 4 번지 태평로 40
- 전 화: 02-3210-5500

□ 영국 문화원

- 주 소: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 61-21 중후 빌딩
- 전 화: 02-3702-0600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양국간 항공편 증편 추진

2001.6 월 한·영 항공회담 시 양국은 한국측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양국간 항공편을 현행 5 회에서 8 회로 증편할 것을 합의함.

2002.1 월 서울-런던간 항공편을 3 편 증편하여, 총 8 편을 운항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대한항공 5 편, 아시아나 3 편)

2004.5 런던에서 다시 항공회담을 개최, 서울-런던간 여객 편 운항회수를 주 8 회에서 최대 주 11 회로 증편하는데 합의함.

2006년 8월 기준 대한항공은 런던-서울간 매일 운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화, 목, 토, 일 4회 운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Convention) 발효

1995.3 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체결에 합의하고 1999.4 월 양국정부간 서명을 거쳐 2000.8.1자로 발효됨.

동 협정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 억 원의 세금면제 효과가 기대됨.

90년대 중반까지 삼성전자, 현대전자, LG 전자, 대우자동차 등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영국의 임금상승, EU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기 투자 설비도 폐쇄 또는 동구권으로 이전함.

□ 최근 한국 기업의 대영 투자

- 2003년: LG 필립스 뉴포트 공장(CRT 모니터)
- 2004년: 삼성전자 원야드 공장(모니터, 전자렌지), LG 전자 위싱턴 공장(전자렌지), 휴맥스 북아일랜드 공장(셋톱박스)

대영투자는 점차적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영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등 연구개발투자, IT 벤처기업들의 소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1996.4 부터 영국정부와 교섭하여 온바, 지난 2001.4 월말 양국간 원칙적 합의(1997.1.1 이전 면허에 대해 5년 무사고 증명조건부)에 도달함.

2002.3 월 조건부 운전면허증 교환이 영국 국내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97년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과 교환될 수 있도록 재교섭한 결과, 한 •영 양국은 2002.9.20 동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의 생활의 불편 완화는 물론 양국간 경제 •통상 •투자 활동 증진과 인적 교류에 기여함.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2006년에도 유효함.

라. 파운드화 약세로 상반기 대영 수출 감소, 하반기 회복세 진행

- 2005년도 대영 수출은 전년대비 8.5% 하락한 50억 7천 4백만 불을 기록.
- 대원화 환율도 2005년 들어 급격한 약세를 시현하면서 2004년 초의 1 파운드당 2,130 원에서 2006년 6월 15일 기준 1,769.2 원까지 떨어져 대영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
- 8월 30일 기준 대원화 환율 1825.8 원, 대미달러 환율 0.525 파운드로 보이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마. 영국, 경제정점 통과로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시현

영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4 년 3 월 1.1%까지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하여 올 해 8 월 기준 2.4%를 기록 중임.

물가상승률은 금년 중에는 이자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파운드화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국의 정책 목표도 2.0%임.

주택가격은 2003 년 이후 낮은 금리, 주택공급 부족, 금융기관간 주택 담보 대출 경쟁 심화 등으로 20% 내외 상승 시현한 바 있으며 2004 년 말 이후 경기 하락 움직임 및 부동산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로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음.

바. 영국 노동당 3기 연속 집권 달성

2005 년 5 월 5 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당의 3기 연속 집권을 달성함.

노동당은 정당 지지율 36.1%에 의석 수 197 개 확보로 의석비율 60%를 획득하면서 최대정당을 유지함.

보수당은 33.1%의 지지율로 197 석, 자유민주당은 22.6%의 지지율로 62 석을 차지함.

사. 영국 노동당 제3기 정부, Euro화 채택 안 할 듯

영국 노동당정부의 재집권으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제 3 기 집권기간 동안 이미 천명한 바 있는 유로화 가입을 위한 5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로화동맹(EMU; Euro Monetary Union)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암시함.

유로존이 낮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성장엔진에 문제가 있는 동맹으로 보는 영국 정부 시각이 반영됨.

유럽중앙은행은 경제변화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하며 유로존의 안정성과 성장조건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반해 영국은 지난 7 년간 파운드화 체제로 유로화존 보다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음.

아. 중국산 의류 EU 수입대란 타결 및 우리의 기회

2005 년 초 섬유쿼터 해제로 폭증한 중국산 의류 수입과 관련, EU 와 중국이 자율쿼터 협정을 맺은바 있으며 이후 이미 EU 항구에 계류된 중국산 섬유제품 중 연간 수입쿼터 초과분에 대한 문제를 양측이 각각 절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9 월 5 일 원만히 타결됨.

EU 와 중국 은 이날 장시간 협상 끝에 현재 EU 항에 수입 계류 중인 7,700 만점의 중국산 의류에 대해 절반은 올해 EU 수입쿼터를 확대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중국에 배당된 쿼터의 조기집행이나 쿼터 비 소진품목의 쿼터 분 대체사용 형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공급 선을 중국으로 전환한 EU 내 많은 의류 소매유통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감안, 2006 년도에는 해외 조달 처를 변경할 수 밖에 없어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의류의 수출 오더 증대 혹은 중국산 의류의 한국경유 수출 등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자. 영, 에너지가격 인상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핵 에너지 개발 강화움직임

영국은 지난 20 년간 핵발전소 건립 자체 움직임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발전소 증설 움직임 구체화. 현재 핵에너지는 영국 전체 사용량의 1/4 이 총당됨.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개요

- 영국정부의 금융통화정책은 1992년 ERM 잔류 당시까지는 파운드 환율방어에 우선 목표가 주어졌으나, 1992년 탈퇴 후부터는 인플레이션 억제(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는 2005년의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선은 2.0%로 설정, 이자율 조작을 정책적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CPI)는 6월 2.5%까지 상승하였으며 8월 기준 2.4%를 기록하였다.
-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금융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1997년 5월 Gordon Brown 현 재무장관은 통화정책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키 위해 중앙은행 Bank of England을 독립시켜 현재 이자율 결정은 중앙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에서 결정한다.

나. 이자율

- 2006년 8월 3일 영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이자율을 1년만에 4.5%에서 4.75%로 0.25% 인상을 결의하였다.
-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던 영국 은행의 정책금리는 2003년 11월 최저금리 이후 4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 인상(3.75%→4.0%→4.25%→4.5%→4.75%)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5년 8월 4일 장기 추세 선을 초과하는 높은 성장세 지속, 주택담보 대출의 급증세와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 물가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를 우려하여 금리를 0.25% 인하된 4.5%로 조정한 바 있다.
- 영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제조업 및 일반 소비에 있어서 2004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제조업 지수, 모기지론, 소비증가율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당착하였으며 이자율 0.25% 인하 등 금융정책 지원 등으로 지난 하반기 회복세를 나타낸 바 있다.
- 이번 이자율 인상은 발생 중인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2.4%인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목표 물가상승률인 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가상승, 주택 가격 인상 등으로 계속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영국 경제 동향

1) 세계 경제 조정국면에서 영국 경제 상대적 호조, 유로존 대비 높은 성장을 시현

- 영국경제의 성장률은 2.2%로 유로지역 평균인 1.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전년도 1.8% 성장 이후 안정된 기조로 성장세 유지
- 지난 2 사분기간 GDP 가 0.8%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됨. 이는 지난 1 사분기 0.7% 증가에 이은 것으로 주로 서비스 산업의 강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됨.
- 동 기간 동안 제조 업은 0.5%, 서비스 산업은 1.0%의 증가를 나타냄.
- 2006 년 상반기 실업률은 유로지역 평균인 8.0%나 미국의 4.6%에 비해 크게 낮은 3.0% 기록하며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분기간 실업률은 5.5%에 달해 지난 6 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미취업 인구가 약 167 만 명에 달하여 지난 연도 동기 대비 무려 9 만 명 이나 증가한 수치임.
- 실직수당 신청도 급증 하여 지난 7 월 기준 96 만명을 기록함. 이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인원 감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 분기간 동 분야에서만 약 11 만 2 천명이 실직 된 것으로 확인 됨.
- 영국경제의 상대적 호조는 영국이 그 동안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우선 경제안정기반이 정착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유로화 미 가입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및 증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 소비가 호조를 보인 점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2) 파운드화, 미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 전환

- 금년 초에는 영국 금리 인상으로 파운드 당 1.9 불 대에 달하였으나, 미국 금리인상이 실현되면서 1.8 불 대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유로화에 연동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3 월 파운드당 1.75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으며 그 후 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8 월 말 기준 1.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미 달러 약세와 파운드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유로화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EU 헌법 부결 이후 갑작스런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6 월 이후 급격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환율 추세 및 전망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8 월)	2007 년(전망)
\$ / £	1.78	1.85	1.81	1.90	1.89
€ / £	1.42	1.45	1.46	1.46	1.46
원 / £			1,833	1,825.8	

자료원: 영국 은행

3)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안정책으로 이자율 인상,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

-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5 년 연간 기준 1.9%에서 2006 년 기준 2.2% 유지
 -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집값 하락이 원인으로 지적됨.
- 물가상승률은 지난 5 월 2.2%에서 6 월 2.5%로 1997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8 월 초 영국은행의 이자율 인상 조치 등 물가 안정 노력을 통해 0.1% 감소세를 보이며 2.4%를 기록하고 있음. 동 기간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식료품 및 음료수 가격 인상, 담배가격 인상, 거실 미 부엌 가구 등 가구 가격 인상 등이 진행 됨
- 주택가격은 2003 년 이후 낮은 금리, 주택공급 부족, 금융기관간 주택담보 대출 경쟁 심화 등으로 20% 내외의 상승을 시현한 바 있으나 2004 년 말 이후 경기 하락 움직임 및 부동산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로 2006 년 초까지 완만한 보합세를 시현한 바 있음.
- 하지만 상반기간 주택 담보 대출 획득의 용이와 또 낮은 모기지 이자율 등으로 구매 수요가 늘면서 연간 성장률 5.9%를 기록함. 이로써 영국 내 평균 주택 가격은 167,723 파운드로 기록됨.
- 영국 부동산 등기청(Land Registry)에 따르면 지난 4 월부터 7 월 사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평균 집값을 전년 대비 7.71% 증가하였으며 주택 매매 건수도 2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4) 비 EU 권 수입 감소,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올해 들어 수출은 전년 수준, 수입은 EU 권으로부터 대폭 증가
- 경상수지는 서비스 및 투자수익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 주된 수출지역(전체 수출의 54%)인 유로지역 경기 부진 등으로 적자 지속
 - 2005 년 수입 4,967 억불, 수출 3,889 억불로 전년도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넘어선 1,078 억불의 적자 기록
- 2006 년 중에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출회복세와 금액기준 수입금액의 상대적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전망
 - 영국의 주요수입국은 2 위인 미국, 5 위인 중국, 11 위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부분 EU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20 위 수입국가로 자리 잡고 있음.

- 중국은 2005 년도에 2004 년에 이어 연 20% 이상의 대영수출 증가세를 기록하여 올해 중에는 영국의 4 대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가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독일	62,565	16.57	66,937	4.36
2	미국	41,852	5.83	41,438	-0.99
3	프랑스	36,238	10.27	37,096	1.13
4	네덜란드	32,267	26.67	34,485	5.49
5	중국	26,056	29.99	31,532	21.01
6	벨기에	22,883	15.14	24,024	4.05
7	이태리	21,689	12.85	21,877	-1.30
8	노르웨이	15,222	16.22	21,678	42.41
9	아일랜드	18,244	11.48	18,272	-0.37
10	스페인	18,244	11.48	17,173	7.44
..	..	..	..	..	..
20	한국	5,514	31.83	5,510	-0.07
..	..	..	..	..	..
	총계	462,562	17.14	496,557	6.4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5) 장단기 금리 상승세 시현, 올해 중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인하 검토 중

- 시장금리는 2003 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와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
 -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2003.11 월 최저금리 이후 4 차례에 걸쳐 0.25%씩 인상(3.75%→4.0%→4.25%→4.5%→4.75%), 2005 년 8 월 4 일 0.25%금리 인하 단행으로 4.5%를 유지해 오다가 물가상승 우려로 인해 지난 2006 년 8 월 3 일 1 년만에 다시 0.25%를 인상한 4.5%를 기록 중
- 금융시장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장기 추세 선을 초과하는 높은 성장세 지속, 주택 담보 대출의 급증세와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 물가상승 부담으로 향후 금리인상 기조 유지가 전망되었으나 2005 년 8 월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를 우려한 영국 중앙 은행이 금리 0.25% 인하를 단행한 바 있음.
- 올 상반기 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목표상승률인 2.0%를 0.5%나 초과한 2.5%에 달하자 유가상승,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으로 이자율 인상을 통한 제동장치 마련.

나. 한·영 무역 동향

- 2004 년 우리나라의 대영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4.7% 증가한 5,516 백만 불이며 대영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0.3% 증가한 3,793 백만 불 기록

- 2005 년 대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한 5,338 백만 불로 우리의 제 9 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17.2% 하락한 3,149 백만 불 기록

한·영간 수출입실적

(단위: US\$백만, %)

년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0	5,379(12.6)	2,575(22.8)	2,804
2001	3,490(-35.1)	2,354(-8.6)	1,136
2002	4,255(21.9)	2,437(3.0)	1,818
2003	4,094(-3.8)	2,703(10.9)	1,391
2004	5,516(34.7)	3,793(40.3)	1,723
2005	5,338(-3.2)	3,149(-17.0)	2,189
2006(1-2)	904(24.1)	411(-12.5)	493

자료원: KOTIS

- 최근 5년간 대영무역수지는 매년 15 억불 내외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시현
 -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05 년에 1 억 8 천 9 백만 불로 확대

2005 년 대영 수출입 추이

(단위: US\$백만, %)

구분	2005.7	2005.8	2005.9	2005.10	2005.11	2005.12	2006.1	2006.2
수출	434(1.3)	426(3.8)	506(25.4)	420(16.2)	553(26.4)	523(-0.1)	570(47.0)	904(24.1)
수입	323(14.3)	338(31.8)	243(-2.6)	229(0.6)	269(12.9)	218(-14.0)	195(-22.8)	215(-0.6)

* (): 전년대비 증감률

- 2006 년 들어 수출은 무선핸드폰 및 자동차, 산업용 기계, 선박 등의 수출 호조 세에 힘입어 강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의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별 수출동향을 살펴 보면, 대영 수출은 수출 비중 및 추세치에 있어 중화학제품과 IT 제품 수출에 경도된 수출구조로 1 차산품과 경공업제품은 수출액도 미미하고 감소 추세가 완연한 산업별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별 대영 수출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차 산 품	42	42.4	24	-40.6	18	-28.2
경공업제품	503	0.1	506	0.5	440	-13.0
중화학제품	3,549	-4.2	4,986	40.5	4,881	-2.1
IT 제품	1,736	-12.3	2,334	34.4	2,317	-0.7
기타	1,812	4.0	2,651	43.6	2,563	-3.3

자료원: KOTIS

* 산업별 수출금액 합계는 중복통계로 인해 대영 수출총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수출기업 구조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인 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 소수 대기업 생산 제품이 대영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주도형 수출구조라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영 수출비중은 2005 년 기준 총 수출액 53 억 3 천 8 백만 불 중 경공업 제품 및 IT 제품 일부를 포함하여 대략 8 억불 내외로 추산되어 전체 대영 수출 액 중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상품의 특성 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2004 년 들어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출 비중이 역전 되고 2005 년 들어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의 대영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산업 기계, 선박, 반도체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상품 성질별 대영 수출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자재	451	-3.9	520	15.2	529	1.8
자본재	1,845	-22.3	2,093	13.4	1,879	-10.2
소비재	1,797	27.5	2,901	61.5	2,928	0.9
기타	0.8	-15.3	0.9	3.9	765	-17.1
총계	4,093.8	-3.8	5,516.0	34.7	5,338	-3.2

자료원: KOTIS

주요 수출품목별 2006 년도 대영 수출전망

(단위: US\$백만, %)

품목명(MTI 코드)	2004 년	2005 년	2006 년 전망(증감률)
일반기계(71,72,73,79)	156(58.7)	208(33.3)	284(30.0)
자동차(741)	1,019(77.3)	1,085(6.5)	1,289(10.0)
선박(7461)	449(95.5)	392(-12.7)	500(27.5)
철강제품(61)	81(90.1)	55(-12.2)	44(-12.0)
석유화학(21)	63(24.1)	67(-16.6)	80(15.0)
섬유류(4)	225(-13.4)	162(-27.7)	138(-12.4)
컴퓨터(813)	693(-15.2)	399(-42.4)	288(-20.0)
무선통신기기(812)	1,070(180.9)	1,377(15.7)	1,354(10.0)
반도체(831)	276(-2.2)	344(24.6)	405(15.0)
가전제품(82)	534(-3.4)	381(-28.5)	384(-)
타이어(3203)	105(27.8)	112(7.5)	139(20.0)
플라스틱제품(31)	57(22.0)	57(1.2)	58(-)
자동차부품(7420)	49(25.6)	64(31.3)	85(30.0)

주: 우리나라 13 대 수출 주력 품목

9. 주요 산업 동향

가. 영국 주요 산업별 요약

1) Automotive

영국은 유럽 내 5 대 자동차 생산국가로 8 개의 자동차 생산업체와 500 개 이상의 관련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음. 세계 20 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 17 개사가 영국 내 생산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엔진 디자인과 독립적인 애프터마켓에 특히 강점이 있음. 영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 총 수출액은 연 200 억 파운드를 초과함.

2) Biotechnology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의 주도하고 있음.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체 중 3/4 정도가 영국 회사로 추산됨. The Bio-industry Association 에 따르면 유럽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장은 약 600 억 파운드 규모임.

3) Pharmaceutical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120 억 3 천 710 만 파운드 수출을 기록함. 대표적인 고용시장으로 약 83,000 명의 직접 고용 창출

4) Electronic & IT Hardware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첨단 전자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 또한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11.82 십억 파운드 시장을 형성함. 또한 최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5%의 영국 성인인구가 집에 컴퓨터 보유하고 있으며 53%의 성인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국 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대략 8 백만 명에 이름.

5) Broadcast Technology

영국이 세계시장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200 개의 관련 회사가 존재하며 방송기술과 방송가전제품을 통해 각각 약 890 백만 파운드와 2.55 십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함. 현재 디지털 TV 시장에 있어 66%의 가구 보유율을 나타내는 성장 분야임.

6) Telecommunications

현재 6 천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회사인 보다폰과 BT 등 유수의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음. 또한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고로 한 해 약 144 백만 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증가세임.

나. 금융업

1) 산업현황

영국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 동경과 더불어 세계 3 대 금융시장으로 유럽 내에서는 제 1 위 시장이다. 뉴욕과 동경 금융시장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반면, 런던은 국제 도매금융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타 금융센터에 비해 외국 금융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큼.

영국 런던 금융시장은 Bank of England 본점 건물을 중심으로 Tower of London, Liverpool Street, Holborn, Embankment 를 잇는 1 평방 마일 면적의 City of London 에 형성되어 있음.

세계 최대 외환 및 국제 주식거래 시장: 외환거래액의 32%, 국제 주식거래의 59% 점유. 세계 최대 펀드매니지먼트 센터: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액이 1 조 8000 억불 상회. 세계 4 위 보험시장임.

2) 금융분야별 현황

□ 은행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building societies 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은행과 building societies 는 도매금융과 함께 소매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일부 은행과 상업은행, 외국은행들은 도매금융에 치중하고 있음.

○ 상업은행(merchant bank)

-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으로는 Barclays, National Westminster, Lloyds TSB, HSBC 등으로 국내외에 대규모 지점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이들 대형 은행들 외에도 적은 지점망으로 제한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규모 은행도 많음. 영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예금, 대출, 환전 등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 외에도 카드, 주택구입자금대출(mortgage loan), 보험, 투자신탁, 연기금 관리, 증권, 리스, 팩토링 등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함. 상업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추세와 함께 비은행 기관의 은행업 진출도 최근 특징. 보험회사와 슈퍼마켓의 은행업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대형 슈퍼체인 중 하나인 Sainsbury 의 계열은행은 이미 고객 수 70 만명, 예금고 15 억 파운드를 돌파했음.

○ 투자은행(investment bank)

- 영국의 투자은행들은 1986 년 금융 박빙 이후 대부분 외국(주로 미국) 투자은행에 인수되었는데, 영국 내 주요 투자은행들로는 Lazard, SBC Warburg Dillon Read, Schroders, Goldman Sachs, NM Rothchild 등이 있음.

○ 외국은행

- 런던 금융시장의 국제 대출 거래액이 전세계 거래액의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80 개국의 은행들이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의 형태로 런던에 진출하고 있음.

○ Building Societies (주택저당대출조합)

- 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조합원에게 담보부(통상 주택담보)로 장기 주택 금융 제공을 주영업으로 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이중 규모가 큰 기관들은 mortgage loan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개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

런던은 국내외의 주요 보험회사가 진출하여 Lloyd's Market 을 중심으로 전세계 국제 일반 보험 거래의 약 20%를 취급하는 세계적 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 위임. 현재 약 800 여 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며, 이중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회원사는 450 개에 달함. 영국 보험 시장의 특징적인 존재로 Lloyd's 를 들 수 있는데, Lloyd's 는 개별 보험인수인 (underwriters)들이 참여하는 클럽적 성격을 갖는 법인체인 하나 회사라기보다는 보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함. Lloyd's 의 회원들은 보험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인수함. 또한 201 개의 보험브로커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브로커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피보험자(주로 재보험을 의뢰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로이드 신디케이트와 피보험자간 보험계약을 알선. 중개하고 있음.

□ 증권시장

뉴욕, 동경과 함께 세계 3 대 증권시장의 하나로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총 2,613 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이중 419 개가 외국계 기업임.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영국회사가 1 조 423 억 파운드, 외국회사가 2 조 804 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음. 그밖에 장외 투자시장 (AIM)에 중소기업 312 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시가총액규모는 7 조 달러 정도임. 런던 증권거래소의 거래방식은 전통적으로 객장호가방식을 취해 왔으나 1997 년부터는 일부 대형주 거래에는 전자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전자거래방식(screen based trading)으로 전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에너지산업

영국은 천연석유 및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내 자원 강국 임. 1980 년대 후반 가스 부문을 필두로 시작된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따라 1999 년 5 월까지 전기, 석탄, 원자력 부문이 모두 완전 민영화되었음. 특히 전기산업의 경우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용 전기 판매업을 완전 개방, 각 가정은 원하는 전기공급 업체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내외국인 무차별 정책에 따라 지역 전기공급 업체들의 상당수가 외국기업, 주로 미국기업들에 인수됨으로써 상당 수준의 민간경쟁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음.

영국 정부의 기본 에너지정책은 '민간 자율경쟁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경쟁적인 가격에 소비자에 안정공급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영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50 백만 톤(석유단위 기준)으로 교통. 운송용 32%, 산업용 20%, 주거용 32%, 상업. 농업. 공공 서비스 12.8%, 비 에너지부문 사용이 7.7%를 차지하고 있음.

라. 유통업

1) 산업 구조

영국의 전체 소매판매액은 연간 약 2 천억 파운드(약 380 조원 규모)정도 규모가 되며, 그 가운데 식료품 소매판매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영국에는 부가세 납부 기준으로 약 20 만개 정도의 소매업자가 소매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영세규모로 전체 소매유통업체의 약 85%가 연간 매출액이 50 만 파운드(약 9 억 원)이하임. 1%미만의 유통업체가 연간 매출액 500 만 파운드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영국 소매유통구조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0.1%미만의 유통업체가 100 개 이상의 아웃렛(매장)을 가진 소매업체로 전체 소매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0%가 하나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단일 상점 운영 소매업체가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전체 소매업체수는 90 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소매업체수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 진입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데가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소매업체 등장으로 업체간 시장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음.

2) 부문별 유통시장 현황

□ 식음료품 및 담배 유통업체

비 식료품 소매유통업체보다 수적으로 약 2 배 정도 많지만, 규모는 영세함. 실제로 영국 전역에 걸친 체인망을 통해 식료품에 특화된 일부 업체들이 급속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최근 그 동안 세컨더리 그룹으로 분류되던 식품유통시장에도 대형 상위 식료품 전문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규모의 경제를 배경으로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영세 유통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류, 신발 유통업체

동 품목의 소매 유통시장은 전체 소매 판매액을 지난 10 년간 상회하면서 성장해온 분야임. 그러나 의류 신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차 필수용품 범주에서 벗어나면서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이 종전과 달리 주기를 타게 되었음. 게다가 최근 들어 외국계 유통기업 등 새로운 시장 참여기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디스카운터 체인점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점차 판매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시즌에 상관없이 연간 계속 디스카운트 판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 품목은 최근 들어 가격 디스카운트가 가장 활발한 품목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

□ 백화점

백화점은 글자 그대로 전통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유통점의 한 형태임.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덩치가 큰 가구 소비품목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신발, 의류가 가장 중요한 백화점 취급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음. 중상위 클래스 소비계층을 판매계층으로 한 백화점이 디스카운트 매장과 경쟁하는 일부 백화점보다 매출액에서 유리한 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장 운영에 지출 경비의 과다소요가 여타 형태의 소매상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잠재적인 불안 요인임.

□ 기타 유통품목

기타 유통 품목 취급 유통업체들 가운데 가구, 전자제품, DIY 용품 등 일반 가게 소비 제품 취급 소매유통업체수는 기타 품목 유통업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의 비중은 42%에 이르고 있음. 이들 품목을 제외한 비 식료품 유통업체 숫자는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나머지 15%정도의 유통업체들의 non-store 및 수선유지 보수 전문 유통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음. 비 식료품 품목의 특성상 동범주에 속하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소매판매 역시 품목별도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소위, 경기를 타는 품목들 가운데 대표적인 가구 제품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감 및 주택시장의 경기와 매출 증감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DIT 제품군 역시 하우스링 마켓에 영향을 받음. 특히 새집으로 옮기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수요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현재 사는 주택에 대한 Renovation 또는 데커레이션 등에 수요가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몇 년간 가장 급신장하고 있는 품목은 디지털 기술 보급으로 인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제품군임. 하지만, 이들 수요 진작분이 상당부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로 그만큼 유통업체 대한 마진을 줄어들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이들 품목군 역시 경기를 타는 품목군으로 안정적인 필수 매출 규모가 보장되지 못하는 품목군에 속함. 일반 가게 소비재 및 전자제품군을 제외한 기타 비 식료품 품목들의 경우, 최근 5 년간 전체 소매판매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메일 오더

일종의 다이렉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이들 유통업체들은 각기 자사의 부진을 만회 하기 위해 보다 세련된 전문화 타깃 소비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쇼핑분야는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마. 의류제조업

영국시장조사기관인 Key Note 에 의하면 영국의 의류판매액은 약 280 억 파운드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판매가 인하 추세로 금액기준으로 판매액은 최근 5 년 사이 약 20%내외 늘어났음.

의류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 편으로 이는 영국의 가장 큰 의류 판매업체인 Marks and Spencer 가 지난 99 년 판매하는 의류의 대부분을 영국제조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외부 아웃소싱 하겠다면서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대형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음.

그 결과 2000 년도 초에 영국 내 많은 의류제조업체가 파산한 바 있으며, 수천 명의 실업을 초래했음.

영국 의류산업의 장래는 근년의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음. 의류생산의 저숙련, 낮은 부가가치의 특성으로 인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유럽, 북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90년대 말 패션의류 시장의 침체 또한 영국 의류판매업체들을 강타했으며 그 결과 가격경쟁이 더욱 심해져 영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제품을 조달토록 하고 있음.

영국의 대량의류제조업(Bulk manufacture)의 전망은 밝지 않음.

영국 의류수출의 많은 부분(약 60%)이 EU 국가로 수출되는 반면에, 수입의 2/3는 EU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2005년 EU 차원의 섬유쿼터 해지 영향으로 중국 및 인도산 저가의류가 범람하고 있음.

○ 의류제조 주요 업체

- Coat Viyella Plc 주요 브랜드: Jaeger, Viyella, Van Heusen, Peter England, Tootal 등
- Courtaulds Textiles Plc
- Pentland Group Plc: Speedo 등의 스포츠의류 및 스포츠화 브랜드 보유
- William Baird Plc
- Dewhirst Group Plc
- Sherwood Group Plc
- Alexon Group Plc
- Dawson International Plc
- Umbro Europe Ltd
- Austin Reed Group Plc
- Alexandra Plc

○ 각종 협회 및 단체

- British Apparel and Textile Confederation(BATC): 1992년에 창립되었으며 의류 및 직물류관련 협회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이며 영국의 의류 및 직물제조업체의 80%가 포함되어 있음 (Website: www.batc.co.uk)
- British Textile Machinery Association: 1940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직물제조기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바. 전자부품, 반도체 시장 동향

1) 시장규모

유럽 전자부품 시장은 대략 106개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약 226,000명 정도의 직접고용효과 및 477억 유로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는 세계시장의 19% 수준임.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시장이 전체의 51%를 차지한 가운데 Automotive, 소비가전, 산업 부문 순으로 점유율을 유지함.

EU 내의 통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EU15' 외의 국가들의 성장세가 크게 돋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국(아일랜드 포함)의 경우 15억 유로 성장으로 총 100억 유로를 돌파함으로써 22.51%의 점유율로 1위 독일을 근소한 차로 추격하고 있음.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굴곡이 심한 시장주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5 년도 기준 350 억 달러 내외의 시장규모로 추정됨.

제품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보면 DRAM 이 +48.3%, Flash EEPROM 이 +26.5%, Special Purpose Logic 이 42.8%, Micro controllers 가 +33.7%, Optoelectronics 가 +64.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2) 시장 동향

최근 유럽 내 반도체 시장의 큰 특징은 제품수명주기의 급격한 단축과 지속적인 가격인하로 인한 세계시장의 공격적인 압력으로 보다 속도감을 더한 혁신적인 시장이 형성된 것을 들 수 있음.

반도체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투자 부담(약 20~30 억 유로)으로 인해 생산업체 극히 제한되어 있어 2005 년 기준 22 개 회사가 유럽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음.

영국 내 신 칩 제조비용이 대략 US\$20~40 백만에 달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부문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 됨.

현재 세계 소비가전 시장을 위한 반도체 칩 제조의 70%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영국 시장의 추세는 직접적인 칩 생산보다는 SoC(System-on-chip) 등 차세대 칩 디자인이나 코어 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IP) 판매 및 라이선싱이 성장세를 보임.

따라서 System-on-chip 솔루션이나 나노기술 등과 같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성능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의 전자 칩 업체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함.

최근 각종 산업의 화두인 컨버전스 추세와 각종 휴대 전화기나 디지털 카메라, 이동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에 따라 성능 향상과 소형화 추세로 인해 SoC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영국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자인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US\$95 백만 규모로 유럽 전체 전자 디자인 판매이익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임.

유수의 미국, 일본의 다국적 회사들이 영국 내 디자인 오피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디자인 지원을 받고 있음.

Cambridge 에 기반을 둔 ARM Holdings 의 경우 대표적인 IP 회사의 성공사례로 독자적인 'ecosystem' 의 개발을 통해 지난 15 년 간 350 개의 회사와 라이선싱을 진행하고 있음.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세계적인 SoC 개발센터인 알바(Alba)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7 년 반도체, 전자제품 설계기술의 세계적 중심지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설립

된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인 해외기업과 투자 유치 성공의 예로 들 수 있음.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ISLI 과 지적재산(IP) 판매소인 VCX 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 외 영국 내에는 유럽 내에서 최대 수준의 전자 시스템 관련 약 150 개의 독립 디자인 하우스가 존재하며 최근 동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영국 내 대형 디자인 하우스로는 Plextek, Cambridge Consultants, Generics, Cadenc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RF,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전자부품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음.

영국 내 디자인 전문 업체들로는 Altera, Cambridge Silicon Radio, Clearspeed, Technology, CML, Oxford Semiconductor, Swindon Silicon Systems, Wolfson and Xilinx 등이 있음.

3) 유통 구조

대다수의 전자부품 및 반도체 업체들은 독립적인 유통업체를 통한 공급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대략 80%의 제조계약 업체가 50%이상의 부품을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있음. 이는 제조업체들이 더욱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매자들 역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단일창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구매가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대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OEM 업체들과의 직접 공급을 유지하고 있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에 있어서는 상당량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영국 현지의 OEM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부 조립, 조달, 테스트 등 업무 부문에 대한 해외이전을 단행함.

현재 영국에는 약 50 개의 대규모 전자부품 및 반도체제품 관련 프랜차이즈 유통업체들이 있으며 비슷한 숫자의 일반 유통업체들이 틈새시장에서 사업중임.

지역적으로 유통시장은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The North East, Central Scotland, South Wales 등에 위치함.

4) 영국 시장 성공 사례

영국은 전자시스템 디자인 분야에 있어 유럽의 중심이며 영국 기술자들은 다양한 신제품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가능케 하는 전자 시스템 디자인에 전문하며 혁신(Innovation)과 복잡성의 관리(Management of Complexity) 등에 강점을 나타냄.

세계 유수의 전자 업체들이 영국 내에 디자인 및 R&D 센터를 운용하거나 제조업체들과의 Joint Venture 를 통한 마케팅 진행, 혹은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하였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통해 지적재산권(IP) 판매/라이선싱 시장 활발

- ARM: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코어 개발자. 동사의 ARM7 코어의 경우 텔레콤과 네트워크 코어 프로세서로 선택되고 있음

- Amphion, ARC: 'reconfigurable processor cores' 틈새시장을 개척, 라이선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찾고 있으며 동사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하우스인 Clearespeed Technology 사의 Fuzion 150 그래픽 칩의 코어로 채택됨.

그 외 TTPCom 이 3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Cambridge Silicon Radio 가 Bluetooth 에서 시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ST Microelectronics(구 Vision Ltd)가 개발한 CMOS 카메라 모듈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영국 Bristol 에 위치한 칩 개발업체인 Icera 의 Livanto ICE8020 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단말기를 겨냥한 프로세서로 3G 기술인 UMTS, WCDMA 에 비해 속도가 향상된 소위 3.5G 기술임.

5) 유망 분야

최근 년 미국의 이동통신업체인 Cingular 가 HSDPA 통신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까지 세계 대다수의 단말기가 3G 기술보다 낙후된 상황이어서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변화 속도에 상응하는 단말기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HSDPA 프로세서 기술이 필요할 전망이다. Signal Research Group 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4 년 안에 200 백만 대 이상의 HSDPA 가능 단말기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이동형 GPS 반도체 판매 시장은 2008 년까지 180 백만 대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Bioinformatics, Biochip 등은 대표적인 IT, BT, NT 등 차세대 미래 기술의 융합 분야로 이미 제품화에 성공으로 2004 년 세계 Biochip 시장은 \$3.3 십억 규모에 달했으며 급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현재 모토로라, Agilent, Caliper 등이 개발 제휴 등을 통해 Lab-on-chip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향후 2~3 년 내에 신약개발, 임상 진단용 칩의 상용화가 더욱 진전되고 DNA 칩과 Bio-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의 융합을 통한 작고 저렴한 고속탐색시스템 시장이 본격화 전망됨.

6) 성공 전략

정부나 기업 차원의 지원을 통해 영국의 코어개발 및 반도체 디자인 교육기관이나 디자인 센터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됨.

Bluetooth, Navigator, Mobile Game, Smart Card 등 유망 분야 선정을 통한 집중 틈새 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함.

영국 내에 디자인 및 R&D 센터를 운용하거나 제조업체들과의 Joint Venture 를 통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음.

7) 시장전망

WSTS 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럽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 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침체 후 올 2006 년 이후부터는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Autumn 2005	Amounts in US\$M				Year on Year Growth in %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Americas	39,065	39,941	41,715	45,401	20.8	2.2	4.4	8.8
Europe	39,424	39,491	41,495	45,506	22.0	0.2	5.1	9.7
Japan	45,757	44,489	46,841	50,771	17.5	-2.8	5.3	8.4
Asia Pacific	88,781	103,138	115,202	129,535	41.3	16.2	11.7	12.4
Total World - \$M	213,027	227,059	245,253	271,213	28.0	6.6	8.0	10.6
Discrete Semiconductors	15,762	15,175	15,656	16,751	18.1	-3.7	3.2	7.0
Optoelectronics	13,726	14,917	16,597	18,511	43.8	8.7	11.3	11.5
Sensors	4,767	4,632	5,491	6,436	33.6	-2.8	18.6	17.2
Integrated Circuits	178,772	192,336	207,509	229,515	27.7	7.6	7.9	10.6
Analog	31,367	31,480	33,927	37,249	17.1	0.4	7.8	9.8
Micro	50,734	54,932	60,228	66,103	16.6	8.3	9.6	9.8
Logic	49,535	57,527	62,083	69,232	33.4	16.1	7.9	11.5
Memory	47,136	48,397	51,271	56,931	45.0	2.7	5.9	11.0
Total Products - \$M	213,027	227,060	245,253	271,213	28.0	6.6	8.0	10.6

Note: Numbers are rounded to whole millions of dollars, which may cause totals by region and product group to differ slightly.

자료원: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영국 내의 반도체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적용의 확대가 크게 기대되는 산업 분야들이 최근 성장세나 긍정적인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 경쟁력이 기 확보된 산업기반 하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됨.

사. 정보 통신 산업 동향

1) 통신 산업 현황

영국의 정보통신시장은 Ofcom(the Office of Communications)이 통제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정보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전략수립 및 검토를 담당함.

영국의 통신시장은 지난 2005 년 기준 총 53.21Bn 파운드 규모 시장으로 이는 최근 가격 경쟁의 심화와 강화된 가격 규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압력 등으로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2006 년도에도 2.7%의 성장을 통해 54.67Bn 파운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Table 8: Turnover of the 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n), Years Ending March 2001-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e 2006
Turnover (£bn)	43.67	45.50	48.93	50.85	53.21	54.67
% change year-on-year	-	4.2	7.5	3.9	4.6	2.7
<i>e — Key Note estimates</i>						
<i>Source: Annual and Quarterly Turnover Inquiries, National Statistics</i>						
<i>© Crown copyright material is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troller of HMSO (and the Queen's Printer for Scotland)/Key Note</i>						

자료원: Keynote

유선통신 부문의 축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선통신 부문이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인터넷 서비스 부문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G 서비스가 무선통신 시장의 발전을 주도 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며 비디오 메시지, 비디오 텔레포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광대역 ADSL 등이 주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유무선 컨버전스'도 또 다른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브리티시 텔레콤이 유무선 복합 전화 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2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혹은 국제 통신사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규모가 큰 기업고객에게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성의 영향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으나, 수입규모의 확대와 유통채널간 가격경쟁으로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영국의 IT 시장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2005
하드웨어	22,027	24,136	26,294	29,008	31,560	33,789	8.9
패키지	11,387	13,053	14,973	17,177	19,730	22,680	14.8
서비스	24,588	27,745	30,909	34,268	37,752	41,499	11.0
IT 합계	58,002	64,934	72,176	80,454	89,042	97,968	11.0

자료원: IDC

영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와 스코틀랜드의 '실리콘 글렌'이라는 곳에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영국의 특징은 산학 협력이 잘 되어 있다는 점과 금융이 잘 발달된 까닭으로 벤처기술의 인큐베이팅 즉 보육활동이 활발함.

2) IT 인프라 현황

□ 통신서비스

영국의 통신시장에 있어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5년간 8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Table 12: Comparative Growth in the UK Telecommunications End-User Market by Sector (%), Between Years Ending March 2001 and 2005	
	% Growth 2001-2005
Cellular or mobile services	84.0
Fixed-line services	-20.0
Other end-user services	41.8
Total	19.7
Source: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Key Note	

최근 영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총 6 천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67 억 분의 통화량과 284 억 개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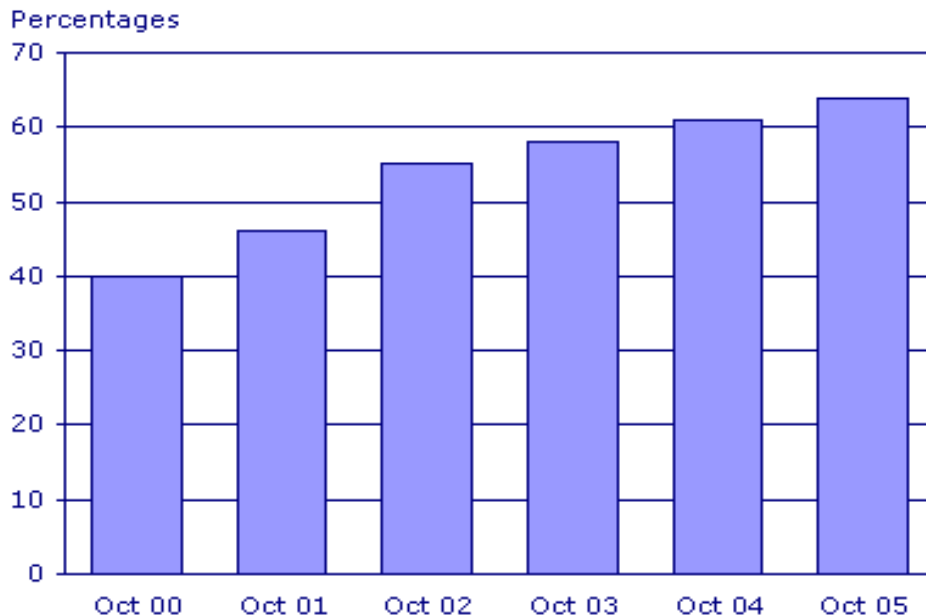
Table 16: The UK Cellular or Mobile Services Sector by Volume (million call minutes, million messages and million subscribers), Years Ending March 2001-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Retail minutes (million minutes)	38,206	46,292	53,827	60,489	66,774
Text and picture messages (millions)‡	8,041	13,201	18,410	22,359	28,407
Subscribers (million year end)‡					
Post-paid	12.8	14.3	15.9	17.4	20.0
Pre-pay	30.7	32.0	33.8	37.2	40.2
Total Subscribers	43.5	46.3	49.7	54.6	60.1
† — including estimates for Three, whose figures are not collected by Ofcom					
‡ — excluding data for Virgin Mobile					
Source: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Key Note					

영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보다폰이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Orange, O2, T-mobile 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T-mobile 이 Virgin 을 포함하여 약 1600 만 명으로 1 위를 기록하고 있음.

Table 17: Shares of the UK Cellular Market by Value and Volume (%), Year Ending March 2005				
	Calls and Fixed Charges (%)	Messaging (%)	Total Revenue (%)	†Subscribers (%)
Vodafone	29.3	25.1	28.6	22.6
Orange	23.3	25.4	23.7	23.8
O2	22.6	28.6	23.7	23.9
T-Mobile	17.9	14.3	17.3	24.6
Three	6.8	6.6	6.8	5.0
— (of which Virgin Mobile)‡	-	-	3.6	8.9
Total	100.0	100.0	100.0	100.0
† — at year end,				
‡ — the largest Virtual Network operator, whose figures are included in those for T-Mobile				
Note: totals may not sum due to rounding by source.				
Source: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Key Note				

□ 인터넷 보급 현황

영국 성인인구의 75%가 집에 컴퓨터 보유하고 있음. 2005 년 말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64%의 성인 (약 2 천 9 백만 명)이 최근 3 개월 내 기간에 인터넷접속을 하였으며 총 92%의 성인인구가 한 번 이상의 인터넷 접속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 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자들의 92%는 정보획득을 위한 검색엔진에 접속하였고, 78%는 이메일 송수신, 32%는 채팅룸이나 뉴스클럽에서의 메시지 교환, 22%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됨.

53%의 성인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300 만 가구에 해당됨. ISP review 에 따르면 영국 내에는 총 730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ISP 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이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141 개의 비정량제 다이얼업 접속 ISP 와, 가입비 없이 로컬 전화요금을 부과하는 다이얼업 접속 ISP 229 개, 로컬전화요금 및 가입비 부과 다이얼업 접속 ISP 63 개, 무선 ISP 43 개, ADSL ISP 209 개, 그리고 3 개의 케이블 모뎀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와 45 개의 위성접속 ISP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 Telecommunication Service

영국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 현재 약 550 억 파운드 시장(유럽 내 2 위 시장)으로 외국 통신서비스사의 서비스 시장 진출규모는 100 억불 상회하는 큰 시장임.

○ 영국 통신 서비스 시장 최근 현황

- 휴대폰 서비스 시장 성장이 최근 5 년간 80% 증가하며 영국 통신서비스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이동통신망 가입자 수 6 천만 명 돌파
- 다양한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로의 컨버전스(Convergence)진행
- 각종 통신 장비류의 시장침투율 50%육박
- 3G 휴대폰 단말기의 보급 확대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 진출 가능성

- 영국 내 전반적인 정보통신 산업 규모의 지속적 성장 속에 특히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와 각 기업들의 인터넷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비즈니스 지출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VoIP, DMB, NAV 등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영국 시장 참여 기회 확대 가능성

○ 진출 경로 및 유의사항

- 진출초기에는 외국회사들과 전략적 제휴 강화 필요
- 기존 시장 경험 활용을 바탕으로 특정분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장 확대
- 이를 위한 기반작업으로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시급

아. 제약산업 현황

1) 시장특성

영국의 제약 산업은 석유와 발전 및 동력기기와 함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며, 기술집약적인 동시에 규제가 많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시장이기도 함. 영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10 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으며, 튼튼한 산업기반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교육시스템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영국의 주요 산업 군의 순위와 변화

Trade surplus rankings for 15 major UK industry sectors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Petroleum, etc.	56	21	1	2	1	1	1	1	2	
Power generating machinery	1	2	2	1	3	2	2	2	1	
Medicinal & pharmaceutical products	6	4	6	3	2	3	3	3	3	
Gas, natural & manufactured	25	56	59	46	14	5	5	5	4	
Specialised machinery	3	1	6	7	5	4	6	6	5	
Chemical materials & products	7	9	7	5	6	6	7	7	6	
Dyeing, tanning & colouring	8	11	10	9	11	9	10	9	7	
Tobacco	39	20	17	13	12	7	9	10	8	
Professional & scientific equipment	14	13	9	10	8	8	8	10	9	
Inorganic chemicals	23	14	16	23	21	11	11	12	10	
Essential oils & perfume	12	10	12	11	9	10	12	11	11	
Beverages	6	5	8	8	7	12	14	13	12	
Textile fibres	35	34	36	24	25	20	18	16	13	
Crude fertilizers & minerals	34	35	28	18	22	17	17	17	14	
Hides, skins, etc	24	29	18	16	23	16	17	15	15	

Notes

* Subject to revision

Source

Business Monitor MM20 (HM Customs & Excise)

Business Monitor MQ20 (HM Customs & Excise)

지금도 한 해에 투자되는 연구비만 해도 £3.3bn 에 이르고 있고, 27000 명의 연구 인력이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매년 많은 신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음.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처럼 실제 이익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투여되는 자본의 규모가 큰 대표적인 고 위험산업으로 꼽히고 있음.

최근에는 시간이 갈수록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신약들의 경우에도 성공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최종 개발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출시된 이후 부작용으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위험에 비례하는 반대급부 또한 상당히 커서 소위 ‘블록 버스터’ 신약의 경우 수 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음.

2) 산업구조

현재 영국의 제약 산업 전반은 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는 70000 여명, 여기에 직간접적인 모든 고용인구를 합친 수는 250000 명에 다다름. 이중에서 R&D 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만해도 27000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연구기술이 핵심적인 산업임. 또한 18400 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310 개의 중소 생명공학 회사들이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과학계까지 포괄하면 430 여 개의 회사와 약 23000 명을 추가 할 수 있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매우 작고, 10 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벤처 회사들이며, 옥스퍼드 근처, 캠브리지 주변, 북서지방의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근방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제약 및 생명공학계가 사용하는 연구비는 영국의 전체 연구비의 39%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이 18%라는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영국 제약산업의 고용변화 추이

	Employees (1,000s)	R&D employment (1,000s)	R&D as a % of total employment	Gross output per employee £	GDP per employee£
1975	67	10	15	12,077	
1980	73	12	17	33,315	
1985	67	15	22	60,239	
1990	71	18	26	90,549	
1991	73	19	26	96,552	
1992	74	20	27	108,686	
1993	69	21	30	119,709	58,117
1994	69	20	29	134,323	63,271
1995	62	17	27	160,242	70,872
1996	59	19	32	163,622	71,139
1997	54	20	37	192,980	83,821
1998	68	21	31	156,831	73,271
1999	70	21	30	170,349	74,061
2000	66	25	38	190,492	82,186
2001	71	27	38	198,862	90,077
2002	84	29	35	186,226	79,881
2003	73	27	37	205,562	77,863

Notes

Prior to 1981, employment figures are based on SIC 1968,
from 1969 to 1985, on SIC 1980, thereafter, on SIC 1992

From 1998, employment and output figures were collected under Annual Business Inquiry introducing a discontinuity in the series

Source

Annual Census of Production (ONS)
Annual Employment Survey (ONS)
Census of Employment (ONS)
Labour Market Trends (ON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ONS)
Annual Business Inquiry (ONS)

영국의 제약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들 또한 다국적 대기업들로서 그 중에서도 세계제약 업계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계 회사인 GSK(GlaxoSmithKline)와 Astra Zeneca 임.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도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다양한 시장의 요구들을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험분산을 위하여 여러 연구기관, 벤처기업 그리고 대학교들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또한, 각자 자신들의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EU, 미국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 또한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특허가 만료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제네릭’으로 불리는 카피 약들의 진입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특허기간의 만료 전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거대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작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거나, 혹은 제약 자체가 아닌 약물 전달 체 (Drug delivery)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도 함.

3) 시장규모

영국의 제약시장은 정부의 의료보험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0년의 £8.36bn에서 2004년도 £12.32bn으로, 2004년에는 무려 연 10.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영국 제약 시장 2000-2004

(£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
가격 (£백만)	8,356	9,038	10,125	11,149	12,320
% 연간 변화율	-	8.2	12.0	10.1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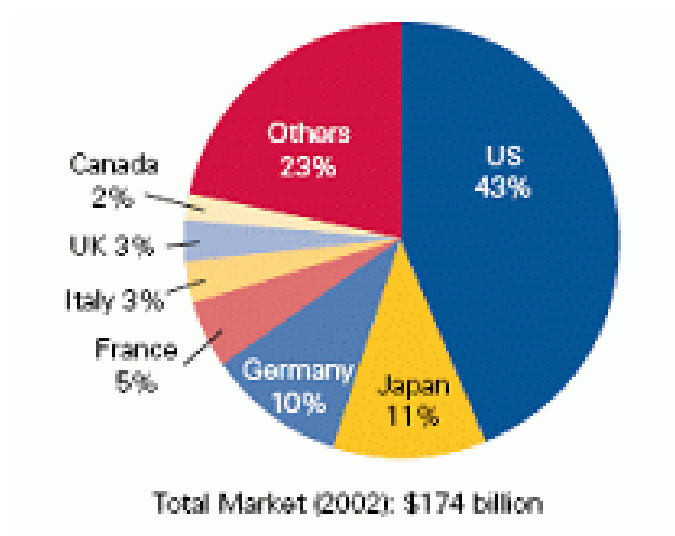
자. 의료기기 산업동향

1) 시장특성

세계에서 영국은 의료기기기술 및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음. 영국은 세계에서 5 번째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매년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2006년에는 평균 8.8%, 그리고 2008년에는 9.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영국의 의료시장의 특징은 의료기기부터 의료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있으며, NHS(영국국가의료시스템)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관리형 시장인 것이 특징임.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기금을 들여 구조를 개혁하고 병원 및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에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통한 민간부분의 의료시스템도 발전하는 추세임.

2) 시장규모

전 세계 규모로 볼 때 의료기기 시장은 약\$174bn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제약 산업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로서 매년 7%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 시장의 약 절반 정도를 미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순서임. 영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5.5bn으로 전체의 3%에 해당됨.



자료원: Eurcomed Industry Profile 2003, Arther D Little

□ 시장 내부의 분류

- 의료기기시장을 세분화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진단장비: X-Ray, 이미지시스템, 방사선치료장비, CT, MRI 촬영기
 - 전자 감시장비
 - 의료실험실 장비
 - 재활장비: 정형 및 보철 장비, 의족 같은 인공대체물
 - 호흡보조기, 마취 및 심폐소생술 장비
 - 특수 병원장비: 수술실 집기류
 - 수술도구 및 장비들

□ 영국의 의료 및 보건 환경

전체 의료기기시장의 81%를 국가의료보험 시스템인 NHS가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NHS의 새로운 사업과 정책방향은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다음은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과 그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들임.

-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 PFI는 NHS 내부에 자본재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프로젝트로 1992년에 설립되었음.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영할 수 있는 병원을 짓게 한 후에 25~30년 간의 기간 후에 NHS에 재임대하는 방식인데, NHS의 관료주의와 느린 의사결정기간을 줄여 보려는 방편으로 고안되었음. 모두 6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시장임.
- NHS Information for Health
 - 1998년부터 영국 정부는 NHS의 정보기술의 하부구조를 현대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개시했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45bn를 투자하는 막대한 사업이기도 하며, 전반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기도 함. 2007/2008년까지의 5년간 투자비용을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앙집중형 구매방식

- 전체 의료기기시장의 80% 이상이 NHS 의 조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매는 NHS 내부의 NHS Purchasing and Supply Agency(PASA)가 담당하고 있음. 점차로 민간부분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NHS 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소지도 있음.

○ 건강보건 제품의 점증하는 유연성

-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장비의 소형화, 포터블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들이 장비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음. 따라서 병원이나 의사들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앰블런스나 자신의 집에서 구매하여 설치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임.

○ 건강보건제품 소비의 증가

- Wanless Report 에 따르면 지난 2002 년 £ 184bn 이었던 보건 관련 소비는 추후 20 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음. 2022 년까지 GDP 의 10.6%에서 12.5%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3) 향후 전망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인 영국은 많은 요소들, 예를 들어 소비자의 행동 패턴, 요구, 신기술, 인구증가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임의 방향이 바뀌어왔음. 그 중에서도 NHS 의 영향력은 그 구매력에 힘입어 무척 강력하므로,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그리고 집행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에서 의료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절감을 요구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차지하는 요소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각종 통계 자료

- 영국 통계청: www.statistics.gov.uk/statbase

나. 무역 정보

- HM Customs and Excise: <http://www.hmce.gov.uk/index.htm> : 관세율 확인
- UK Trade Info: www.uktradeinfo.com: UK 수입업자 리스트 등
- ICN online: <http://194.223.26.57/icn/main.cfm>; HS code 확인
 - Tel: 01702366077
- HM Revenue & Customs: <http://www.hmrc.gov.uk/> ; 각종 세제 및 관세율 서비스
 - Tel: 0845 010 9000
- Companies house: <http://ws4info.companieshouse.gov.uk/info>; 회사 Registration 여부 확인
 - Tel: 0845-010-9000
- World Trade Atlas: <http://www.gtis.com/wta.htm>: 수출입 통계

다. 시장 보고서

- Mintel Market Research: <http://reports.mintel.com/>
- Keynote: www.keynote.co.uk

라. 회사 재정/신용 조사

- First Report: www.firstreport.co.uk

마. 가격 비교 정보

- 켈쿠: <http://www.kelkoo.co.uk/>
- 프라이스 러너: <http://uk.pricerunner.com/>
- 베스트 컨수머 일렉트로닉스: <http://www.best-consumer-electronics.co.uk/>
- 프라이스 가이드 UK: <http://www.priceguideuk.com/index.asp>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 경제지표(指標)

- GDP: 2 조 1,131 억불(세계 5 위)
- 1 인당 GDP: 31,444 불(세계 15 위)
- 경제 성장률: 2.2%
- 실업률: 5.4%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2.4%
- 환율: 1£ = 1,825.8 원 (2006.8.30 일 기준)
- 교역규모(2005 년)
 - 총수출(2,140 억 파운드): 11.6% 증가
 - 총수입(2,728 억 달러): 5.89% 증가
- 대한 교역
 - 수출 24 위(16 억 8 천 9 백만 파운드): 0.73% 감소
 - 수입 20 위 (30 억 2 천 1 백만 파운드): 13% 증가
- 주요 교역품: 수출(기계류, 자동차), 수입(사무용기기, 전자, 전기기기)

자료원: 영국 통계청, WTA 자료

영국의 경제성장지표 및 향후 전망

(전기 대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전망)
GDP 성장률	1.8	2.2	3.5	1.8	2.2	2.4
소 비	3.3	2.3	3.1	1.6	1.8	1.9
투 자	2.6	2.2	6.0	4	3.5	3.5
수 출	0.1	0.9	2.2	4.9	4.6	5.3
수 입	4.1	1.8	4.3	4.8	3.9	3.6
물가(CPI)	1.3	1.4	1.6	1.9	2.2	1.9

자료원: 영국 통계청 및 재무부

12. 무역통계

영국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GBP)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총계	243359.2411	257613.3149	272796.3	100	5.89
1	독일	33076.2949	35385.46512	37037.96849	13.58	4.67
2	미국	24410.94459	23106.06345	22677.70218	8.31	-1.85
3	프랑스	20259.32063	20249.32759	20390.5574	7.48	0.7
4	네덜란드	15690.37422	18035.05394	18934.23088	6.94	4.99
5	중국	12345.55876	14389.40461	17306.64729	6.34	20.27
6	벨기에	12219.51895	12741.839	13165.5048	4.83	3.32
7	이태리	11839.64654	12232.50383	12024.40486	4.41	-1.7
8	노르웨이	6201.480912	8402.719228	11899.85572	4.36	41.62
9	아일랜드	10078.53583	10123.17258	9936.450783	3.64	-1.84
10	스페인	8472.935801	8823.882311	9489.743987	3.48	7.5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영국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GBP)

HS	품목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8703	자동차	18916.6401	19250.34792	19189.1	7.03	-0.32
2709	원유	5954.246946	8496.322446	11673.88	4.28	37.4
9999	재생용 폐품류	-10578.13596	-10199.38158	-10301.4	3.78	1
8471	자동화 전산기기	9317.157811	9785.691005	9381.783	3.44	-4.13
8708	자동차 부품	7023.795585	7179.600033	7182.93	2.63	0.05
2710	오일 (원유 제외)	3488.203221	4676.022154	7161.014	2.63	53.14
9908	잡류	7599.682399	6882.531206	6835.966	2.51	-0.68
3004	의약품	6702.481596	6898.604543	6660.269	2.44	-3.45
8525	통신기기	4383.964129	5378.138949	5931.991	2.18	10.3
7102	다이아몬드	4047.313966	4346.571629	4911.215	1.8	12.9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영국 국가별 수출 통계

(단위: 백만 GBP)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총계	188828.3976	191722.0029	213969.7468	100	11.6
1	미국	29098.5732	28509.08582	30856.27044	14.42	8.23
2	독일	20395.22353	21580.89389	22644.84361	10.58	4.93
3	프랑스	18565.94505	18525.70319	19553.86569	9.14	5.55
4	아일랜드	12788.86663	14051.19637	16085.38843	7.52	14.48
5	네덜란드	13282.49948	11960.61303	12423.89757	5.81	3.87
6	벨기에	10783.37068	10196.46024	11067.49668	5.17	8.54
7	스페인	8804.920873	9077.23648	10432.43668	4.88	14.93
8	이태리	8496.933844	8376.218787	8595.600849	4.02	2.62
9	스위스	2906.708741	3348.725016	8376.470413	3.92	150.14
10	U.A.E.	1441.474455	2145.228879	4984.05805	2.33	132.3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영국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백만 GBP)

HS	품목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총계	188828.3976	191722.0029	213969.7468	100	11.6
8703	자동차	11370.72474	12234.74615	13226.47079	6.18	8.11
9999	재생용 폐품류	-7716.651744	-8380.5442	-11429.07688	5.34	36.38
2709	원유	9254.831793	9373.193012	10776.88255	5.04	14.98
3004	의약품	10092.8185	10502.3954	10245.66522	4.79	-2.44
8525	통신기기	4978.952532	3145.771111	9926.475509	4.64	215.5
8411	엔진류	7474.762846	6747.091476	7334.102732	3.43	8.7
2710	오일(원유 제외)	4112.617687	5418.686172	7074.833046	3.31	30.56
9908	잡류	6677.235159	6855.43868	6519.130428	3.05	-4.91
8803	항공기, 선박기자재	5802.658289	5666.275258	5400.959971	2.52	-4.68
8471	자동화 전산기기	5841.121764	5175.889013	5130.521668	2.4	-0.8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대 한국 수입 통계

(단위: 백만 GBP)

HS	품목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총계	2576.027506	3043.476854	3021.118657	1.11	-0.73
85	전기기기류	957.988743	1411.484878	1434.127982	47.5	1.6
87	자동차	404.049538	595.633237	661.143356	21.9	11
84	기계류	636.8549	451.42277	353.113539	11.7	-21.78
40	고무	59.139626	73.452326	76.741227	2.54	4.48
39	플라스틱	57.821494	59.023213	60.23725	1.99	2.06
72	철강류	19.896002	30.456109	37.685761	1.25	23.74
61	니트 의류	57.498306	56.482323	34.914236	1.16	-38.19
99	잡류	29.564722	39.795771	34.249464	1.13	-13.94
90	광학, 의료기기	44.59593	44.923079	30.027503	0.99	-33.16
71	귀금속, 보석류	34.472958	25.568075	25.386097	0.84	-0.7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대 한국 수출 통계

(단위: 백만 GBP)

HS	품목	2003	2004	2005	% 점유율	% 변동률
					2005	05/04
	총계	1475.578178	1495.212564	1689.638639	0.79	13
84	기계류	252.4552	272.302957	323.048439	19.1	18.64
85	전기기기류	173.025435	199.119961	210.855983	12.5	5.89
22	음료류	182.818658	126.386997	156.790996	9.28	24.06
90	광학, 의료기기	123.915517	127.14733	143.986687	8.52	13.24
99	잡류	83.5086	110.738484	135.523232	8.02	22.38
30	약제품	72.668459	69.14859	85.01464	5.03	22.94
72	철강류	63.446321	54.058483	76.067862	4.5	40.71
87	자동차	61.172038	54.823608	62.748902	3.71	14.46
39	플라스틱	38.422099	40.510158	55.814088	3.3	37.78
29	유기 화합물질	34.988768	47.384866	55.410388	3.28	16.9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13. 투자통계

가. 영국의 대한투자 현황

62 년 이후 누계치(신고기준) 기준, 영국은 총 731 건 5,781 백만 불의 대한투자액을 기록, EU 국가 중 네덜란드(129 억불), 독일(67 억불) 다음으로 3 위 투자국 기록

연도별 대한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년 도	건수	금액(백만 불)
2000	46	84
2001	51	432
2002	36	115
2003	55	871
2004	62	642
2005	95	2,308

자료원: 산업자원부, KOTRA

2005 년도 SCB 의 제일은행 인수 등 대형투자로 인해 23 억 8 백만 불의 대한투자실적 기록.

나. 우리나라의 대영투자 현황

- 2005년 연간 한국은 영국에 총 20건, 약 48백만 불을 투자하여, 1962년 이후 총 투자 건수는 161건, 1,908백만 불 기록
- 2002년 연간 총 9건 투자 이후 2003년도 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4년도 이후 제조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건수는 회복세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 투자 기준

(단위: 건, US\$백만)

년 도	2002	2003	2004	2005	1968 ~ 2005
건 수	9	2	11	20	161
금 액	13	94	273	48	1,90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영국에는 2006년 6월 기준 활성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여 개사, 도·소매업 39개사, 서비스업 26개사, 기타 11개사 등 130여 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 전자 등 가전 3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 증권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 기업
-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부문(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영국의 기후는 연중 내내 큰 기온 변화 없이 온난하지만, 남서풍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중 기복이 큰 편이다.

기온은 대체적으로 최고 32도를 넘거나 최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으나, 남쪽과 서쪽이 북쪽이나 동쪽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간의 월평균 기온은 8 - 4.9도이며, 하절기인 6월, 7월, 8월 3개월간의 평균기온은 14.1 - 16.2도이다. 그러나 영국의 10월부터 4월까지의 가랑비가 계속 내리며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바 동기간 중 여행하는 경우 코트나 스웨터 등 겨울 옷이 필요 하다.

연중 강우량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북서 산악지방의 경우 1,600mm, 중부지방과 남. 동부 지방의 경우 800mm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연중 고른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3월-6월 중이 가장 건조하며, 9월부터 1월 중에는 강우량이 더 많은 편이다.

연중 일조시간은 지형에 따른 지방차가 있으나 5, 6, 7월 북부 스코틀랜드의 경우 5시간, 남부지방의 경우 8시간 정도이며,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11, 12, 1월 중에는 북부 스코틀랜드 1시간, 남부 해안지방 2시간으로 겨울의 영국은 상당히 습하고, 햇볕이 적다.

□ 출장 시 추천복장

계절에 따라 4-6월/7월초와 9-10월간에는 춘추복, 7-8월간에는 하복, 11-3월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봄, 가을, 겨울에는 일교차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적합한 방수용 코트나 점퍼, 스웨터 및 우산을 준비토록 한다.

여름에도 크게 기온이 올라가는 일이 드물어 여름 출장 시에도 가급적 긴 팔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열은 색상과 콤비정장은 많이 선호되지 않으므로 참고토록 한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9 시간이며, 일광시간절약기간(SUMMER TIME)에는 KST -8 시간이 다. 일광시간 절약 기간은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이다.

나. 근무시간

관공서 및 일반기업의 근무시간은 대개 09:00-17:00, 은행은 09:00-16:30 까지이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정위치에 따라 평일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업무를 보는 곳도 있다.

슈퍼마켓은 점포마다 차이가 있고 24 시간 영업점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대체로 평일은 08:00-20:00 까지, 토. 일요일은 10:00-16:00 시까지 영업을 한다. 의약품 및 위생용품점, 일반 상점들은 평일 09:00-17:00 까지, 토요일 10:00-16:00 까지 개점하며,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므로 비상 약 등은 출장 전 미리 준비토록 한다.

다. 회계연도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3. 도량형

- 공식적으로는 Metric System 이나 인치, 파운드 등을 사용하는 UK Imperial System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EU 통합에 따라 EU 의 미터법 통일 법규(European Union Legislation on Metrication)가 발효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파운드, 온스 등 UK Imperial System 이 점차 미터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 2000 년부터 모든 식품은 미터제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거리는 아직도 마일로 표시되며 몸무게는 파운드로 표시되는 등 미터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UK Imperial System 이 생활 속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출입국/비자

가. 출장가이드-출입국 절차

공항 도착 후 입국 인터뷰를 위한 입국 심사대는 여행자의 국적에 따라 EU, Others 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Others 쪽 심사대를 이용토록 되어 있다. (영국 외 다른 EU 국 방문 후 영국에 오는 경우에도 EU 가 아닌 Others 심사대를 이용함.)

입국심사는 입국심사원에게 여권과 Landing Card, Visa(단기체류 시 생략)를 제시고 심사원의 질문에 따라 영국 방문 사유와 체재기간을 설명하여 입국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입국심사를 마치면 세관 신고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통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주류, 향수, 선물용품, 스포츠용품 등 개인 휴대품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며, EC 역내 구입 품은 역외 구입 품에 비해 무관세 허용한도가 크다.

1) 출입국 유의사항

영국의 출입국관리 시스템은 여행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잘 정비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실업 유발과 범죄 증가 등을 방지키 위해 비자발급 및 입국허가 등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공항 Immigration Office 는 인터뷰 시 현지 체재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재 허가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위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 개월까지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국 인터뷰 시 불필요한 설명과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없는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특별한 영업소득을 발생치 않는 단순한 시장조사 또는 업무처리를 위해 6 개월 정도 체재할 계획이라면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방역관계

식물 및 동물을 영국에 반입시는 농수산 식품부 (MAFF)의 검역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역절차는 품종에 따라서 상이한 바 하기 기관을 접촉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 담당기관: HM Customs & Excise
- 해당부서: Inner London Excise Advice Centre
- 주 소: Thomas Paine House, 2 Angel Square, Torrens Street, London, SS99 1BD
- Tel : 0845-010-9000
- Email : enquiries.lon@hmce.gsi.gov.uk

3) 식품 류 반입

한국으로부터의 육류, 가공 및 동 부산물 수입은 식품위생검사를 필 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삼 등 비 가공상태의 기타 식품 류의 경우도 반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나. 비자

1) 일반사항

한영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여행 또는 방문을 목적으로 영국에 6 개월 미만 체재하려는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하지만, 영국 입국 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 지(숙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지사, 현지법인 파견근무 또는 현지사업을 목적으로 6 개월 이상 장기체재를 원할 경우,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장기체재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 법령 개정으로 주한 영국대사관이 직접 장기체재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 제도는 한국은 1998 년 이후 면제되었으므로 따로 지방 경찰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체류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체류기한 만료 전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등기배달로 Home Office (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요청을 해야 한다.

2) 입국 목적 별 허가요건

□ 일반 여행객

6 개월 무비자

□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체결, 사실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과 같이 6 개월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다.

□ 학생

적정 수업기관(appropriate course of study)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입국이 허가된다. 적정 수업기관이란 정규과정(full time degree course) 또는 주중에 15 시간 이상 수업하는 주간과정(weekly course)를 말하며, 취업이나 공공기관의 도움 없이 학비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종료 후 영국을 떠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기 연수목적(short term students)의 경우 영국 내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정규과정의 장기유학생(long term students)은 대학이나 지역 직업 안정소(job centre)의 허가를 받아 방학과 여가시간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취업이 학업에 방해되지 않으며, 영국 현지인들이 그러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학업 종료 후에는 work permit 이 없는 한 full time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일인사무소(sole representatives) 운영

영국 내 자사 지점 등 다른 사무소가 없는 해외업체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 년 내에 등록된 지점 (registered branch)이나 자회사 (wholly-owned subsidiary)를 설치하여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직원(senior employee) 자격으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국허가는 다른 경우와 같이 해외 영국영사관이나 고등 병무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투자자(investors)

투자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기 통제하에 영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00 파운드 이상이 되고, 이중 최소 750,000 파운드 이상을 영국에 투자할 것이며, 주요 주거지를 영국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입국허가가 필요하며, 신청절차는 같다.

3) 취업과 노동허가증(work permit)

EU 회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영국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증은 지정된 직업 및 기간을 표시하여 영국에서 고용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동 허가증은 처음 발급 당시의 직업보유기간과 조건에 한하여 유효한 것일 뿐 영국에서 타 일반직 취업 전체를 허가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책 변동 또는 이직의 경우 노동허가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일 취업(full time) 허가신청의 경우 노동허가증 신청기간 중에는 영국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노동허가증 신청 후 영국 여행 중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영국을 떠날 때까지 신청서의 처리가 보류된다는 점이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더 까다로운 심사와 처리기간 지연 및 허가 불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18 세 이하의 자녀는 동반 입국하여 동일기간 동안 영국 내 체류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한국에서 영국영사관이나 고등 병무 관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노동허가증 발급가능 직업

○ 일반직업(Normal Employment)

- 대상자
 - 학문적,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
 -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
 - 특정분야의 전문 기술자
 - 전문자격은 없으나, 기업의 일상업무에 없어서는 안될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요 근로자(영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나 문화적 지식을 가진 자, 근무 시간 중 최소 60% 이상을 해당 외국어-한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이에 해당.)
 - 호텔이나 음식 업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특정 숙련노동자
 - 적정 수준에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 일반직업의 노동허가증 발급
- 신청절차: 영국에서의 고용주가 work permit 신청양식인 WP1 을 노동부의 교육, 고용국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 제출
- 노동부의 주요 검토사항
 - 고용주(신청회사)의 회사설립 관련 서류
 - 필요한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세한 직무기술서
 - 신청대상자(노동예정자)의 자격 및 경험 증명 서류
 -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
 - 노동허가증이 필요한 기간
- 취업허가기간: 3 년 (4 년을 초과시 납득할만한 이유 필요)
- 많은 경우에 고용자가 해당 직무에 영국 또는 EU 시민 고용을 위해 취한 노력과 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회사간 이동으로

상위직급, 경력개발 직급의 필요성, 2) 상위 이사직 또는 이와 상응하는 직위, 3) 영국 거주자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국 내 투자계획에 꼭 필요한 보직, 4)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의 보조정보 제출이 완화될 수 있다.

○ 교육 및 연수제도(The training and work experience scheme)

- 일정 계약조건하에서 전문적인 기술습득 또는 자격획득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 한국 회사측이든 영국 회사측이든 교육연수생에게 완전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동의된 교육연수 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 출국이 기본 조건임
- 대상: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18~54 세 이하 외국인
- 신청절차: WP2 라는 소정양식에 의거, 고용주가 신청
- 취업허가기간: 1년~2년

4) 비자발급 처: 주한 영국대사관

-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4
- 전화: (대사관) 02-3210-5500 / (비자과) 02-3210-5653
- 직접 접수 가능시간: 10:00-12:00 (월-금)
- 영국 비자담당기관: HOME OFFICE
 - 담당부서: Immigration Department
 - 주 소: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Surrey CR9 2BY, UK
 - 전 화: 087-0606-7766
 - 업무시간: 09:00-16:00 (Bank Holiday 제외)
 - 처리기간: 약 8 주, 직접 방문 시 당일처리
 - 구비서류: 여권, 재정증빙서류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파운드(Pound Sterling)로 '£'로 표시한다. 1 파운드는 100 Pence 이며 pence 는 소문자 'p'로 표시한다. 지폐에는 5, 10, 20, 50 파운드가 있으며, 주화에는 펜스단위로 는 1, 2, 5, 10, 20, 50p 짜리가, 파운드 단위로는 1, 2 짜리가 있다.

가계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50 파운드짜리 고액권은 일반적으로 많이 소지하지 않는 편이다.

나. 환율

파운드화의 현재 환율은 2006 년 8 월 30 일 기준 £1=1825.8 원이며, 대 달러 환율은 £1=US\$1.9036, 대 유로화 환율은 £1=1.4844 EURO 이다.

다. 환전

달러화 또는 EU 국 화폐의 경우 공항, 은행, 국제수준 호텔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도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환전환율은 은행간에는 비슷하며, 시내 환전소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수수료를 감안하면 역시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호텔은 은행, 환전소보다 약간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원화 환전은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환전해가거나,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를 발급 받아 오도록 한다. 영국 전역에서 대부분 신용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환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당한 금액만큼만 환전해 오는 것이 좋다.

6. 물가정보

□ 도시 : 런던(영국)			- 환율 : US\$1 = £0.524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83.36	7.1	구두(1켤레, 소가죽)	504.83
1.2	넥타이(1개, 실크100%)	87.04	7.2	치약(150g, 1개)	3.12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21.86	7.3	칫솔(1개)	3.46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7.41	7.4	면도기(1세트)	7.8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636.35	7.5	건전지(1세트, 1.5V AA)	8.69
1.6	스타킹 (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2.2	7.6	화장지(1통, 300매)	5.22
1.7	청바지(Levi's)	69.63	7.7	비누(1개)	0.7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8.19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8.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4.68	8.2	볼펜(12개)	4
2.3	닭고기(1KG, 생닭)	5.5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0.42
2.4	쌀(1KG, Short Grain)	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7.83
2.5	밀가루(1KG)	0.87	8.5	휴대폰(범용형)	174.08
2.6	설탕(1KG, 백설탕)	1.39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7.85
2.7	계란(10개)	3.1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
2.8	감자(1KG, 현지산)	1.5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34.8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04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0,889.6
3.1	고추장(1Kg)	6.09	9.2	엔진오일(1L)	6.86
3.2	된장(1Kg)	5.05	9.3	휘발유(1L)	1.6
3.3	라면(1개)	0.6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287.23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12.19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218.56
3.5	불고기(1인분, 200g)	17.41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3.93	10.1	지하철(1구간)	3.66
3.7	김치찌개(1인분)	12.93	10.2	시내버스(1구간)	2.0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3.83
4.1	햄버거(1개)	6.42	10.4	택시(추가요금/Km)	2.07
4.2	피자(1판)	20.87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330ml)	0.8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포함)	130.54
4.4	맥주(수입산, 1캔, 330ml)	1.3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8.28
4.5	담배(수입산, 1갑)	9.0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16
4.6	위스키(1병, 750ml)	30.39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1.04
4.7	커피(1병, 175g)	6.08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1.74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7
5.1	[임차]중급아파트(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959.36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82
5.2	[임차]중급단독주택(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655.68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43.5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5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98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3
6.1	TV(29인치, 칼라, 범용)	783.36			
6.2	VTR(6헤드, 범용)	104.45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313.34			
6.4	전자레인지	139.26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044.48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566.82			

□ 도시 : 런던(영국)			- 환율 : US\$1 = £0.524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1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시간당)	10.2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130.56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2,185.6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4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7,408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26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0,889.6	18.6	연간국경일	8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87.04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

	(비회원, 18홀, 1라운드)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5,222.4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 시간
13.3	골프공(1타)	50.4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94.58	19.1	법정최저자금	-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6.11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2.19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법인세)	30%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10~4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3~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무료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69.63		※ 18.1 시간당 8.79불	
14.4	치과(스켈링, 1회)	87.04		※ 18.2, 3, 8 노사계약에 따라 다름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04		※ 19.4 내·외국업체 동일 적용	
	15. 신문·방송·잡지			※ 19.5 소득에 따른 누진세 적용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66.15			
15.2	한국신문(1개월)	104.45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52.22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4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783.36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13.34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48.16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08.9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43.52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6.11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4,352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962.36			

7. 교통/통신

가. 교통

1) 우리나라와의 교통

대한항공이 매일 직항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도 일주일에 4 회(화, 목, 토, 일) 런던직항을 운행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11 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외 네덜란드항공(KLM)과 에어프랑스가 암스테르담과 파리를 각각 경유하는 런던-서울 왕복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경유노선이어서 요금은 직항노선에 비해 다소 저렴하나 두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2) 국내교통

오랜 대중교통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런던 전역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시 외곽에는 지역 버스와 기차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시설 노후로 최근 잦은 운행지연 및 결행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도심 주차 난으로 대중교통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런던지역의 대중교통 정보는 Transport for London 웹사이트(www.tfl.gov.uk) 검색 또는 런던전화 0207-222-1234 로 문의하면 요금과 운행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월 정기권 및 연 정기권은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하철

- 'Underground' (속칭 Tube) 라고 불리며 9 개의 노선으로 런던 시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요금은 런던을 1~6 구역(zone)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다르다. 최근 오이스터(Oyster)카드라는 전자 교통카드 사용의 장려로 점차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드 이용 시 편도 성인요금 구매 기준으로 1 Zone - 1.50 파운드, 1-2 Zone - 2.00 파운드, 1-3 Zone - 2.50 파운드, 1-4 Zone - 2.50 파운드, 1-5 Zone - 3.50 파운드, 1-6 Zone - 3.50 파운드이며 Zone 1 을 벗어난 구역에서 다른 구간으로 갈 때의 요금은 별도 적용된다. 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 티켓 구매 시에는 1-4 Zone 기준 기본 3.00 파운드가 적용되며 그 외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용도에 따라 하루 종일 전철과 버스를 회수 제한 없이 탈수 있는 one day travel card(구역과 시간에 따라 4.40 ~ 5.80 파운드 정도), 또는 주말이용권 등을 구입하는 것도 경제적 이다.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 버스

- 런던 시내의 버스는 더블데크(Double Deck)라고 불리는 2 층 버스가 주류로 역시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2 층 버스의 맨 앞 좌석은 처음 런던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또 다른 관광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형 더블데크들은 관광용을 제외한 몇 대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차량 2 개를 연결한 굴절버스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금은 성인의 경우 오이스터 카드 사용 시 1.00 파운드, 주말 등 할인 시간대에는 80 펜스이며, 현금 티켓 구매 시는 1.50 파운드이다. 버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Bus Pass'는 일일권이 1-4 구간은 2.50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다.

○ 택시

- 옛날 마차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디자인으로 런던의 명물이다. 최근에는 노란색, 은색 등 색상이 다양해졌지만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명 'BLACK CAB'으로 불린다. 시간거리 병산 제로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합승제도가 없고 런던택시 운전사들은 엄격한 런던지리 및 교통법규 시험을 통과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운전수들이어서 최단 시간에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운전사 옆자리는 짐을 싣는 곳이며 뒷좌석에 5 명까지 승차가 가능하다. 빈 택시는 'TAXI'라고 쓴 부착물에 노란 불을 밝히고 다니므로 쉽게 식별가능하며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세울 수 있다. 택시를 잡은 후 먼저 목적지를 말하고 운전사의 행선지 확인을 받은 후 승차한다. 택시요금은 기본이 2.00 파운드이며, 1 마일당 20p 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예전에는 탑승자수나 짐 추가에 따른 할증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실시 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Off-Peak Time, Peak Time, 심야로 구분되는 시간 할증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할증료가 부과된다.

○ MINI CAB

- 일종의 자가용 CALL TAXI 형태로 당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과 초심 여행자들에게는 안전치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에는 이용치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승차 전 요금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하기 전 미리 미니 캡 회사에 전화하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일반택시보다는 저렴하므로 런던 시내-공항, 런던-외곽 등 장거리 이용 시 유용하다. 미니 캡 회사는 각 지역의 전화번호부(yellow page)에서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postal code)를 보고 인근 회사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 기차

- 런던 시내에 Waterloo, Victoria, Paddington, Kings Cross, Euston 등의 주요 역에서 영국 전역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으며, 기차시간 및 요금은 철도관리회사인 RAIL TRACK PLC. 에 유선(TEL: 0345-48-4950) 또는 인터넷 www.railtrack.co.uk 로 검색 가능하다.

○ EuroStar

- 워털루(Waterloo)역에서 운행되는 런던-유럽 본토(파리, 브뤼셀)간 고속철도. 런던-파리간 소요시간은 3 시간 30 분임

○ 대륙횡단 버스

- 런던 시내의 Victoria Coach Station 에서 버스를 이용, 유럽의 각 도시를 여행할 수 있으며 파리까지 12 시간 소요된다(브뤼셀까지 8 시간). 학생 등 시간여유가 있으면 운전사가 들려주는 관광안내와 각국의 시골구경을 할 수 있는 권할만한 방법이다.

나. 통신

1) 국제통신

호텔에서의 국제통화료는 상당히 비싸며 야간, 공휴일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International'이라 표시되어 있는)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국으로의 다이얼링 방법은 00-82-지역번호-개인번호 순으로 한다.

장기체류일 경우 international phone card 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5, 10, 20 파운드짜리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의 신문 파는 곳(news agency), 전화카드 전문 판매코너, 동네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나 보통 한국 통화의 경우 5p/분 정도로 시내통화로 수준으로 국제통화가 가능하며 20 파운드 카드 구입 시 25 파운드 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국내통신

시내 공중전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전을 투입구에 걸어놓고 상대방이 연결되면 동전을 넣어서 통화가 시작되며 통화 도중 뚜-뚜- 하는 신호가 나면 계속 동전을 넣고서 통화를 계속할 수가 있다. 20 펜스짜리 동전부터만 가능하다. 또 한가지는 먼저 동전을 집어넣고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오른쪽 게시판에 액수가 기록되며 모든 동전을 쓸 수 있다.

장기체류일 경우는 동전이 필요 없는 전화카드(BT Phone Card)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체국과 news agency 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 £4, £10 짜리가 있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국을 여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숙박형태로는 일반적인 호텔과 B&B 를 들 수 있다. B&B 는 BED & BREAKFAST 의 약자로 숙박과 다음날 아침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간이 호텔 또는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시설은 다소 불편해도 가격이 호텔에 비해 저렴하다.

런던을 비롯, 전국 전역에 각 등급의 다양한 호텔이 있는데, 방문 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검색하거나 (영국 관광 진흥청 웹사이트: www.visitbritain.com) 서울의 영국 관광청을 통해 예약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런던시내에서 고급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호텔들은 Piccadilly Circus ~ Green Park, Hyde park 부근에, 중급 호텔은 Hammersmith, Notting hill Gate 부근에, 그리고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호텔은 Hyde Park, Bayswater, Paddington 부근에 많이 있다. 그리고 출장기간이 임박하여 예약할 경우 www.lastminute.com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 식당

다양한 종류의 각종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중국식당의 경우 런던시내 SOHO 지역부근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식당도 Piccadilly Circus, Oxford Street 등 시내에 여러 개가 있다.

한국식당은 런던시내에 20 여 개, 교민 밀집주거지역인 런던교외의 NEW MALDEN, KINGSTON 지역에 20 여 개가 성업 중이다.

한국식당

No	식당명	전화	주소
런던			
1	가야	02074990633	42 Albemarle Street, London W1S 4JH
2	란	02074341650	58 Great Marlborough St. London, W1F 7JF
3	한강식당	02076371985	16 Hanway St, London, W1T 1UF
4	한강포차	02076371410	16 Hanway St, London, W1T 1UF
5	우정식당	02078363103	59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6	아랑	02074342073	9 Golden Square, London, W1F 9HZ
7	KOBA	02075808825	11 Rathbone St. London W1T 1NA
8	킨타로 스시	02074374549	26-27 Lisle Street, London WC2H 7BA
9	포장마차	02073797381	56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10	뉴서울	02072788674	164 Clerkenwell Road, London EC1R 5DU
11	아리랑	02074376633	31-32 Poland Street, London W1 3DB
12	나라	02072871110	9 D'arblay Street, London W1F 8DR
13	비원	02075802660	24 Coptic Street, London WC1A 1NT
14	명가	02077348220	1 Kingly Street, London W1
15	진	02077340908	16 Bateman Street, London W1D 3AH
16	앗싸	02072408256	53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17	가마	02074309006	135 Wardour St, London
18	아사달	02074309006	227 High Holborn, London WC1V 7DA
뉴몰든			
19	유미회관	02087151079	96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NT
20	KJ Restaurant	02089423602	65 high St., New Malden, Surrey KT3 4BT
21	장원	02089492506	272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NL
22	연지식당	02089427184	106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NS
23	징기스칸	02089497977	85-87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24	한국관	02089421188	257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25	요시스시	02089420219	41 high St., New Malden, Surrey KT3
26	함지박	02089429588	169 high St., New Malden, Surrey KT3
27	국일관	02089492710	15 Coombe Road, New Malden, Surrey KT3 4PX
28	피닉스	02089472219	80 Coombe Lane, Raynes Park, London SW20
29	까치네	02089471081	34 Durham Road, Raynes Park, London SW20

9. 관공서 관행

일반인에게도 친절하며 뇌물수수 관행 없이 원리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 반면 간단한 사안이라도 모든 의뢰는 서류로 작성, 편지를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고, 문서업무처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관공서 업무는 반드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면담 필요 시에는 예약 후 방문토록 한다. 또한 서류(서한) 발송 시 수신인을 미리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10. 공휴일

가. 휴일지정방식

새해 및 부활절, 성탄절, 노동절(May Day), 그리고 5 월, 8 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Bank Holiday 라는 이름의 공휴일이 있다. Bank Holiday 의 유래는 영국 역사상 휴일이 가장 적었던 빅토리아 시대에 중앙은행이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설정했던 휴일로 중앙은행의 휴무로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의 은행들, 그리고 기업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휴무함에 따라 굳혀진 휴일로서 월요일로 정하여 주말과 연계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내에서도 친구교의 전통이 함께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본토와 다른 특별한 종교적 휴일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강한 웨일즈지방도 전국 휴일과 차이가 있다.

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어 시행되며, 2006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England and Wales				
New Year's Day	3 Jan ■	2 Jan ■	1 Jan	1 Jan
Good Friday	25 Mar	14 Apr	6 Apr	21 Mar
Easter Monday	28 Mar	17 Apr	9 Apr	24 Mar
Early May Bank Holiday	2 May	1 May	7 May	5 May
Spring Bank Holiday	30 May	29 May	28 May	26 May
Summer Bank Holiday	29 Aug	28 Aug	27 Aug	25 Aug
Christmas Day	27 Dec▲	25 Dec	25 Dec	25 Dec
Boxing Day	26 Dec	26 Dec	26 Dec	26 Dec
■ Substitute Bank Holiday in lieu of 1st Jan				
▲ Substitute Bank Holiday in lieu of 25th Dec				
Northern Ireland				
New Year's Day	3 Jan ■	2 Jan ■	1 Jan	1 Jan
St Patrick's Day	17 Mar	17 Mar	19 Mar	17 Mar
Good Friday	25 Mar	14 Apr	6 Apr	21 Mar
Easter Monday	28 Mar	17 Apr	9 Apr	24 Mar
Early May Bank Holiday	2 May	1 May	7 May	5 May
Spring Bank Holiday	30 May	29 May	28 May	26 May
Battle of the Boyne (Orangemen's Day)	12 July	12 July	12 July	14 July
Summer Bank Holiday	29 Aug	28 Aug	27 Aug	25 Aug
Christmas Day	27 Dec▲	25 Dec	25 Dec	25 Dec
Boxing Day	26 Dec	26 Dec	26 Dec	26 Dec
■ Substitute Bank Holiday in lieu of 1st Jan				
▲ Substitute Bank Holiday in lieu of 25th Dec				

나. 출장지양기간

부활절 기간과 Bank Holiday 가 있는 주에는 대개 연가(annual leave)를 얻어 더 긴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7 월 중순부터 9 월말까지는 여름휴가철로서 최소 2 주간의 휴가를 갖게 되어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접촉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사전에 휴무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또한 평소 금요일에도 오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약속 및 접촉 시 참고토록 한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여행시기에 따라 의복은 알맞게 준비하되, 일기 변화가 심하므로 춘·추·하절기 여행시에도 간편한 우산과 얇은 가디건, 점퍼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전기규격은 220/240 볼트, 50 헤르츠로 한국과 달라 모터 장착 가전제품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전기플러그도 earth 선이 하나 더 있어 3 개 핀으로 되어 있는데 아답터는 공항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여행여건

1) 치안

상당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런던 시내 SOHO 유흥가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폭력시비에 말릴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관광객으로 붐비는 런던 시내 중심가와 전철 등에서는 간혹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고액권 지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2) 응급의료

앰블런스를 불러야 할 정도의 위급상황인 경우 전화번호 999 를 돌려 서비스를 요청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곧바로 찾아가면 된다. 약품 구입은 동네마다 있는 chemist, pharmacy 라고 불리는 약국을 찾는데, 대개 일요일에는 폐점하므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미리 약품을 준비토록 한다.

3) 팁 관행

팁 관행이 엄격하지는 않으며, 일류 레스토랑과 택시는 요금에 팁이 미리 포함되어 요금이 청구되므로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주면 무난하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4) 식수

영국인들은 수도물을 식수로 그냥 이용하기도 하나, 물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품 처리 냄새로 다소 마시기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네랄 워터를 구입, 음료로 사용하면 되는데, 현지식당에서도 물은 무료 제공이 아니므로 별도 주문해야 한다.

5) 쇼핑

영국의 물가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상품구색은 다양하나, 가격은 서울의 거의 2 - 2.5 배에 달한다.

런던 시내 중심가인 Oxford Street, Regent Street 가 대표적인 쇼핑중심지로 대형 백화점과 의류매장이 들어서 있다. 이 일대의 유명 백화점으로는 Selfridges, Debenhams, Liberty, John Lewis 등이 있으며, 켄싱턴공원 인근 Knightsbridge 에는 영국 최고급 백화점인 Harrods, 고급 의류전문 Harvey Nichols 등이 있다.

영국 특산품인 본차이나 전문매장은 Regent Street 와 Piccadilly Circus 부근에, 모직제품 매장은 Regent Street 와 Knightsbridge 부근에 많이 있다.

그밖에 골동품 전문상가로 Notting hill Gate 의 Portobello Market 과 켄싱턴 마켓, Chelsea Market 이 유명하나 고가이다.

12. 유용한 연락처

주요 관공서

기관명	위치	전화	팩스
통산부(DTI)	런던	020-7215-5000	020-7215-0105
관세청(HM Customs & Excise)	런던	020-7620-1313	020-7895-5005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런던	020-7238-3000	020-7238-6591
기업등록소 (Companies House)	카디프	0870-3333-636	02920-380-517
공업표준관리청(BSI)	런던	020-8996-9000	020-8996-7400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런던	020-7533-6363	01633-812-863

한국기관

기관명	위치	전화
한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020-7227-5500
한국무역관	1 st Fl,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020-7520-5309
재영한인회	1 st Fl, Thames House, 63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BP	020-8605-0050
관광공사	3 rd Fl.,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A 4QT	020-7321-2535
대한항공	66-68 Piccadilly, London W1V 0HJ	020-7495-2299

13. 관광명소

가. 시내관광명소

런던 시내관광은 최소 2 박 3 일, 교외관광 2 박 3 일 등 평균 1 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조정, 취사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1 일 시내 관광은 1 인당 £15-20 선인 순환관광버스(Hop-on, Hop-off)를 이용하는 것도 좋는데 시내주요 명소별로 순환하며, 원하는 곳에서 내려서 관광한 후 다음 번 버스를 타고 계속 구경할 수가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빅버스(Big Bus), 오리지널 버스(Original bus)가 대표적이다.

시간이 아주 없을 경우에는 한국인 여행사를 이용하여 개인관광을 하거나 오전엔 웨스트엔드(West End) 오후엔 시티(City) 런던 일일 관광으로 구분되는 시내 관광회사 버스를 타면 된다.

영국현지 관광회사로는 프레임스(Frames), 에반 에반스(Evan Evans) 두 회사가 유명하며, 요금은 보통 반나절에 £15, 하루 종일은 £30 이고, 예약은 대부분의 호텔에서 할 수 있고 출발지점은 여러 곳이므로 호텔과 가장 가까운 곳을 골라 탈 수 있다.

한국인 관광 가이드 서비스 이용 시 승용차 1 대당 런던시내 £120, 시외 £150 이며 공항 마중은 £40 정도이다. 옥스포드 대학, 처칠 생가, 윈저성 등 런던교외 관광 시 런던에서 기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당일 여행도 가능하며 관광버스의 경우 약 £30 이다.

4 월부터 10 월까지의 템즈 강변의 유람선 관광선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므로 웨스트민스터 다리 옆의 Westminster Pier 에서 타면된다.

영국 및 런던에 관한 관광 안내지도 책자는 영국의 관광공사 (British Tourist Authority: 64, St. James's Street, SW1, 전화 629-9691)에서 무료, 유료로 구할 수 있으며 "Time Out", "What's on" 등의 주간지도 유용하다.

나. 주요 관광 명소

1)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1753 년 한스 슬로안 경이 평생 수집한 골동품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설립되었으며, 1847 년 개축되었다.

박물관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면서도 입장료가 없음.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스톤 (Rosetta Stone), 헨델의 메시아 원본, 이집트의 미이라 및 라머니즈 2 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고려 청자, 청화 백자, 칠보 자개함 등 국보급 자료와 조선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등이 있다.

2) 버킹검 궁 (Buckingham Palace)

버킹검 궁은 1837 년 빅토리아 여왕이후 영국 왕 및 여왕의 런던관저임. 원래는 1703 년에 건조된 버킹검 공작(Duke of Buckingham)의 사저였으며, 조지 3 세가 1762 년 왕비 샤르롯을 위하여 버킹검하우스(Buckingham House)를 매입, 관저가 아닌 사저로 이용하였다. 현대의 왕궁 건축은 조지 4 세가 채용한 존 나쉬(John Nash)의 설계에 따라 1825 년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골격은 House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버킹검 궁 앞 정면 도로 중앙의 금빛 동상은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비로 빅토리아 왕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버킹검 궁 앞 오른쪽의 공원은 460 년 전에 조성된 왕실 공원으로 장미꽃이 특히 잘 가꾸어 졌으며 성 제임스 공원(St. James Park)으로 불린다.

3) 수상 관저 (No.10 Downing Street)

다우닝 가를 건설한 17 세기 크롬웰 시대의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던 조지 다우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조지 2 세가 당시 수상 월폴(Sir Robert Walpole)에게 관저로 기증, 1735 년 월폴 수상이 입주한 이래 많은 수상이 이곳을 관저로 사용 (웰링턴, 디즈레일리, 레드스텐등) 1902 년 발포어 수상 이래는 모든 수상이 정식 수상 관저로 사용했다.

4) 국회의사당 (House of Parliament)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 영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원래 약 1,000 년 전 참회왕 에드워드를 위하여 궁전을 지은 것이 시초. 그 후 1,500 년대 초반 헨리 8 세 때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834 년 화재로 전소된 뒤 찰스 배리 경 (Sir Charles Barry)의 설계로 1840 년에 착공하여 요크셔 산 석회석을 재료로 1888 년 완공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쪽에 빅벤(Big Ben)으로 불리는 큰 시계탑이 15 분마다 타종을 하며, 국회가 개원중일 경우 낮에는 빅벤 반대편의 빅토리아 타워에 영국기가 게양되고 밤에는 빅벤에 전등불이 켜진다.

5)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Westminster Abbey)

1065 년 참회왕 에드워드가 교황의 후원으로 왕위에 오른 다음 그 답례로 성지순례를 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립.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1066 년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 이래 역대 영국 국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다.

중세에는 베네딕트 승려들의 수도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매일 미사가 거행된다.

역대 국왕 및 그 가족 32 명과 영국이 배출한 위인들의 무덤 또는 기념 판(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제프리 초서 등의 무덤과 윈스터 처칠, 셰익스피어등의 기념 판)이 있다.

6) 성 바울 성당 (St. Paul's Cathedral)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원래는 이 자리에 목조교회가 있었으나 1666 년 대화재 때 다 타 버리고 그 자리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경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1675 년 착공, 35 년 간에 걸쳐서 1710 년에 완성한 17 세기 건축의 걸작이다.

로마의 산 피에트로 사원, 피렌체의 두오모 사원과 함께 세계 3 대 사원으로 불리며 특징적인 거대한 돔의 높이가 120m, 직경 34m 에 달한다.

이 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웰링턴, 벨슨 제독 등 영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빛낸 위인들이 지하실 납골당에 잠들어 있다.

1987.3.11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주관으로 이 성당에서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제막식 행사가 엘리자베스 여왕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바 있다. (이 추모비 석재는 우리나라 정부가 기증함)

7) 타워 브리지 (Tower Bridge)

런던타워 앞쪽에 있는 빅토리아 식의 우아함이 뛰어난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브리지는 1894 년에 완성되었으며, 250m 길이에 올려지는 다리 하나가 1,000 톤의 무게로서 완전히 올려지는데 90 초가 소요된다.

100 여 년 전에 이런 다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템즈 강이 조수간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수심 차이가 최고 6m(다리와 강 수면과의 차이는 1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리를 들어올리게 된 것이며 현재는 일주일에 1~2 회 정도만 다리를 올리고 있다.

8) 런던타워 (Tower of London)

총면적 22,000 여 평에 지어진 런던타워는 1078 년 정복 왕 윌리엄이 노르망디로부터 건너와 왕위를 차지한 다음 런던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티 지역에 세운 성으로서 260 여년간 증·개축되어 에드워드 1 세 때 현재의 외벽이 완공되었다.

런던탑 또는 런던타워라고 불리나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탑이 많이 있어서 런던 탑으로 불리고 있다. 런던 타워는 모두 20 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왕궁, 동물원, 화폐 주조 창, 문서보관 창고, 감옥 등 그 용도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9)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

이탈리아 르네상스식의 건물로 1866 년에 지어졌으며 런던에서 미술품 박물관으로서 유명하다.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인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 · 알버트 박물관으로 명칭하였다.

박물관은 크게 2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Primary Galleries' 는 여러 가지 다른 작품을 시대 · 스타일 별로 전시한 이른바 일반 취향의 컬렉션이며, 'Study Galleries' 는 특히 흥미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컬렉션으로 되어 있다.

10) 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1823 년 조지 뷰몬트경은 영국정부가 'National Gallery'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소장품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1824 년 오지리가 예기치 않게 전시 부채를 상환하자 영국 정부가 그 돈으로 존 줄리어스 앵거스틴이 소유하고 있던 유명작품 38 점을 매입한 것이 National Gallery 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는 2,000 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장소에 비해 작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시에 전시하지 못하고 타 미술관에 대여를 해주기도 하며,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순환전시 하고 있으며,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17 세기 스페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1) 교외 관광

원저성 (Windsor Castle): 1090 년대 초에 윌리엄 1 세가 런던 외곽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었으며, 처음에는 목조로 건축되었으나 헨리 2 세 때 석조로 개축 되었고 19 세기 초 조지 4 세 때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현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은 주로 주말 휴식처로서 원저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저성은 외국 국가원수를 맞이하는 영빈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성 중앙의 라운드타워에 여왕의 집무실이 있으며, 그 곳에 왕실깃발이 게양되어 있으면 여왕이 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시이다.

이튼 칼리지 (Eton College): 원저성에서 템즈강을 건너 약 10 분 거리에 있다. 1440 년 헨리 6 세에 의해 주변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70 명의 장학생들이 4 개의 기숙사에서 공부한 것이 이튼 칼리지의 시초이다. 그 후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립 중 · 고등학교로 변모하였고 영국의 귀족과 상류 계층의 자제들이 모여 공부 1,200 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으나 70 명의 왕실 장학생은 유지되고 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나비넥타이에 연미복을 입고 까만 구두를 신은 예비신사로 변모한다. (찰스 왕세자 아들인 윌리엄 왕자도 이 학교를 졸업함) 웰링턴 장군도 이튼 출신으로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전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의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Oxford & Cambridge): 유서 깊은 대학도시로 유명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전형적인 대학가로서 런던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부 · 동북에 각각 위치. 옥스퍼드는 도시 전체에 42 개 칼리지(College)가 흩어져 있으며 옥스퍼드의 11 만 5 천명의 인구 중 만 3 천명이 학생이고 2 천명이 이 학교의 직원이다. 스퍼드에는 보델리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이, 캠브리지에는 고색창연한 각 대학건물뿐 아니라 캐임(CAM) 강의 펀트(PUNT) 뱃놀이가 유명하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국제입찰제도 개요

영국은 GATT/WTO 정부구매협정 가입국으로서 동 협정 상에 양허기관 및 품목에 대해 국제입찰을 통한 구매를 시행하고 있음. 민간기업에서도 석유시추선 발주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 국제입찰을 통한 구매를 시행하고 있다.

나. 정부구매 국제입찰제도의 주요 내용

영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분권화되어 있다. 즉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VALUE FOR MONEY)에는 THE BUYING AGENCY (중앙정부 조달청) 및 HMSO (정부간행물 발간 판매소) 등을 통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기도 한다.

최대 구매물품은 군수품과 도로,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 발주와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이며 기타 행정소모품부터 사무용기기, 차량 정비, 컨설팅 등 각종 재화 및 용역이 정부에 의해 발주된다.

영국정부의 조달구매 원칙은 예산절감(VALUE FOR MONEY) 및 영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이며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가장 경쟁적인 업체를 공급업체로선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EU 역내기업에 대해서는 영국기업과 동일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가격 이상의 정부구매는 EU 관보에 게재하여 EU 회원국 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은 GATT/WTO 신정부구매협정 가입국으로서 양허대상품목에 대해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정부구매협정 가입국 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공여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에는 BUY AMERICAN ACT 등과 같이 국산품 사용을 강제하는 별도 법규나 제도는 없으나 정부구매를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GATT 정부구매협정 비양허 기관 및 품목에 대해서는 영국업체에 대해 공급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GATT 비양허기관 및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격, 품질 등에 있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구매가 유리한 경우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정부구매를 인정하고 대부분 CASE BY CASE 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선적 전 검사제도

영국 정부는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선적 전 검사 제도는 교역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짐.

나. 수입관리 제도

영국은 WTO 및 EC 규정에 따라 영국은 거의 모든 수입량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다자간 섬유 협정 (MFA) 하에서 의류 및 직물류, 수출 자율 규제 협정에 의한 일부 철강 제품에 수량 제한이 가하고 있음.

이밖에 국민 보건 및 안전을 위해 농수산물 및 식료품에 수입 허가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즉 영국은 영국 및 EU 의 특정 산업 보호, 시장 질서 유지를 국제적 합의 및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 감시, 공공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해 수입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허가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함.

영국의 수입허가제도는 IMPORT, EXPORT AND CUSTOMS POWER ACT 1939 에 의해 제정된 THE IMPORT OF GOODS (CONTROL) ORDER 1954 (AMENED)에 근거하고 있음.

현재 수입허가 대상 품목은 THE IMPORT OF GOODS ORDER 1954 에 의거 영국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OPEN GENERAL IMPORT LICENCE(1988.1.1 일부 적용)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동 SCHEDULE 상에 명시된 품목 및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함.

이밖에 영국은 대외적으로는 EU 공동 농업 정책 추진 및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공 보건 및 위생, 안전을 위해서 소관 부처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아국과는 달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준 제도 및 형식 승인은 수입허가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되는 것이 특징임.

즉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수입품에 형식 승인 또는 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에 의한 법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유치, 압류, 폐기, 제 3 국 반출 조치됨. (즉 수입 허가 절차와 관련 없음. 단 특정 주파수 사용 무선 기기의 경우에는 수입 가능 제품 인지를 사전 확인한 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건으로 기술 규격 테스트를 실시함)

다. 수입허가 종류

OPEN INDIVIDUAL IMPORT LICENCE (포괄 수입허가): 특정 업체가 특정국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일정 기간 내 반복 수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수량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닌 핵분열물질, 총포류 및 폭약 등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허가

INDIVIDUAL IMPORT LICENCE (일반 수입 허가): 수입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해 1 회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

라. 수입허가 대상 품목

PEN GENERAL IMPORT LICENCE 고시 품목: MFA 협정에 의한 석유류, 특정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핵분열 물질, 총기류 및 탄약, 특정 무선 기기

○ 특정 법규에 의한 수입 사전 허가 품목

- EU 공동 농업 정책을 위한 특정 농수산물 및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제조된 식품
- 국민 보건 위생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한 특정 축산물 및 식물, 이를 재료로 한 식품
- 마약 등 습관성 의약품
- 멸종 동식물
- 인마 살상용 무기류 등

마. 대상 품목별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1) 섬유류

- 관련 법규: THE IMPORT OF GOODS MFA (CONTROL) ORDER 1954 (AMENED)
- 수입 허가 내용: 수량 규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 관리를 위해 수입 허가 실시

2) 철강류

- 관련 법규: THE IMPORT OF GOODS (CONTROL) ORDER 1954(AMENED)
- 수입 허가 내용: EU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국 가로부터의 수입 물량 관리를 위해 수입 허가 실시. 수량 규제 대상 국가가 아닌 제 3 국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물량 감시를 위해 수입 허가 실시

3) 핵분열

- 관련 법규: THE IMPORT OF GOODS (CONTROL) ORDER 1954 (AMENED)
- 수입 허가 내용: 핵분열 물질 관리를 위한 허가 실시 주로 핵발전소 등 대량 수요 업체에서 포괄 수입 허가로 수입 연구소에서도 연구용으로 수입 시개별수입허가

4) 인마 살상용

- 관련 법규: FIREARMS ACT 1968 MISUSE OF DRUG ACT 1971 ENDANGERED (IMPORT AND EXPORT)SPECIES
- 수입 허가 내용: 무기류 관리를 위해 수입 허가 실시 무기류 무기류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 무기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습관성 마약 등 습관성 의약품 관리 및 남용, 의약품 외부 유출 방지

5) 동식물

- 관련 법규: ACT 1976 EU CAP EUROPEAN ACT IMPORTATION OF ANIMAL 1972 COMMUNITY PRODUCTS AND POULTRY PRODUCTS ORDER 1980 THE PLANT HEALTH ORDER 1993
- 수입 허가 내용: 멸종 국제 협약에 의거 멸종 또는 보호대상동식물 및 이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EU 공동 농업 정책 대상인 특정 농축산물 대상 및 제품에 대한 수입관리. 농산물 동물 및 수입 지역 제한 및 검역. 축산물 식물. 영국 내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산물 종자, 건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식물에 대해 수입 지역 및 품목을 제한하며 수입 검사를 실시

바. 수입허가기관

- OPEN GENERAL IMPORT LICENCE 고시품목: 통산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IMPORT LICENCING DIVISION
- 동고시품목 CERTAIN RADIO TRANSMITTING DEVICES 는 통산산업부 RADIOCOMMUNICATION AGENCY 에서 형식승인

- 폭죽을 포함한 폭약, 탄약종류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농축산물 : 농수산 및 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 EU 공동농업정책 대상품목 : INTERVENTION BOARD
- 축산물: ANIMAL HEALTH DIVISION 및 MEAT HYGIENE DIVISION
- 식물: PLANT HEALTH DIVISION
- 마약 등 습관성의약품: 내무부(HOME OFFICE)
-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 환경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인마 살상용 무기류(OFFENSIVE WEAPONS): 내무부 (HOME OFFICE)

사. 수입허가절차

수입허가 신청 서류: 영국은 수입허가 절차와 통관 절차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관 절차 전에 수입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수입허가 신청 서류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음.

아 수입허가 시 신청 서류

- ILB/W (IMPORT LICENCE APPLICATION FORM; 수입허가신청서)
- SUPPORTING DOCUMENT: 수출국의 EXPORT LICENCES OR CERTIFICATE (MFA 에 의한 의류, 직물류 및 철강 등 수출국에 의한 수량 자율 규제 품목)
- 수입 증빙서 (B/L, L/C 등)
- 원산지 증명서 (C/O)

자. 통관서류

- SAD (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 AWB (AIRWAY B/L) 또는 B/L
- IMPORT LICENCE (수입허가품목에 한함)
- INVOICE
- PACKING LIST
- E1 (ACCOUNTING DETAILS; 가격 신고서)
- E2 (ENTRY ACCEPTANCE ADVISE; 신고 접수 통지서)

차. 수입쿼터

영국의 수입쿼터 시스템은 EU 집행위원회(EC)의 결정에 따른 EU 규정에 근거한다.

- 이는 관세 표 상에서 4 자리수의 TQSN(Tariff Quota Serial Number) 형태로 HS 코드 뒤에 별도 표시된다.
- 영국 관세청(HM Revenue & Customs)내 Central Tariff Quota Unit (CTQU)이나 The National Advice Service, European Commission DDS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Central Tariff Quota Unit (CTQU)
 - Tel: 01702 366787, 01702 367918, 01702 367237
 - Website: <http://www.hmrc.gov.uk/> 내 [Tariff Quota](#) 페이지

- The National Advice Service
 - Tel: 0845 010 9000
- European Commission DDS:
 - Website: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home.htm

17. 관세제도

가. 기본정책

- EU 공동관세를 적용
- 관세분류: 1988. 1월부터 HS(Harmonized System)에 의거, 품목별 관세부과
- 관세 부과방식: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 일반특혜관세(GSP): EU 공동으로 대 개도국 수입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의한 특혜 공여

나. 관세면제 제도

- 관세면제제도의 취지
 - 영국 또는 EU 의 생산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거나, 영국에 일시 수입된 후 다시 수출 될 물품에 대해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2 중 과세방지 및 수입 절차 간소화
 - 상용이 아닌 연구용, 자선구호용, 개인 소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의 면제를 통해 연구, 자선구호활동 등을 지원
-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용기
 - 수출 후 물품상태가 변하지 않고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국에서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일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견본품 등
- 일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항공기, 선박, 상용 도로운송차량
 - 개인용 물품 및 가정용품
 -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용기
 - 환적하거나 경유할 물품
 - 기타 일시 수입된 후 물품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재수출될 물품
- 특수용도 및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골동품(100 년 이상), 미술품, 인쇄물, 교육, 과학, 문화용 시청각 재료, 저작권 보유 물품(Copyright Goods)
 - 전시용 물품(전시 중 소비물품 포함), 소액 견본품, 사업 수행용 장비
 - 개인용품, 이사물품, 여행자가 반입한 소액 소비용 물품
 - 반송물품, 위약물품, 수출된 물품을 보수 후 반송되는 물품
 - 상속물품, 수상물품(Honorary Decorations and Awards), 전쟁 유품
 - 유류, 주류(맥주, 사이다 포함) 및 담배(Excise Duty 대상)

- 장애자 물품, 자선구호용품, 재난구호물품, 기증품, 의료 및 과학장비
- 광고용 물품, 관광 안내물
-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의료장비, 과학실험용 기기 및 장비, 실험용 동물, 개인소비용 의약품 및 치료용 재료
- 치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람의 피 및 이를 재료로 한 제품, 사람의 장기
- 기타물품
 - 수입 가공 후 재수출될 물품
 - 수입 가공 후 EU 지역 내에서 판매될 물품(판매시점에 과세)

다. 징수유예 및 감면제도

- 징수유예 및 감면제도의 취지
 - 제품 생산용 원재료 등에 대한 수입 시 관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EU 지역 내 제조업체 생산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
 - 관세와 물품세를 대상으로 하고 VAT는 제외
- 징수유예 기간
 - 1년 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
 -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대상물품, 징수유예기간, 감면세율을 변경 고시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징수유예 등 대상물품
 - 화학산업용 물품, 극소전자(Micro Electronics)산업용 물품, 식품산업용 농수산물
 - 건설용 장비, 항공기 유지·보수용 물품
 - 선박 건조·유지·보수용 물품
 - 석유 시추용 장비 및 소요자재, 석유 시추대(Production Platform)
- 징수유예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당초 징수 유예 등을 받은 용도에 사용해야 함
 - 수입 후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세관에서 사후관리

18. 주요인증제도

가.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기관은 영국의 국립 표준 제정기관(National Standards Body)으로서 우리나라의 KS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

즉, 영국 표준(British Standards) 및 기타 표준 제품에 대한 표준의 최초 발안, 초안 작성, 표준 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라는 일반적인 표준 제정의 절차를

거처 제정, 공인된 표준의 발간 및 마케팅까지를 총괄하는 제품 표준에 관한 한 영국의 표준을 책임지는 기관임.

이 같은 BSI 기관 자체의 성격에 따라 각종 제품에 대한 BSI 의 인증은 품질 및 안전규격에 관한 한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서 인정받게 되며, 이런 인증의 특성상 특히 제품의 마케팅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음.

인증획득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 보호법에서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의 대소비자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제품의 품질 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소비자 마케팅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

BSI 인증 마크가 연(Kite)모양을 하고 있어 동 인증마크를 BSI Kite mark 라고 부르고 있음.

2) 주관 기관

□ 기관명

-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설립

1901 년 기술전문가단체인 '기술표준위원회(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로 발족, 1926 년 Royal Charter 및 1982 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에 의해 영국 국가 규격 인증 발급기관으로 공인 받음.

□ 성격

-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산업협회
- 유럽공동체 규격인증 CEN, CENELEC 및 국제규격인증 ISO, IEC 발족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적 인증기관임.

□ BSI 주요 기능 및 업무

- 제품 품질규격 및 사양제정
 - Kite Mark 로 불리는 BSI 인증마크 부여
- EC 공동지침에 의한 CE Mark 인증
 - CE Mark 인증대행 공식 인정기관으로 1955 년 이후 EC 공통지침(EU Directive)에 의한 품질검사 및 인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대상 검사
 - 73/23/EEC - Electrical Equipment (LVD)
 - 88/378/EEC - Toys
 - 89/686/EEC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90/384/EEC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5/EEC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96/EEC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92/42/EEC - Efficiency of Liquid of Gaseous Fuelled Hot Water Boilers
- 93/42/EEC - Medical Devices
- 95/16/EC - Lifts
- 98/13/EC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98/37/EC - Machinery

○ 영국 내 타 규격인증기관 검사대행

- 영국 내 각종 품질검사 관련 기관의 제품테스트 용역

○ 서비스 및 생산)시스템 평가 및 인증획득 업무대행

- ISO 9000
- TL 9000
- ISO 14000
- BS 7799

○ 재료(성분) 검사 및 분석

- 석유, 석유화학, 광물질, 농작물 등에 대한 성분 검사 서비스

○ 품질관리 교육훈련, 세미나 및 컨설팅

- ISO 9000 등에 기초한 품질관리 교육 서비스. 구동구권 및 중동을 포함한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

○ 기술정보 서비스

- 각종 기술관련 조사자료 및 매뉴얼, 규격인증 집 발간, 판매 (*각국 지사에서도 판매. 한국의 경우 (주)BSI 인증원에서 규격번호 별로 판매)
- 규격인증 제도 및 사용방법, 포장 및 라벨표시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 해외규격인증의 영어번역자료 제공서비스

□ 조직

○ 인원수: 약 5,000 명 (해외지사 포함)

○ 조직

- BSI 조직은 각 업무기능별로 4 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음. 이 중 인증신청 및 발급,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업무는 런던 시내 Chiswick 본사에서, 성분검사 및 제품 검사 업무는 외곽 Hemel Hempstead 검사소에서 각각 이루어짐.
- 국내에 2 개 지방사무소(스코틀랜드, 웨일즈), 해외에 약 110 여 개국에 직접 지사 설립 또는 에이전시(미국, 홍콩, 대만, 중국, 한국)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운영예산

정부재정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며, BSI 인증발급 관련업무 및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원 조달함.

특히, BSI Management Systems 라는 단위 사업 명으로 추진되는 일종의 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지난 98 년 관련업체들의 인수를 허용토록 하는 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BSI 가 자체 수익확보를 위해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분야임.

이러한 수익성 확보 노력으로 현재 BSI 는 BSI Group 이라는 조직 명 산하에 전세계 110 개국에 약 5 천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2001 년 그룹매출액만 2 억 3 천만 파운드로 수익이 크게 늘어났음.

3) BSI 사업부별 소재지

□ 본사: BSI Global, British Standards, Business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s Head Quarter

- 주소: 389 Chiswick High Road, London W4 4AL, UK
- 전화: 44-(0)20-8996-9000
- 팩스: 44-(0)20-8996-7001
- 웹사이트: www.bsi-global.com

□ 검사소(BSI Product Services)

- 주소: Marylands Avenue, Hemel Hempstead, Herts HP2 4SQ, UK
- 전화: 44-(0)1442-230442
- 팩스: 44-(0)1442-231442

□ 지방사무소

- Scottish Office: Quality House, 2000 Academy Park,
Gower Street, Glasgow G51 1PP
 - (TEL) 44-(0)141-427-2825
 - (FAX) 44-(0)141-427-5989
- Welsh Office: QED Centre, Main Avenue, Treforest Estate, Pontypridd, Mid Glamorgan CF37 5YR
 - (TEL) 44-(0)1443-841381
 - (FAX) 44-1443-841373

□ 해외지사

표준 제정 및 규격인증 이외 사업분야를 포괄한 BSI 해외 지사현황은 <http://www.bsi-global.com/Corporatw/Worldwide+Offices/index.xalter> 에서 검색가능하며 아래는 대표적인 지사 5 개 소재지임.

- 미국: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Inc.
 - 12110 Sunset Hills Road, Suite 140, Reston,
 - Virginia 20190, USA
 - (TEL) 1-703-250-5900
 - (FAX) 1-703-250-5313

- 홍콩: BSI Pacific Limited
 - Unit C, 5/F, Garment Centre, 576 Castle Peak Road,
 - Kowloon, Hong Kong
 - (TEL) 852-2742-5638
 - (FAX) 852-2743-8727
- 대만: 14F, 27 Chung Shan North Road, Sec. 3, Taipei, Taiwan
 - (TEL) 886-2-2595-8270
 - (FAX) 886-2-2594-4234
- 중국: Shenzhen Representative Office, China
 - (TEL) 86-755-323-5472
 - (FAX) 86-755-321-2434

□ 한국 내 대행사

- 대행사명: (주)BSI 인증원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3층
 - (TEL) 02-777-4123
 - (FAX) 02-777-4446
 - Web: www.bsikorea.co.kr
- 취급 업무
 - 인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BSI 인증 집 판매
 - 공장검사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4) 강제인증 승인절차

□ 신청 시 구비서류

BSI 인증 신청서류는 회사소개서 및 신청서 두 가지로 BSI 본사 또는 지사에서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소정양식)
 - 인증신청서: 회사명, 주소, 담당직원, 인증신청대상 품목, 타 인증 획득 여부, 결제 방법 등을 기재
 - 회사소개서: 인증신청서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류한 것으로 신청회사 개요에 추가하여 품질관리, 안전, 환경 보존에 관한 회사정책 서술
 - 참고: 한글신청서도 가능하며, BSI 한국인증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절차

- 신청방법
 - BSI 영국본사 또는 BSI 한국인증원

- * 공장검사는 BSI 한국 인증원에서 시행하므로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신청 시 동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함.

○ 평가방법: 서류 및 샘플검사, 공장검사

○ 승인절차설명

- BSI 본사 또는 BSI 한국인증원에 BSI 승인획득 관련 문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BSI 소개 브로슈어와 신청양식, 회사소개서 작성양식 등을 송부해줌. 신청서 제출 후 세부 진행 과정은 아래 절차도와 같음.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출
견적 및 계약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초로 BSI 가 견적 및 계약서 작성, 제출신청업체가 계약내용에 합의, 서명날인하면 BSI 가 이후 심사 계획 수립. 계약 체결되면 전담 심사원이 지정되며, 동 심사원이 제반 사항 관리(심사원: BSI 소속직원 또는 외부 품질관리 전문가)
심사계획수립	신청사와의 협의 하에 문서심사 및 본 심사 일정수립 (문서심사단계 시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된 후 본 심사 진행)
문서심사 (품질계획서접수)	ISO 9000, 14000 품질시스템에 다른 품질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 제출. BSI 심사관들이 해당 업무부서와 현장을 직접방문, 품질시스템의 이행 상태 심사. 한국인 전문심사원이 품질계획서 검토 후 BSI 영국본사로 송부, 재검토
Sample Test	품질계획서 통과 후 신청업체는 검사대상 샘플을 제작, BSI 본사 (Hemel Hempstead 소재 시험소)로 발송. 이때 검사비용은 미리 BSI 본사로 송금하며 입금이 확인되면 실제 검사에 착수 검사소요기간: 보통 4 주~5 주
현장심사	제품테스트 통과 후 현장심사 진행
인증서발급	현장심사 통과되면, BSI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간임. 한국에서 신청 시 BSI Korea 가 현장심사 후 BSI 본사에 인증서발급을 요청, BSI 본사에서 발급. 발급소요기간은 대개 4-5 주 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후심사 (Continuing assessment)	공장방문, 품질관리시스템 정기 심사
재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인 3 년이 경과한 후, 재 인증을 위한 심사가 최초 본 심사 시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됨. 단, 심사일수는 신청업체의 경영시스템 이행 상태에 따라 본 심사 일수보다 적게 적용될 수 있음.

□ 공장검사 내용

○ 공장검사 유형: 사전검사

○ 공장검사 내용

- 심사방법
 - 한국의 경우 신청업체가 BSI 본사에 보낸 샘플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BSI 본사가 BSI Korea 에 동 사실을 통보, 양측이 현장심사 날짜 등 구체사항 협의, 진행

- 내용
 - 제품샘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품생산 및 품질수준 유지능력을 전반적으로 심사.
 - 구체적으로는 ISO 9002 기준에 의해 심사하며, 만약 ISO 9002 적용 곤란 시 유사 인증 및 BSI 자체 방식으로 심사
- 심사일수: 평균 1 일 (ISO9002 기준으로 심사가 곤란할 시 심사일수가 더 소요됨)

5) 미 이행 시 제재사항: 임의 규격 인증이므로 제재사항은 없음

인증획득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의 대소비자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판매제품의 품질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소비자관계 마케팅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

6) 적용대상 품목

전기, 전자제품에서 도자기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BSI 인증이 대소비자 관계 중시 성격으로 인해 소비자와 제조업자간 필요성 인식 또는 이해에 따라 수시로 인증대상 품목이 추가되고 있음.

-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대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Construction products: 건축, 토목자재, 실내장식재(바닥재 등)
 - Engineering and consumer products: 가정용 배관용품(파이프 피팅, 밸브류), 공업용 밸브 및 피팅, 문개폐기, 방화용품 등
 - Medical & personal protective: 의료기기, 헬멧 등
 - Electrical components and photometry: 전기부품, 광학측정기
 - Electrical & gas appliances: 전기 및 가스기구(보일러, 조리기구, 온수기 등)
- 대상품목 리스트: 인증대상 품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http://search.bsi-global.com/index.phtml?open_folder=Industry+Sectors)

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향후 전망

□ CE 마크와 조화된 Kite 마크 운영 활성화

영국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격요건이 점차 품목별로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전반적인 경향과 함께 BSI 자체적으로도 Kite 마크와 EU 차원에서 의무화된 CE 마크 공인 인증 업무 병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BSI 는 영국 국내에만 적용되는 표준 제정노력과 함께 EU 차원에서 통일화된 표준 제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 2001년 BSI 는 Kite, CE 마크를 통틀어 총 839 개의 신규 인증을 발급 하였던 바, 누계 기준으로는 Kite 마크 라이선스가 2,296 개, CE 인증이 2,443 으로 CE 인증업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규격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지속 유지

BSI 의 자체적인 Kite 마크에 대한 인지도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대상의 80% 영국인 들인 Kite 마크 자체를 제품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함.

특히 60%정도는 BSI Kite 마크 부착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밝힌 것으로 나타나, 품질인증에 대한 영국인들의 Kite 마크 부착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대응방안

영국의 경우 BSI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EU Directives 에 따른 유럽공동 규격인증인 CE Mark 와 BSI 인증규격이 달라 일부 수입상들의 경우 CE 마크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따로 BSI 인증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

수출 시 한국 BSI 지사 또는 수입상을 통해 해당품목이 BSI 인증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CE 마크를 기존에 획득한 경우라면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 동 제품이 유럽연합의 품질요구수준 적합 품목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지적재산권

- 1977 년의 특허법은 최장 20 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허신청에 대해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특허 조약의 가맹국이고 특허 협조협약의 비준국으로 가맹되어 있다.
- 상표는 7 년간 보호되는데 이후로 14 년 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의 적용범위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 이외에 1949 년 의장등록법과 1988 년 지적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다.
- 영국 통산부(DTI) 산하 특허청(The Patent Office: www.patent.gov.uk)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본부
 - The Patent Office
 - Concept House
 - Cardiff Road
 - Newport
 - South Wales NP10 8QQ, UK

- 저작권 담당 사무소(런던)
 - The Patent Office
 - Harmsworth House
 - 13-15 Bouverie Street
 - London EC4Y 8DP, UK
- 인콰이어리 의뢰:
 - The Central Enquiry Unit
 - Tel: +44 (0)1633 813930
 - Fax: +44 (0)1633 813600
 - Email: enquiries@patent.gov.uk

20. 소비자보호제도

가. 개요

The Consumer Credit Act(1974 년 제정), The Sale of Goods Act(1979 년 제정, 1994 년 개정), The Consumer Protection Act(1987) 등 수개의 법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기업 경쟁촉진 담당부처인 Office of Fair Trading 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저지하고 기업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은 전국 700 여 개 지역 민원 처리소(Citizens Advice Bureaux)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직접 문제기업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소비자 민원이 법정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비자 보호 관련법 중 The Consumer Protection Act(1987)는 EU 공동지침에 의거 PL (제조물책임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PL 법 위주로 중요내용을 이하에 소개한다.

나. 영국의 PL 법

1) 도입 및 시행시기: 1987 년

2) 입법과정 및 입법형태

- 영국의 PL 관련법은 1985 년 EU 의 PL 공동지침에 따라 [Consumer Protection Act 1987]의 형태로 1987 년 5 월 제정, 1988. 3. 1 일부터 시행되었음.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은 기존의 PL 관련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법으로서 1988. 3. 1 일 이전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음.
 - 참고로 영국은 동법 제정이전에 Consumer Safety Act 1978 등 각종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PL 법의 취지를 담은 수개의 국내법을 운용하였으며, 동법은 상기 Consumer Safety Act 1978 를 비롯, the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Part I), Explosive Act 1875 (section31,80),

the Trade Descriptions Act 1971, the Fabrics(Misdescription) Act 1913 등 개별 법을 개정, 보완 또는 폐지, 통합 제정한 것임.

- 따라서 피해 소비자는 동 법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관련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음.

다. PL 법 내용

1) 법조문

- PL 관련법인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은 I, II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음.

2) 입증책임 및 연대책임관련

- 과거 소비자보호 관련법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했어야 하나, 동법에서는 소비자의 이러한 의무를 완전히 없애고 소비자는 제조업자 과실증명 없이 제조업자를 고소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과실 입증책임 면제조항은 동법 이전에 제정된 The Sale of Goods Law 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동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문제상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브랜드 소유업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 제조업자: 문제상품의 제조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재료 공급자 및 가공업자(예: 완두콩 통조림 제조업자)도 포함됨. 그러나 상품의 본질적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포장 공정업체는 포함되지 않음.
- 수입업자: 영국으로 직접 반입한 수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EC 역내로 물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를 가리킴. 즉, 문제상품이 EC 역내로 수입되어 결과적으로 영국 내에 판매가 되었다면 배상책임은 영국 수입업자가 아닌 첫 번째 수입업자인 대 EC 반입업체가 배상을 책임을 가짐.
- 브랜드 소유업자(Own-branders): 자사의 이름은 상품에 표시, 문제상품의 제조업자임을 표현한 경우의 공급업자
- 기타 공급업자: 일반 도소매업자들은 배상책임이 없으나 문제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브랜드 소유업자를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소비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짐.
- 손해배상 청구요청을 받은 상기 업자들은 아래 6 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문제 상품 미 공급 증명 (예: 도난 또는 위조증명)

- Development risks defence: 문제 상품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하자
- 법. 규정준수에 따라 발생한 하자
- 공급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증명 (예: 유통업자 취급 부주의)
- 정상판매제품이 아니라는 증명 (예: 판촉상품, 샘플 등)
- 최종 생산업체의 설계 요구에 따라 제조된 부품의 경우 부품 제조업체는 면책

3) 소멸시효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능기간은 문제 상품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지 3년 안에 법적 청구를 해야 함.
- 제조업자가 문제 물품을 공급한지 10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함.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수출 지원 정책

영국의 수출진흥계획은 통산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총괄 하에 통산부(DTI) 산하기구인 영국 무역투자 청(UKTI; UK Trade & Investment)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정부주관의 수출진흥계획 및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 무역정책 관련
 - 국제 및 EU 무역정책, 세계무역기구, 북미지역,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수립
- 뉴 이슈 및 개도국 관련
 - 트레이드 이슈, 국제투자정책, 교역과 개발, UN 및 EC 의 개도국관련 일반교역정책, 뇌물추방을 위한 OECD 작업, EU 의 개도국 정책수립
- 수입 관련
 - 수입 일반정책, 반덤핑, 섬유교역, 관세율 협상, EC 외부 세율, GATT 관세평가 코드, GATT 및 자동세율 쿼터, 관세율 등의 업무수행
- 국제경제 (International Economics) 관련
 - 경제적 합리성, 무역금융, 국제교역정책의 경제성, 수출촉진제도의 경제성 평가, 교역 및 투자의 성과분석 (상위 80 개 시장에 대한 성과분석을 매년 시행), 전반적인 교역성과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
- 유럽 (Europe)관련
 - 국가보조정책, 기업보조금 및 공공지원에 관한 OECD 실무협의회에 영국을 대표, 유럽단일시장, 국제에너지, EU 산업정책, EU 확대문제 등의 업무수행

기존 수출 업무를 통괄하던 통산부(OTI)내 영국 무역 위원회 (British Overseas Trade Board, BOTB) 가 폐지된 후 수 년 간 영국 수출국(UK Trade Partners)이 수출 관련 업무를 일임해 왔으나 최근 영국 투자청(UKI; UK Investment)과 통합되며 영국무역 투자청(UKTI)이라는 전문 무역 투자 정부기관이 탄생 함.

그 외 금융 지원 업무는 역시 통산부 산하의 수출 신용보증부(ECGD)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민간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나. 마케팅지원

□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

UKTI 는 주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 시설과 여비를 임차료의 50% 지원하고 있으며, 서유럽 외 지역에서 박람회 개최 시 참가자에 대해 여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대외 사절단 지원

UKTI 는 상공회의소 및 무역단체 등에서 후원인이 되어 선발된 사절단에 대해 시장개척 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 사절단 지원

UKTI 는 영국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초청되는 외국사절단에게 국내외여비, 통역비 및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며, 설명회를 위한 리셉션 등 경비도 지원하고 있음.

□ 해외 세미나 지원

UKTI 는 세미나와 관련 전시회 경비를 지원하고 서유럽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발표 회사당 2명까지 여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해외 백화점 지원

UKTI 는 해외 대규모 소매점을 활용, 영국상품 진열하거나 소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무부 해외공관 상무요원들도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위한 점포 관리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지원

UKTI 는 세계 대형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무부 해외공관, ECGD, ODA(해외개발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해외 프로젝트 획득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 제공과 프로젝트 수주를 일괄 교섭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및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 금융지원

영국은 별도의 수출 금융지원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은행에서 내수 및 수출입에 관계없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수출업계를 위해 1919 년부터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를 통해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EDCF 는 신용기간 2 년 이상, 거래금액 2 만 파운드 이상인 자본재 수출에 대해 보험 및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ECGD 는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수출계약상 대금 미지급을 위한 보험인수 등 이차보전제도를 주로 함.

○ ECGD 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보험 premium 수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자본금이나 별도의 기금을 보유치 않고 있으나, 재무부가 관리하는 Consolidated Fund 에 전입(잉여금 발생시), 차입(손실 발생시)하는 방식의 재정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EDCF 에서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보험으로는 건 별로 5 백만 파운드 이상의 자본재 및 Service 수출을 하는 기업에 금융을 제공한 민간은행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2 천 파운드 이상의 특정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한 은행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프로젝트 신용보험도 운영하고 있음.

공급자 신용보험으로는 환어음 또는 P-Note 를 매입하여 은행이 중기 수출신용거래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데, 은행은 최소 2 년 이상의 신용기간을 제공하며, 계약금액의 최대 85%까지 융자하며, 나머지 15%는 수입자가 수출 자에게 신용기간 개시 전에 지급함.

○ EDCF 에서는 일부 프로젝트에 한 건의 계약이 아닌 여러 건의 계약이 있을 경우 이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 Credit Lines 을 이용하기도 함.

라. 무역관련 서비스

영국의 무역관련 서비스 현황을 보면 상공회의소(Association of British Chambers of Commerce)에서 수출자가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전문적인 수출마케팅 조사요원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종업원 200 명 이하의 중소기업체가 해외 시장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경비를 지원하는 EMRS(Export Market Research Scheme)를 운영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판단하여 수출개발 자문관이 실무적 사정을 자문하는 Active Exporting Initiative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각 산업별 무역단체 (Trade Associations)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출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함.

통산부(DTI)의 지원 하에 SIPRO (구 The Simpler Trade Procedures Board)의 인터넷 사이트 (www.sitpro.org.uk)를 통해 무역 관련 절차 정보 및 서류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무역 실무 간 편의성을 지원함.

관세청(HM Revenue and Custom)의 UK Trade Info 사이트 (www.uktradeinfo.com)에서는 무료로 무역통계 및 관세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줌.

기타 EC 차원에서 EU 회원국들의 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해 EU Access Databas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사이트 (www.mkaccd.db.eu.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마. 인프라지원

□ 외무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해외 각 공관에서 상무담당직원들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DTI 에서는 해외 공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상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각 공관 상무담당직원들은 일반적인 경제정보 수집 외에 본부와의 연락을 통해 특별시장에 대한 심층조사도 하고 있음.

□ 기타

영국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는 무기수출 서비스기구(DES0, Defence Export Services Organisation)를 별도로 두고 무기수출을 전담하고 있음.

농수산부에서는 영국 농산품, 식료품, 수산 품, 음료, 술 등의 상품수출을 장려함.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및 영국관광국(British Tourist Authority)에서는 관광 상품, 자원부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석유가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제약 및 의료장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서는 항공·조선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음.

영국

구분	지원제도	시행기관	비 고
금융지원	- 자본재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및 보증,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	수출신용 보증부	ECGD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시 임차료의 50%, 2 명의 여비, 통역 지원	통산부	UKTI
	- 무역투자사절단에 대한 시장개척 금융, 여비 지원 및 마케팅 정보 제공	통산부	UKTI
	- 영국물품 구입을 위해 초청된 외국사절단에 대한 여비, 통역 비, 리셉션 경비 지원	통산부	UKTI
	- 해외 대규모소매점에서 영국상품을 전시 소개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통산부	UKTI
	- 해외 대형프로젝트 관련 정보제공 및 수주 획득을 위한 행정지원	통산부	UKTI
	- 신규 수출 희망기업, 해외 주요프로젝트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자문 제공	통산부	UKTI
	- 시장 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 시 경비 지원	상공회의소	

22. 시장 특성

가. 시장 특성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성의 영향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으나, 수입규모의 확대와 유통채널간 가격경쟁으로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 고우 등 북부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성격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시장 특징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1) 대형 유통체인에 의한 시장지배 경향

대표적인 유통체인인 M&S 가 1930 년 런던 시내 중심가 Oxford Street 에 대형 매장을 연 이후 특히 의류 및 식품부문에 대형 유통회사들이 속속 설립되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면서 가정용 소비재 전분야에 걸쳐 대형 유통체인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2) 고 마진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유럽국과 가격 비교시 동일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에 따라 영국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브랜드 제품의 회색수입시장(Grey import) 규제 완화 등 유통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3) 보수적인 거래관행

기존 거래선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입선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수입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4) 소비자의 개방적인 구매태도

상품거래 시 상품의 질과 내용을 중시할 뿐 어느 특정지역의 제품 또는 자국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배타 감정이 없으며, 개성 있는 상품구매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거래는 소량, 소액, 다품종 주문 형식을 띠고 있다.

5) 제 3 국 조달시장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조달시장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품목은 중고 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 의류, 모조장신구, 신발 등 일반 비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 명의 구매 담당자가 buying office 를 운영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 거래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구매시즌

영국이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7.5%의 높은 부가가치세와 고 마진 유통구조로 인해 물가가 비싸 소비자들은 부활절, 성탄절,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바겐을 많이 이용한다.

- 정기 대바겐세일: 여름(6 월말~8 월말), 겨울(11 월말~1 월말)
- 시즌 특수: 부활절(4 월), 학교 개학시기(1 월과 9 월), 성탄절(12 월)

다. 유통 구조

1) 영국 소매시장 분류는 기준 산업 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소매상을 Division 52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Personal and household goods)로 분류되며 취급품목에 따라 7 개의 소그룹으로 세분화된다.

- 52.1: Retail sale in non-specialised stores
- 52.2: Retail sale of food, beverages and tobacco in specialised stores
- 52.3: Retail sale of pharmaceutical and medical goods, cosmetic and toilet articles
- 52.4: Other retail sale of new goods in specialised stores
- 52.5: Retail sale of second-hand goods in stores
- 52.6: Retail sale not in stores
- 52.7: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52.1 그룹에 포함되는 소매상을 일반적으로 Grocery Store 라 칭하며 이중 대형 소매 유통점을 Leading Grocery Multiples, Major Multiples 또는 Multi-outlets 으로, 중간 소매 유통체인점을 Smaller Multiples 으로, 소규모 개인 상점을 Independent Grocery Store 로 분류된다.
- 52.1 그룹을 제외하고 52.2, 52.3 또는 52.4 그룹에 포함되는 전문점들은 주로 Specialised Convenience Multiples 로 호칭된다.
- 최근까지 영국 소매시장은 유럽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마진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소매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 소매 유통시장 분석 (1998 년 대비 1999 년)

○ 소매 유통점의 국제화

- 기술의 발달에 의한 국제 소매시장 대상 영업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영국 내 대형 유통점의 해외진출 이 증가 하고 있다. Kingfisher (주로 전문 품목을 다루는 B & Q, Woolworths, Superdrug, Comet 등의 모기업)의 경우 Castorama 및 Darty 를 합병함으로써 세계적인 DIY 및 가전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국제화 추세로 인해 국제적인 유통 체인점들이 영국시장에 진출하여 영국 내 경쟁이 심화 되었다. 대표적으로 1999 년 미국 최대 유통점인 Wal-Mart 의 Asda 인수로 시작된 가격경쟁으로 영국 내 매출마진 감소, 독립 상점이 줄어들었다.
- 영국 90% 소비자들 이 1 시간거리에 인접한 전국 9 개의 Regional Shopping Centre 내에 거주하며 있는 데 시간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Shopping 을 Leisure 로 생각함에 따라 대형 유통점 또는 Shopping Centre 를 선호함에 따라 일반 거리에 위치한 독립 소매 상점들이 줄어들고 있다.

○ 소비자 기호 변화

- 영국사회 및 경제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나 바빠진 소비자들은 소매점에 대한 로열티가 없고 품질 및 가격에 의존하는 소비패턴(Value for Money)을 보인다. 이러한 기호변화는 Internet 및 통신의 발달로 소매점간 가격비교가 쉬워지고 기호에 맞는 브랜드 품 선택 가능해짐에 기인하고 있다.

○ E-Commerce

- 현재 Internet 을 통한 소비는 전체 소매시장에 1% 미만으로 일반 소비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Internet 을 통한 쌍방향 Shopping 및 주문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점차 매출 증가 예상된다.

○ 브랜드화

- 일반 소비자들이 소매점 상호보다는 제품 브랜드에 따라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매 유통점들이 자체 브랜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 소분류 희석

- 영국 소매유통 시장은 전통적으로 소분류에 따라 각기 영역을 나누어 왔으나 최근 들어 대형 유통점들이 One-stop Shopping 을 지향하여 유명 디자이너 의류, 금융 서비스 제공, 자동차 판매 등으로 이러한 소규모 분류가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One-stop Shopping 경향에 따라 주유소들도 소매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 수출 유망 상품

품목명	추천 사유	경쟁국
의료기자재	○ 영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Bio 산업 보유 - 유럽 전체 바이오 기업의 25%인 270 개사, 종사자 4 만 명 ○ 의료기기 시장규모 확대 추세 - 영국의 의료기기 수입액(2004년): 52 억불 - 한국산 수출액: 1 억 6 천만 불 ○ 세부 유망품목: 의료용 모형, 의료용 재료, 의료용 또는 수의용기기, 의료용 소모품, 기타 의료용기기 등	고가: 독일, 미국, 영국 저가: 중국
조선기자재	○ 영국내 수리조선 관련 조선 기자재 및 선박부품 수요 다 대 ○ 한국 선박 수출의 후방효과 모색 - 한국의 선박 대영 수출액(2004년): 4 억 4 천 9 백만불 ○ 유망품목: 선박건조 부자재, 관련 기기, 수리조선 관련 밸브, 펌프 류, 엔진 부품, 와이어 로프 류, 선박 용 소화기기 등	노르웨이, 스페인, 일본 등
디지털 라디오	○ 급격한 보급 속도 - 영국의 디지털 방송 협회(DRDB: Digital Radio Development Bureau)는 처음 보급된 지 7 년을 맞는 오는 2008 년경 영국 가구의 28%정도가 디지털 라디오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영국인 원천 기술 보유, 다른 제조국을 통해 소싱
공예 도기 제품(Craft Ceramic ware)	○ 영국의 Ceramic Ware 전체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공예품(Craft Pottery) 시장만은 지속적인 상승세 - Ceramic Ware 의 주종인 식기 류 소비 감소의 이유는 영국 소비자들의 선호가 종전 formal dinner set 에서 individual piece 로 변화됨에 따른 것으로 공예품의 증가는 공예품을 선물용품으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에 주목	고가: 영국 현지업체, 독일 저가: 중국 등
GPS 이용한 위치 추적 장치	○ GPS 기술을 응용한 감시 장비 관련기술의 발달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유권의 제한 등 반론이 있음에도 GPS 기술을 이용한 아동 추적 장치는 시장 출시 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미국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영국 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방법으로써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와 관련 된 산업별 대표 기관의 연락처 등은 보통 영국 상공부(DTI) 사이트(<http://www.dti.gov.uk>)나 CBI 의 'Trade Association Forum' 사이트(<http://www.taforum.org>) 등을 통해 산업별, 이름 별로 확인 가능하다.
- 영국에서 개최되는 연 중 전시회 정보와 관련해서는 'Trade Fairs & UK Exhibitions' 사이트(<http://www.exhibitions.co.uk/index.html>)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발굴

- 보통 영국 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각 종 비즈니스 검색 사이트 및 회사 디렉터리 제공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그 외 각 산업이나 제품별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 협회나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 리스트나 관련 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표적인 비즈니스 검색 & 회사 디렉터리 서비스
 - Kompass: www.kompass.com
 - 1st Directory: <http://www.the1stdirectory.com/>
 - Kelly Search: www.kellys.co.uk
 - Ask Alix: www.askalix.co.uk
 - Yellow Page: www.yell.co.uk
 - Apple Gate: www.applegate.co.uk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에서 업무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많은 영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소매상들은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작은 선물 일지라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식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음악회, 오페라 등과 같은 행사에 초대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사실 어떤 초대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가 판가름하는 기준은 매우 미묘하다. 따라서 초대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는 아예 삼가는 게 좋다.

영국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관습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한 약속 시간에서 약 10-20 분 정도 여유를 두고 도착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초대 받을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19 시 30 분부터 20 시 사이라고 하면 적어도 19 시 50 분까지는 도착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을 Mr. ○○○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신 성이나 아니면 이름 전체를 말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성 앞에 Mrs./Ms.를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

지나친 신체적 접촉이나 거친 동작은 영국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삼가야 한다. 악수는 대개 처음 소개할 때만 하고 그 후에는 그냥 인사말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운데는 악수로 인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여 최고 경영자급도 많다. 따라서 면담 또는 상담 시 외모와 개인 사항 등 업무와 무관한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영국에서는 평일에도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심(런던 금융가)에서는 짙은 색 옷이 선호된다. 여성들은 색깔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는다. 한편 푸른 신사복 상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콧비는 삼가는 게 좋다.

나. 비즈니스 관행 및 유의사항

방영 상담 시 사전 면담 약속이 필수적이며, 사전 약속 없이 현장방문 상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대주의가 필요하다. 상담신청은 최소 3 주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방영 직 전에 상담예정자와 상담 세부사항을 재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기업인들의 상거래 활동(추진 과정)은 대륙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고들 말한다.

진행이 느린 대신 확실하고 장기적인 관계구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영국 기업들과의 상거래에는 여유와 끈기가 필요하다.

초기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들며, 성약까지 최소 6 개월이상 소요되며 사전 접촉 시 신뢰 제고를 위한 영문 회사 소개 및 카탈로그, 각종 인증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영국측 면담자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되 인사가 끝난 후 곧장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대화는 금물. 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한편 관련 서류(설명서, 가격표 등)를 구비할 경우 정확한 영어를 사용토록 유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가급적 파운드/펜스 단위로 제시되는 것이 좋다.

영국바이어들, 특히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이들은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이에 즉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자사상품의 특징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식의 접근이 좋다.

업무상 같이 식사할 경우 영국인들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저녁정찬보다는 간단한 점심을 선호한다. 또한 식당에 미리 예약했다라도 30 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취소되기 때문에 상대방 영국인보다 미리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우선은 편지로 하는 게 좋으며 그 다음에 팩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문구에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인들이 외국인의 서툰 영어구사에 관대한 경향이 있긴 하나, 서류나 기술적 자료들에서의 오 표현이나 문구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수신처가 대기업인 경우 정확한 부서, 나아가 수신자의 이름까지 기재해야 한다. "Dear Sir" 나 "Dear Madam" 등과 같은 표현은 대상이 모호하므로 "Dear Mr./Mrs.○○○등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끝 인사말은 서두에 구체적으로 수신자를 명명했으면 "Yours Sincerely" 혹은 "Sincerely Yours"로 마치면 되고 "Yours Faithfully"같은 표현도 사용된다.

팩스를 주고 받을 때는 수신인 및 주소, 발신인, 관련사항 총 몇 장이 발송되는지 등이 기록된 팩스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첫 교신부터 첫 오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가 필요

일반적으로 영국 업체들은 제품 검토서부터 첫 구매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기존 공급업체와 비교, 확실한 거래상의 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선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존 공급업체 제품의 가격, 품질, 딜리버리 및 A/S 지원여부까지 세밀히 검토 한 후 거래선을 정하기 때문에 관심표명 후 첫 거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접촉을 해야 함.

또한 다품종 소량주문이 많은 관계로 첫 거래부터 최저 주문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이어는 거래를 쉽게 포기하게 됨을 유의하기 바람.

나.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중요

런던 무역관에서도 바이어 조사 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EMAIL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알아 내는 것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기업은 SALES, MARKETING, PURCHASING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 (담당자부재 시,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함.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 (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영국바이어 관심사는 가격, 품질(인증 획득여부), 딜리버리 기간

첫 접촉 시 회사소개를 할 경우 CE 마크나 ISO, BSI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인증획득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며 항상 유럽 산 제품구매와 비교 시 비용상의 유리한 점과 딜리버리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므로 CIF 가격 및 딜리버리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영국 바이어들은 CE 마크 획득여부를 가장 많이 문의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CE 마크보다 획득이 더 까다로운 BSI (영국표준협회)의 KIT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제품은 ISO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증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또한 회사소개 시 선진국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제조기술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제조설비 등이 명기된 회사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철저한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 구축필요

영국 바이어를 처음 접촉할 경우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영문카탈로그, 가격표 및 샘플, 영문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이와 같은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할 자료가 없을 경우, 비즈니스 진행에 차질이 있는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카탈로그나 영문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구비할 필요가 있음.

마. 선 바이어조사 후 세일즈 출장을 실시

시장성 및 관심바이어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또는 유럽출장을 실시하는 것은 출장 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가 없음. 또한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동일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성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27. 통관절차

가. 일반수입통관 절차(Standard Import Procedure)

1) 수입신고

□ 수입신고 시기

- 선박화물은 40 일 이내, 항공화물은 20 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
 - 화물 도착 전 4 일 이내에는 수입신고 가능하나,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적하목록이 제출된 후에만 세관에서 접수
- 기간 내 수입 신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 지정된 수입신고기간 경과 시 선박회사 등에서 통관독촉통지서 발송
 - 통관 독촉 후 3 월 이내에 통관하지 않는 경우 세관창고로 이고
 - 세관창고 이고 후 6 월 이내에 통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포기로 간주해 매각 또는 폐기

□ 수입신고 방법

- 화주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신고 가능
- 에이전트의 경우 대부분 세관과 전산 연결되어 전산으로 신고 가능,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
-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도 가능

□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 선하증권(B/L), 화물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L)
- 가격신고서, 수입허가서

□ 긴급통관요청

- 장기 보관할 경우 부패,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긴급통과 요청 가능
- 긴급통관 요청서(Request for Urgent Clearance)에 긴급통관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 세관에 제출
- 세관에서 요청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한 경우 긴급통관 처리

2) 통관방법의 결정(Cargo Selective)

□ 수입신고 즉시 세관에서 통관방법을 결정

- 전산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전산입력과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 통관방법이 자동 표시되어 수입 신고인이 통관방법의 확인 가능
- 통관방법의 결정은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e)에 의해 자동 결정

□ 통관방법의 종류

-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 허용(실물검사 생략)
- 서류심사를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전화 등으로 제출 요청
- 수입신고 후 24 시간 이내에 통관되며, 현재 전체 수입신고의 7% 정도
- 주로 수입허가 대상물품, 가격심사가 필요한 물품의 대상
- 서류심사와 실물검사를 병행
- 서류심사 및 실물검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통관되며, 현재 전체 수입신고의 3% 정도
- 주로 마약 등의 밀반입, 관세포탈 등이 우려되는 수입물품이 대상이며, 우범지역으로 부터의 수입물품, 과거 위반자 신고물품, 처음 수입되는 물품, 처음 수입하는 업체의 물품 등을 대상
- 서류심사와 실물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
- 전산신고 하는 경우 1 시간 이내에 통관메시지가 수입신고자의 컴퓨터로 전송,
- 수입신고관련 서류는 수입신고 후 24 시간 이내에 제출
- 현재 전체 수입 신고되는 화물의 90%정도가 해당

3) 과세가격의 신고

□ 신고대상

-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이 가격신고대상
- 예외물품
 - 총 수입가격 4 천 파운드 이하 수입물품
 - 이사물품, 개인용품 등 비상용물품
 - 과일, 채소 등 간이가격평가절차 적용 물품
 - 일반 과세가격 신고자가 수입하는 물품

□ 신고 시기

-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Valuation Declaration)를 작성 제출
-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격 신고제출약속(보증)서를 제출한 후 수입신고 후 14일 이내 사후제출 가능

□ 신고 방법

- 개별 과세가격신고 Valuation Declaration
 - 수입신고 되는 물품별로 가격신고를 하는 방법
 - 거래조건이 같은 동일물품을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른 경우도 1건으로 가격신고 가능
 - 가격신고서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에이전트가 작성 가능
- 일반 과세가격신고 General Valuation Statements
 - 동일 수출자 또는 거래조건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 과세가격신고 가능
 - 개별물품의 수입 시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
 - 일반 과세가격신고서는 수입자만 작성 가능
 - 일반 과세가격신고 유효기간 내에 거래조건 등 수입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거래조건 등을 세관에 신고 의무

4) 과세가격의 결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스스로 6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신고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 1방법 -> 제 6방법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 제 1방법 이후의 방법을 적용해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방법의 적용사유를 세관에서 요청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 1방법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실제 지불된 거래가격은 수입물품 자체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가감, 결정
 - 가산요소
 - 영국 내 도착 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선적료, 컨테이너 사용료, 터미널요금, 포장비용
 - 판매수수료(Selling Commission), 로열티, 수출자가 무상, 저가로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판매후수출자에게 지급될 판매이익
 - 공제요소
 - EU지역내의 운송비용, EU내에서 납부한 세금, 할인가격, 대출이자
 - 광고, 판매촉진, 제품보증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구매수수료 (Buying Commission), 수입 후 제품 유지관리를 위해 지불한 비용

○ 제 2 방법

- 동일한 시기에 EU 지역에 수입된 동일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
- 적용된 동일물품의 수입 시 신고된 세관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 제 3 방법

- 동일한 시기에 EU 지역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
- 수입물품이 제작된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업체가 제조한 물품으로 동일 공정에 의해 제작되고 호환이 가능한 물품의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 동일업체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 제조해 수입된 물품의 수입가격 이용 가능

○ 제 4 방법

-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EU 내에 수입판매된 가격 중 많이 판매된 가격 (Selling Price)을 기준
- 이미 수입 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이 통관 후 90 일 이내에 판매될 예정가격을 기준
 - 판매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담보(Deposit)를 제공하고 선통관 판매 후 실제 판매가격을 사후에 신고하여 정산
- 판매 예정가격 산출 시 공제 요소
 - 판매수수료, 이윤, 판매와 관련된 일반경비, 가공 후 판매된 경우 가공에 소요된 비용
 - 수입제세, 수입국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 운송관련 비용

○ 제 5 방법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비용(Costs of Production)을 기준
- 주로 수입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 지사간 거래, 현지법인과의 거래, 독점대리점 등과의 거래 등 특수관계자간(Related Persons)의 거래에 의한 수입물품에 적용
- 생산비용의 구성요소
 - 원재료 가격, 가공비용(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비용, 포장비용 포함), 판매 이윤 및 일반 경비
 - 제 5 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회계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제 6 방법

- 제 5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
- 제 5 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방법
- 제 6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된 증빙서류를 제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제 6 방법 외에 간이가격평가절차 (Simplified Procedure Values)를 적용)

○ 간이과세가격평가절차

- EU 지역 내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특정 판매센터에서 실제 판매된 과일 및 채소의 판매가격에서 판매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해 수입가격을 결정
- 세관에서 판매가격자료 등을 매 2 주 단위로 입수해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품목별 과세가격(100kg 당)을 컴퓨터로 자동 산출하며, 수입신고자가 세관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
-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며, 여러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일부품목에도 적용 가능

5) 관세 등의 납부

- 수입신고된 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
- 세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선 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관세사후 납부제도 이용 가능

□ 사후납부제도

○ 사후납부제도 이용가능 물품 등

- 수입물품 가액 2 천이하의 우편수입물품 이외의 모든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사후 납부제도 이용가능
- 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해 사후납부 가능
- 사후납부는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사후납부 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일부 금액에 대한 사후납부는 불가능
- 사후납부되는 관세 등이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Direct Debit) 가능한 경우에만 사후 납부 신청가능

○ 사후납부제도 이용신청

- 수입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에이전트가 신청 가능
- 에이전트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승인서 첨부
- 사후납부신청서와 사후납부보증서를 제출
- 세관이 사후납부 보증, 사후납부방법 등에 만족한 경우에는 사후납부를 승인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 승인서를 발급
- 동일 그룹에 속한 여러 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적으로 사후납부 신청 가능

○ 사후납부의 보증

- 관세 등의 사후납부를 보증하는 은행, 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
- 보증서에는 1 개월간 보증 가능한 보증한도를 명시
- 보증한도 내에서만 사후납부를 허용하고 보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추가 보증서를 제출
- 사후 납부승인된 관세 등을 사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미납된 관세 등을 징수

- 사후납부 방법
 -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부여 받은 사후납부 승인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해 사후 납부의사를 표시
 - 사후납부 승인된 관세 등은 다음 달 15 일(공휴일인 경우 16 일)에 은행계좌에서 자동 이체방식으로 징수
 - 물품세인 경우에는 다음달 28 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2 월은 28 일)에 자동 이체 방식으로 징수

나. 간이 수입통관절차(Simplified Import Procedure)

1) 사후 수입신고제도(Period Entry)

□ 사후 수입신고제도의 개요

-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주요 내역만을 신고해 통관한 후 사후에 수입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간이 수입통관제도
- 특별법에 의한 수입허가 또는 규제대상물품, 물품세 부과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이용가능

□ 이용가능 업체

- 동일 종류의 수입물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로서
- 세관 전산망과 연결가능하고 세관에서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관세 등 사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
- 사전에 신청서, 은행 등의 보증서, 자동이체요청서(Direct Debit Mandate)를 제출해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수입신고 절차

- 간이 수입신고
 - 수입신고 시기는 일반 수입신고절차와 동일
 - 수입자 또는 에이전트가 수입신고 가능하며, 수입신고서에 일부 내용을 기재해 송장, 가격신고서, 수입허가서를 첨부 제출
 - 동일선박 등으로 수입된 동일 수입자의 물품은 1건으로 신고 가능
- 통관관련 자료의 입력 및 사후 세관 제출
 - 통관관련 자료의 입력
 - 수입통관된 물품의 모든 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세번, 관세율, 물품가격, 수량 등과 보관·사용 등 재고관련 상세 정보를 자체 전산 시스템에 입력
 - 통관관련 자료의 사후 세관 제출
 -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통관관련자료를 매월 말 세관에 제출(EDI 방식 또는 디스크, 테이프로도 제출 가능)

- 수입관세 등의 납부 등
 - 수입신고 즉시 자동으로 수입 면허된 것으로 간주
 - 세관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물품검사 후 수입면허를 허용
 - 관세 등의 납부는 사후납부방식에 의해 수입자의 은행계좌에서 다음달 15 일에
 - 자동이체방식으로 징수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제출자료의 정확여부, 물품재고 등을 확인)

2) 내륙지 수입통관제도(Local Import Control)

- 수입물품을 내륙지의 수입자 창고에 보관해 통관하는 제도
- 간이수입신고에 의한 통관, 관세 등 사후납부절차 등은 사후수입 신고제도와 동일

□ 이용 대상

- 이용 가능업체: 수입물품은 컨테이너 또는 안전한 운송수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관세 등 사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세관 전산망과 연결가능하고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 확인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회계 및 장부 조직을 갖춘 업체 (내륙지 수입통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사전승인 필요)

○ 이용 대상물품

- 다음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이용 가능
 - 담배, 주류 등 물품세 부과대상 물품
 - 산 동물, 육류, 어류, 우유, 계란, 기타 동물성 생산품 등 공항만에서 동물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
 - 목재, 식물, 기타 식물성 생산품 등 병충해방지를 위한 방역과 식물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
 - 식품 및 식품재료

□ 내륙지 수입통관절차

- 사전 반입통지(Advance Notice of Arrival of Goods)
 - 수입물품이 내륙지의 수입업체 소유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관한 정보를 내륙지 세관에 통지
 -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입예정물품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사전통지
- 내륙지 보세운송(Community Transit)
 - 내륙지에서 통관할 물품이 공항만에 도착한 경우 공항만 세관에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을 신고 (EU 지역 국가에서 도착된 물품은 수출국 세관에 제출한 보세운송 신고서의 사본을 제출)
 - 내륙운송 시에는 수입물품의 운송 중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등에 봉인 또는 시건을 해야 함.
 - 보세운송신고가 세관에 접수된 후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확인(필요한 경우 물품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내륙지로 보세운송

○ 내륙지 창고 반입

- 내륙지의 수입업체 창고에 도착 즉시 자체적으로 물품의 파손, 도난여부 (봉인 등 확인)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에 즉시 보고
- 보세운송된 물품이 창고에 도착한 즉시 입고 가능 (세관의 물품확인,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도착 시 세관직원이 입회확인)
- 창고 입고 즉시 수입업체의 컴퓨터에 입고내역을 입력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도착된 물품이 창고입고 시 화물번호(세관에서 부여)와 입고일자를 자체 컴퓨터에 입력, 전송함으로써 자동신고(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직접 제출 하는 것도 가능)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수입허가서, 송장, 가격 신고서를 내륙지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
- 수입물품에 대한 상세내역은 사후수입신고방식과 동일

○ 수입면허 및 관세 등이 납부

- 전산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 즉시 수입면허된 것으로 간주 (물품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세관의 물품검사 후 수입면허)
- 관세 등의 납부는 사후납부방식에 의해 수입업체의 은행계좌에서 다음달 15 일 자동 이체방식으로 납부
-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업체와 창고를 방문해 컴퓨터 입력자료, 회계장부, 창고 입출고 내역 등을 사후조사

다. 수입보세가공 제도(Inward Processing Relief)

- EU 지역 내 가공무역의 지원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 외로 수출하는 경우
- 원자재 수입 시 관세(물품세, VAT 외)를 면제하거나 완제품 수출 후 관세를 환급 하는 제도
- EU 내에서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이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 수입보세가공 제도의 종류

○ 원자재 수입 시 관세의 징수유예

- EU 지역 이외의 국가로부터 보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 시 수출이행 기간까지 관세의 징수를 유예
- 징수 유예 받은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수판매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의 관세와 유예기간동안의 이자를 납부

○ 보세가공물품 수출 시 관세환급

- 원자재의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당해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 이행 기간 내에 수출한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 폐기를 한 경우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웨이스트, 스크랩 등은 관세환급 불가

28. 운송

□ 일반사항 - 공항 및 항구

가. 국제공항

- 런던 및 인근 지역에만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5 개 공항이 있으며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에버딘, 에딘버러 등 주요 지방도시에도 국제공항이 있다.
- Heathrow 공항의 경우 4 개 터미널이 있는 바 (터미널 5 신축 중), 공항 출영 송시에는 반드시 터미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히드로 공항은 사정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 터미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히드로 터미널 1,2,3 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 1,2,3 에서 터미널 4 까지는 자동차로 약 20 분이 소요된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지하철,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98 년 부터 공항-시내중심지인 패딩턴역까지 무정차 특급기차(히드로 익스프레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 분이다.
- 게트윅 공항에서도 빅토리아역간에 특급 전철 (게트윅 익스프레스) 및 AIR BUS 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스탠스테드 공항과 리버풀 스트리트 역을 잇는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도 운용 중이다.

나. 국제항구

- London, Tees and Hartlepool, Grimsby and Immingham, Sullom Voe, Milford Haven, Southampton, Liverpool, Forth, Felixstowe, Medway, Dover

29. 분쟁해결 절차

가. Codes of Practice

- The Enterprise Act 2002 에 의해 공정거래 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 (OFT)) 가 Codes of practice를 승인한다.
- The Consumer Codes Approval Scheme을 통해 각 부문의 사업 운영을 관리한다
- 영국정부는 Code of Practice에 대한 정책 시행에 있어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지지한다.

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chemes은 옴부즈만(ombudsmen) 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 보다 저비용의 재판 이외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 Cross Border Disputes

- 무역 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은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를 통해 법적 적용이 이루어진다.
- Whitehall에 위치한 The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가 PIL 과 관련된 사안을 주도하고 있다.
- The 1968 Brussels 협의를 통해 Cross border civil and commercial dispute와 관련된 재판권이 생성된 이후 지난 2000년 12월 Community Regulation로 대체되었다.
- 2003년 7월 22일, 유럽 집행 위원회가 제시한 “Rome II” 라 불리는 제안서를 통해 명예 훼손, 광고, 지적재산권, 제품의 신뢰성 등과 관련 된 무역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라. Contacts

- DTI Enquiry Unit
- Tel: 020 7215 5000
- Email: dti.enquiries@dti.gsi.gov.uk

30. 유형별 분쟁사례

- 최근 영국 내 특기할 만한 무역 분쟁 사례는 없음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영국에는 2만개가 넘는 외국 기업들이 2백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의 회사가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 년 영국의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FDI 실적은 작년 1650 억불(910 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한 해간 조성된 외국기업들의 영국회사 인수 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업체인 O2, 금융사인 Abbey National, 향만업체인 P&O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투자 열기로 인해 현재 세계 투자 유치 국가별 순위에서 영국이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1 위에 올랐으며 영국기업 인수는 새로운 투자목적이든 이러한 유래 없는 규모의 외국자본 유입은 그 간 한편에서 우려되어 온 자국의 유로화가입 실패로 인한 투자감소 우려를 말소시켜주었다.

국 별 영국투자기업 현황

국별	투자회사(단위: 개)
미국	14,393
독일	4,724
프랑스	4,262
네덜란드	3,818
아일랜드	1,985
스위스	1,944
일본	1,445
스웨덴	1,425
버뮤다	1,332
호주	1,218
캐나다	1,154
덴마크	930
이태리	877
벨기에	705
노르웨이	607
인도	406
말레이시아	187
중국	181
기타지역	5,202
전체	46,795

자료원: UK TI 2005 Annual Report

영국의 투자 유치 성공은 '글로벌 경제 허브'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완화된 해외기업의 기업인수 규제, 이민 증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어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2005 년 연간 한국은 영국에 총 20 건, 약 48 백만 불을 투자하여, 1962 년 이후 총 투자건수는 161 건, 1,908 백만 불 기록
- 2002 년 연간 총 9 건 투자 이후 2003 년도 2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4 년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회복세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 투자 기준

(단위: 건, US\$백만)

년 도	2002	2003	2004	2005	1968 ~2005
건 수	9	2	11	20	161
금 액	13	94	273	48	1,90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영국에는 2006 년 6 월 기준 활성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 개사, 도·소매업 39 개사, 서비스업 26 개사, 기타 11 개사 등 130 여 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 전자 등 가전 3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증권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 기업
-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 부문(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

33. 투자환경

가. 일반 환경

1) 교육 환경

□ 주재국 외국인학교

- 기부금 제도는 없으며, 입학 시 수수료 성격으로 75 파운드 (미\$ 120)를 징수함. (American School 기준)
- 영국에서 학교는 내국, 외국인 모두 Charity에 등록하고 세제 감면을 받음. 대체로 전액 감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건물 공사 시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
- 외국인학교는 주말학교와 매일 수업을 하는 정식 학교로 구분되며, 주말학교에 대해서는 1,000-2,000 파운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함.
- 그러나 정식 수업을 하는 외국인 학교는 Independent School (사립학교)로 분류하여 영국 정부의 지원은 없음.
- 영국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사립학교로 운영하는 수준이며,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일본계 학교 등이 있음.

2) 의료서비스

-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민의료보험인 NHS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간단한 (혈압, 소변) 검사 후 등록 가능함. 집 근처의 병원(GP)을 선택하여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됨.
- County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번역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 별도의 외국인을 위한 의료 정보 종합 안내 책자는 없으며 한국 사회 자체적으로 의료 및 학교 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지 생활 안내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3) 교통분야

- 상호 협상에 의해 운전 면허 교환을 허용함.
- 한국의 경우 2002년 9월 20일부로 한국에서 취득, 발급 받은 한국 운전 면허증을 영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함.
- 대중 교통 종합 안내 책자가 있어 지하철역이나 도서관 등 관공서마다 구비되어 되어 있으나 영어로 되어있어 특별히 외국인을 위한 것은 아님. 그러나 관광용으로 나온 것은 시중에서 해당 언어로 된 책자를 구입할 수도 있음.
- 언어 문제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 사용에 특별히 외국인이므로 겪는 어려움은 없음.

4) 출입국 분야

- 외국투자기업 임직원의 보통 체류 기간의 상한은 투자 금액, 국적에 상관없이 1년임. 외투기업의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불로 되어 있음.
- 비자처리기간은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5일 정도가 소요되며, 노동허가서 발급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됨.
- 외국인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비자는 D-7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 주재 활동에 관한 비자임. 또는 노동허가나 단독 연락 사무소 등임.
- 투자금액 및 국가별로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음.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
 - 노동허가 취득자로서 4년 이상 경과한 자
 - 사업이민자로서 4년 이상 경과한 자
 - 18세 이상의 학생비자로 10년 이상 경과한 자
 - 18세 미만의 학생비자로 7년 이상 체류한 자
 - 영국시민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1년이 경과한 자
 - 동반자녀로서 7년 이상 체류한 자
- 출입국 심사 시 외국인 투자가는 외국인 레인을 사용하며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국적에 따라 X-Ray 검사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함.
- 외국인 등록제도는 없으며 여권조회만으로 완료됨.

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규

1979 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포함)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됨.

즉,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 입에 대한 수지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음.

□ 무역 통계법의 주요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방법, 회신기간
- 회신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결과에 의회보고 관련사항
- 자문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조사에 따른 강제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다. 기업 환경

1) 외자에 대한 규제, 규제업종·금지업종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

영국에서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사업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기기, 의료·복지서비스, 도박장, 폐기물수송·브로커,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2) 出資比率 제한은 특별히 없다.

3) 외국기업의 토지소유 가부가능. 조건 등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 있어서 토지의 최종적인 토지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소유의 형태로서는, freehold 와 leasehold 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물건은 leasehold 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자치체 의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건축 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유치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도, 투자 촉진기관 - III 투자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 개발·건축규제에 대한 상세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Website: <http://www.odpm.gov.uk>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규제에 따라서 토지소유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소유의 절차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왕실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증서 작성비용, 인지세(구입시, 상세한 것은 아래에), 지방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 토지등록에 관한 상세

-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Tel: 0845 308 4545 (국내전용)
 - Tel: +44-(0)20-7917-8888
 - Email: enquiries.pic@landreg.gov.uk
 - Website: <http://www.landreg.gov.uk>
- 스코틀랜드: Registers of Scotland
 - Tel: +44-(0)131-479-3620
 - Fax: +44-(0)131-479-3688
 - Email: customer.relations@ros.gov.uk
 - Website: <http://www.ros.gov.uk>
- 北아일랜드: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Tel: +44-(0)2890-251700
 - Website: <http://www.ilrni.gov.uk>

투기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 60,000파운드까지 비과세
- 60,000파운드 ~ 250,000파운드 1%
- 250,000파운드 ~ 500,000파운드 3%
- 500,000파운드 이상 4%

또한, 비 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 자에게는, 통일사업 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되고, 점유물건의 임대료 해당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설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北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

- 잉글랜드 웨일즈 Website: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Website: <http://www.scotland.gov.uk>
- 北아일랜드 Website: <http://www.dfpni.gov.uk>

4) 자본금에 관한 규제

외자규제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 신청 등을 참조.

5) 기타 규제

□ 국산화율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율을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율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율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라. 외자에 관한 장려

□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1) 이노베이터즈·스킴(scheme)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起業家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 자금이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혁신을 영국에 미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起業 後の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노베이터로서 18개월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까지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 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 입국 후 최초 6개월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 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 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 주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 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 인격 : 업무 경험, 起業家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 · 자격(특히 기술계, 과학계, 비즈니스 계), 인격에 관한 추천장
- 사업 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면, 상업 면, 재정면에서 현실적인 것일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 사업 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 수, 사업 계획의 신규 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 & 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 스킴에 관한 상세

-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20-8604-3101
- Fax: +44-(0)20-8604-5933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비자에 관한 안내 리플렛 청구장소

- Visa Correspondence Section Ukvisas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2) 노동허가증 발급규제 완화

2000 년 10 월에 IT 관련산업이나 의료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주경제영역(EEA) 지역 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 의무」 페이지 참조.

- Work Permits (UK) Integrate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마. 외국인 취업규제 · 체류허가, 현지인 고용

1) 외국인 취업규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는 영국인 또는 EEA 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주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민이 아닌 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영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일반적인 문의)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한국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訪英하는 경우, 협의나 계약교섭, 트레이드 페어, 회의, 트레이닝 등으로의 출석 등 한정된 범위내의 商用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급 또는 무급의 노동, 영국 내에서의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공공으로의 제품 서비스의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입국 허가는 통상, 각 회 최장 6 개월의 관광 비자 또는 상용 비자가 입국 시에 부여되고, 유효 기간 내라면 영국으로의 출입국은 무제한이다. 정기적으로 商用으로 訪英하는 경우에는, 2 년 또는 5 년간 유효한 복수 회(複數回) 유효 비자도 있다.

- Ukvisas Visa Correspondence Section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전반)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 Email: visas.foruk@fco.gov.uk
 - Website: <http://www.ukvisas.gov.uk>

2) 체류허가

EEA 가맹국민이 아닌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 노동허가증

구주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민이 아닌 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영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Work Permits)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참조.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에서 재류허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과의 관계가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1)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2)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3)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노동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자

통상 아래의 노동자가 영국에 입국하는데, 노동허가증은 필요 없다. 단 노동허가증을 대신해서 입국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입국허가의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 국에 파견되어 있는 영국외무성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다.

영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가지지 않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의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단독대표자는 영국 외에서 채용된 종업원에 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우선 1년간의 재류허가가 부여되고, 통상은 그 후 3년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 영국의 기존 기업을 매수하는 자, 또는 영국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자를 포함.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사업설립을 위해 상당한 자기자금을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기업에 의해 풀 타임으로 고용이 행해지고, 기업은 최저 2명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미 영국에 在住하는 자만)
- 자영업의 경우, 영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 금으로써 최저 200,000파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것 등

3) 최근의 동향

정보기술(IT), 의료, 엔지니어링 분야 등 인원이 부족한 직종에서는 노동허가증의 발급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높은 수준의 技能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고도기능(高度技能)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현지인 고용의무: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영국인 또는 EEA 가맹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고용자는 대상의 직위에 대해서 거주노동자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노동허가증은 고용자가 신청, 내무성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가 발행한다. 유효 기간은 최고 5 년간. 또한 노동허가증은 체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시에 별도 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노동허가증은 통상 아래 4 가지의 기본 항목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 영국에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지 여부
- 업무에 필요한 기능, 자격, 경험은 무엇인가
- 발급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거주 노동자”(Resident Worker: EEA 가맹국의 국민 또는 1971년 입국 법에 의한 定住者) 가운데, 그 업무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노동자가 없는지 여부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제 1 종(Tier 1)과 제 2 종(Tier 2)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 1 종 신청은 간소화 신청절차로, 아래 4 가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이동하는 경우
- 임원 정도의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
-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를 동반하는 경우
- 인원이 부족한 직종(Shortage Occupations)의 경우

제 2 종 신청은 상기 제 1 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고, 신청은 제 1 종보다도 복잡하고 아래의 서류나 정보가 필요하다.

- 해당 노동자의 자격·경험의 증명
- 인원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채용 광고 등)에 대한 정보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소정의 양식·방법으로 우송 또는 E-mail 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5 년 이내에 한번도 노동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영국에 거점을 가진 기업인 것을 명시하는 서류(감사완료 회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

- Work Permits(UK) Integrated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일반적인 문의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Email: custmrel.workpermits@wpuk.gov.uk

○ 신청대상자가 영국 내에 체재중인 신청에 대해서

- Tel: +44-(0)114-259-4441
- Fax: +44-(0)114-259-3728
- Email: incountry-decision.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고도기능자(高度技能者) 이주 프로그램: 2002 년 1 월 28 일부터 높은 수준의 기능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高度技能 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 4 분야에서 레벨을 점수제로 자기 평가하여, 합계 75 점 이상의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학력, 실무경험, 과거의 수입, 전문분야에서의 달성업적)

신청은 현재의 거주지에 따라서 다르고, 영국 거주자인 경우는 Work Permit (UK) 앞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국의 영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또한 특정 기능이나 직종에 대해서, 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해 외국인의 영국이주·취업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 HSMP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 Team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1113
- Fax: +44-(0)114-259-1392
- Email: hsmp.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바.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79 년 10 월에 외국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자금, 해외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 달러 등 외국통화도 가능.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연합이나 구주연합의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사. 외환관리와 외화교환제도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 자유

기술·공업 및 지적재산권 공여에 관한 제도

1977 년 영국특허법, 구주특허조약 등. 특허는 20 년 유효. 디자인 보호는 5 년, 최장 25 년 까지 연장 가능. 음악(음성기록) 저작권은 50 년간 등

1) 특허

특허는 산업에 관련되는 아주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방법, 기능, 기술 등을 보호하는 권리로, 최고 20 년간 유효하다. 신청은 무료이고, 신청 후 12 개월간은 자동적으로 잠정적인 특허 보호가 부여된다. 특허권의 취득에는, 이 잠정보호 기간 중에 신청된 특허내용에 대한 기술 검사관 및 공공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허내용의 심사에는 200 파운드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특허권의 갱신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고,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신청 전에 신청예정 안건이 특허로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 특허조사자문서비스 (Search and Advisory Service)

- Tel: +44-(0)1633-811010
- Fax: +44-(0)1633-811020
- Email: commercialsearches@patent.gov.uk

2) 상표

상표의 대상은 언어, 로고마크, 기호, 形이나 色, 음악 등이고, 한번 등록하면 항구적으로 유효하지만, 10 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신청료는 1 종류에 대해서 200 파운드, 2 종류부터는 1 종류마다 50 파운드이다. 신청 후에는 변경이나 추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후, 검사관에 의한 조사가 시행되고, 인가되면 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이 부여된다. 신청 전에 해당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주 비슷하지 않은지, 또 인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료로 조사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자문서비스의 이용료는 70 파운드로 되어 있다.

○ 상표조사 및 자문서비스 (Search and Advisory Service)

- Tel: +44-(0)1633-811001

3) 디자인

디자인은 최장 25 년간 보호되고, 5 년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료는 섬유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35 파운드, 그 외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60 파운드이고,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그 외의 요금(갱신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저작권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은 문예(소설, 인스트럭션 매뉴얼, 컴퓨터 프로그램, 가요, 신문기사 등), 연극(댄스나 몸짓포함), 음악, 미술(회화, 사진, 조각, 건축, 지도 등), 출판물의 레이아웃, 테이프나 CD 등에 녹음된 음성,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등이고,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저작권은, 작품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 그 것을 보호한다.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과 달라, 공식적인 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신청서나 신청비용은 없다. 저작에는 심벌마크와 이름,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얻게 된다.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분야에 따라 다르고, 음악, 연극 등에 대해서는 저자의 사후 70 년, 영화에 대해서는 총감독, 각본가, 영화음악 작성자 등의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의 사후 70 년, 또 녹음기록, 방송프로그램 등은 50 년 등이다.

-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문의
 - Tel: +44-(0)20-7596-6513
 - Fax: +44-(0)20-7596-6526
 - Email: copyright@patent.gov.uk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

- The Patent Office The Central Enquiry Unit Concept House, Cardiff Road, Newport, South Wales NP108QQ UK
 - Tel: 08459-500-505 (국내전용)
 - Tel: +44-(0)1633-813930
 - Fax: +44-(0)1633-813600
 - Email: enquiries@patent.gov.uk
 - Website: <http://www.patent.gov.uk>

아.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별한 인허가 절차 없음. 내국 기업에 준하여 자유로이 투자
 - 다만, 롤스로이스나 BAE 시스템 같은 전략물자 취급업체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인당 전체지분의 15% 지분 소유 금지
 - 방송미디어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획득 필요
 - 영국 은행지분의 10% 이상 초과 구매 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신고의무 발생
-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절차 · 필요서류
 - 기본정관, 부속정관, 선언서, 회사설립증명서 등이 필요.
 - 영국에서의 회사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르다.

34. 투자인센티브

가. 일반적인 인센티브

1) 선택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로 분류)을 설정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광 기술의 파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 파운드를 무상현금형태로 분할 지급 (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100,000 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함.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석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됨.
- 보조금 교부절차는 통산부 담당부서, 각 지역별 정부사무소, Business Link 등을 통해 신청양식인 RSA1을 지역별 정부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됨.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심사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함.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2) 지역선별 보조금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 RSA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유럽 공동체 법(지원 대상 지역: Assisted Area)에 의해 지역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
-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현금보조로 자본투자비용,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20% 형태로 제공됨.
- 자본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어지는 처음 2년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됨.
- Website: 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uk

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1) 개 요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음.

2)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 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건설 경비 세금면제
 -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부여

다. 연구 및 개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1) EUREKA

- 개 요
 - 유럽 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함)
 - DTI 가 50%까지의 경비를 부담
 - 인센티브의 내용
 -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지원
- Website: <http://www.eureka.be/contacts/fundingList.do>

2) LINK 제도 (Link Collaborative Research Scheme)

- 개 요
 -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대상 :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5개의 주 카테고리 분류)
 - Electronics/Communications/IT
 - Food/Agriculture
 - Bioscience/Medical
 - Materials/Chemical
 - Energy/Engineering
- 지원규모: 총 프로젝트 소요경비의 50% 한도
- 기업수혜 요건: 영국 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 (영국기업 또는 영국 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 Website: <http://www.ost.gov.uk/link/funding.html>

3) UK Foresight 제도

- 개 요
 -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대 상: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
- Website: <http://www.foresight.gov.uk/>

4) EU Fifth Framework Programme for R&D

- 개 요
 -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EU 회원국 회사 또는 EEA 회원국 국적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영국 내 투자기업 포함)
- 지원조건
 - 연구결과와 유용성 즉 연구결과와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일 것
 - 기술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지원범위: 공동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

5) SMART

- 개요
 - 영국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범위
 - 기술평가 (Technical Review) 지원
 -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2,500파운드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술사용에 대한 Best Practice에 보조됨 (Toward to a best practice review of technology usage).
 - 기술연구 (Technology Studies) 지원
 - 혁신적인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기회 (to help identify technological opportunities leading to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 의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것으로 5,000파운드까지 보조됨.
 - 마이크로 프로젝트 (Micro Projects) 지원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2,500 파운드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을 지닌 Low-cost 제품의 원형이나 프로세스의 개발(Developing low-cost prototypes of products and process involving technical advance and/or novelty)에 보조됨.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연구 (Research Projects) 지원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총비용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후(Undertaking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y studies into innovative projects)에 보조됨.
 - 개발 프로젝트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지급금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중대한 과학적 진보성을 지닌 신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전-생산 원형의 개발에 보조됨. (Undertaking development up to pre-production prototype stage of a new product and process invol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
 - 특별 개발 프로젝트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지원금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고비용 프로젝트에 보조됨. (Exceptional high-cost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rategic significance)

라. EU로부터의 금융지원

- 1) EU 금융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ropean Commission이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4가지 구조적 기금 (Structural Fund)의 형태를 가지게 됨.

2) 보조금 종류

-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 European Social Fund (ES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마.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함. 주로 Grants(보조금), 저리의 자금대출, 지급보증, 투자기업에 자본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1)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 의 9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 관할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 지역인 Yorkshire and the Humber와 North East의 대부분 지역을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중소기업에 한함)로 지정해 보조금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함.

□ Yorkshire and the Humber 지역: 관할기관 Yorkshire Forward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실업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함(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광 기술의 파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 파운드를 무상현금형태로 분할 지급 (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100,000 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함.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함.
-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함.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 Northeast England 지역
 - 관할기관: One North Ea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이전의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와 EG(Enterprise Grants)가 통합된 형태로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 현대화 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성, 기술, 고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촉진키 위함임.
 - 생산성, 기술향상,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형태로 분할 지급되며, 보조금은 영국에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이 상향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 Micro Projects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총 예산이 2,5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Research Projects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금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금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기타 투자 인센티브

- NESTA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 재산권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NESTA에서 조사, 개발, 실험을 지원. 지원금은 개인당 65,000 파운드까지 가능함.

- 전담부서명: NESTA
 - Fishmongers' Chambers
 - 110 Upper Thames Street, London
 - EC4R 3TW
 - Tel: 020 7645 9500
 - Email: nesta@nesta.org.uk
 - Website: www.nesta.org.uk

○ Cultural Business Venture

- 영국에서 가능한 문화산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Prince's Trust 와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 25명 미만의 종업원을 갖추고 있는 신설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자문이 필요함.
- 보조금은 1,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단계에서 24%의 매치펀드 근거제시 필요함.

- 전담부서명: Cultural Business Venture
 - Arts Council England, North East
 - Central SquareForth Street
 - Newcastle upon Tyne NE1 3PJ
 - Tel: 0191 2558500
 - Fax: 0191 2301020
 - Email: northeast@artscouncil.org.uk
 - Website: www.artscouncil.org.uk

○ Carbon Trust Grants

- 산업/공적 분야에 산업적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온라인 지원이 가능함.

- 전담부서명: Barrie Brass
 - Regional Manager
 - Carbon Trust
 - One NorthEast, Stella House
 - Goldcrest Way, Newburn Riverside
 - Newcastle/Tyne, NE15 8NY
 - Tel: 0191 229 6200
 - Email: barrie.brass@thecarbontrust.co.uk
 - Web: www.thecarbontrust.co.uk/foundation_

2)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Invest Northern Ireland (Invest NI)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 (Cash Grants)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 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부상지원
 - 동 보조금은 타 지역과는 달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세금이 면제됨.
- 창업초기 인건비 보조(Start-up Costs, Employment Grants)
 - 북아일랜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고용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규모는 창업기간 동안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짐.
 -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 규모를 Invest NI 측에 보장하는 경우 3년 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투자 또는 운전자본으로 전환사용이 가능함.
- 이자감면 (Interest Relief Grants)
 - 비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금리보조
 - 최초 3년간은 상업금융기관 금리, 이후 4년간은 3%의 금리를 보조
- 공장임대료 보조 (Factory Rents)
 - 공장 임대 시 임대료의 10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Rent Grants)
- 시장 개척 비 보조 (Marketing Development Grants, 40/60 Scheme)
 - 설립 후 최초 3년까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최대 60,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보조

□ 세제지원

- 기계, 설비,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Invest NI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최대 45%까지 포함)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연 25%,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연 4%의 감가상각을 허용
-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100%를 감면

□ 금융지원

-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하여 줌. 동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등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함.
-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 가 직접 주식투자의 형태로 참여

□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nvest NI 의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 청 (Training & Employment Agency)을 설립, 북 아일랜드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교육훈련 비용 (교육기간 중 임금, 교육비용, 여행비 포함)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연구개발비 지원

- 시장지향적인 제품 및 제조공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획단계 (Project Definition Phase)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15,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발단계 (Project Development Phase)에서는 최대 40%까지 (10% 추가 지원 가능: Green Bonus) 250,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Website: <http://www.investni.com>

3) 웨일즈 지역 투자인센티브

- 관할기관: Wales Development Agency (WDA)

□ 인센티브 제공

- 외국 기업이 투자 타당성 조사 단계 에서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패키지형태로 지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TAX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세제지원

- 소득세(Personal Tax)
 -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처음 세 전 이익이 US\$3,000 1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일 경우 22% 소득세를 부과함. 또한 지방 소득세는 없음.
- 법인세 (Corporate Tax)
 - 법인세 역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배당 소득,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없음. 환전 및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부가가치세 (VAT)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17.5%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료 및 전기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이러한 비율은 제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되며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
 - UK 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그 밖의 주요 인센티브

- 교육훈련 인센티브
 - 종업원의 채용,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지원범위는 개별 계약에 의함)
 - 종업원의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공장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지원 (공장부지까지의 전력선, 진입로, 상수도 등 관련 시설 건설지원)

※ 관련 웹사이트: <http://www.locate-in-wales.com>

4)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지원 대상 지역(Assisted Area)에 지대 및 건물 임대료, 공장 및 기계,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 등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이 지급
 - 보조금의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예상 자본 경비의 10~20% 수준임. 그리고 이 보조금은 창출되는 일자리 한 개당 5000~10,000파운드에서 조정됨.
- SMART
 - 두 단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첫 단계는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개인과 소기업들이 6~1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 4만 5천 파운드 내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함.
 -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생산 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35%를 지원. 두 단계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15만 파운드이며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함.
- SPUR
 -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발전을 동반하는 신제품 생산이나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비용의 규모가 최소 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을 지원함.
 - 통신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고가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최소 1백 파운드 이상이면 SPUR plus 대상기업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단, 이 때 지원대상 대상 기업은 방위산업을 제외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지원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매출이 약 2,500만 파운드 이하이면서 대기업이 자본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 수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100~150%까지 세금을 면제
 - 수익을 내지 않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 100 파운드마다 24 파운드의 현금으로 지원
 - 대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 조건을 만족하는 R&D 비용에 대해 첫 해 100% 세금 공제와 25% 추가 세금 공제

- 부동산, 인프라관련 인센티브
 - 스코틀랜드 내 개발촉진지구, 중간지구내의 공장부지 사무실부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성, 개발, 구입지원
 - 공장부지에 대한 상수도, 가스관, 전력선, 진입로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 (설비건설지원 또는 무상건설지원)
 - 스코틀랜드 내의 도심지 입주업체를 위한 사무 공간, 건물구입정보 제공 및 구입 지원
- 종업원 고용 및 훈련관련 인센티브
 - 미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보조금 지원
 - 종업원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Website: <http://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35. 타당성조사

□ 주요체크포인트

영국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는 영국 내국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별한 제한내용 없음.

가. 내국법인에 준거한 투자 체크포인트

- Green Field 투자 시 입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전체 토지 개발계획 사전 검토
- 환경관련 규제: EU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 지며, 예를 들어 배기가스 관련규제 조항, 에너지 세 등의 존재, 폐기물 관련 규정 (EU's Integrat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검토
- 제조업 부품 등의 현지 조달이 DTI(상무성)에 의해 투자인센티브 협상 시 암묵적으로 권유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전 검토
- 회사형태의 결정: Partnership, branch, private limited company, public limited company 등 투자업종에 맞는 투자기업 형태 결정

나. 외자에 관한 장려 책

1) 장려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 이노베이터즈 · 스킴(scheme)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자금이나 투자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혁신을 영국에 미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기업 후의 운영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노베이터로서 18개월간의 체재허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간까지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4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영국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 입국 후 최초 6개월간은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 인격 : 업무경험, 기업가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자격(특히 기술계, 과학계, 비즈니스계), 인격에 관한 추천장
 - 사업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면, 상업면, 재정면에서 현실적인 것일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 사업계획(영국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고용 수, 사업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 & 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 스킴에 관한 상세 : Business Case Unit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 18th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20-8604-3101
 - Fax: +44-(0)20-8604-5933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비자에 관한 안내 리플렛 청구장소 : Visa Correspondence Section
- UKvisas
 -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3) 노동허가증 발급규제 완화

2000년 10월에 IT관련산업이나 의료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주경제영역(EEA) 지역 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상세 : Work Permits (UK)
 - Integrate Casework Directorate, North
 -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영국에서의 회사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진출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라이선스 계약 (License Agreement)
- 주재원사무소 (Correspondent Office)
- 지점 (Branch)
- 자회사 (Subsidiary)
- 개인 사업주 (Single Trader)
- 합작 투자 (Joint Venture)
- 매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

실제 회사 등기 등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은, 진출 형태나 대기업인지 중소 사무소인지 등에 따라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다르다.

영국을 비롯해서 구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컨설턴트와의 비즈니스상 교제는 불가결하고, 그 때문에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서울 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611/3
 - Fax: 02-728-2797
 - Email investuk@britain.or.kr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정부 투자 국(Invest-UK)
 - 주소: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UK
 - Tel: +44-(0)20-7215-2501
 - Fax: +44-(0)20-7215-5651
 - Email: invest.uk@dti.gsi.gov.uk
 - Website: <http://www.invest.uk.com>
- Companies House
 - 주소: Crown Way, Cardiff CF14 3UZ, UK
 - Tel: +44-(0)29-2038-0011
 - Fax: +44-(0)29-2038-0149
 - Website: <http://www.companieshouse.co.uk>

투자비용

영국 (런던)			
		미 달러	현지 통화(英 파운드)
임금	1. Worker(일반 공직)	2,010.40(월급)	1,242.83(월급)
	2. 엔지니어(중견 기술자)	4,366.31(월급)	2,699.25(월급)
	3. 중간 관리직(부과장 Class)	5,226.60(월급)	3,231.08(월급)
	4. 법정 최저 임금	18 ~ 21 세 : 8.5/시간 22 세이상 : 10.2/시간	18 ~ 21 세 : 4.45/시간 22 세이상 : 5.35/시간
	5. 상여지급액(고정상여+변동상여)	일반적인 지급를 없음	일반적인 지급를 없음
	6. 사회보장 부담률	고용자: 11.8%(전체 국민 보험) 피고용자: 10%	
	7. 명목 임금 상승률(%)	3.0→4.4→N.A.(2000년→2001년 →2002년)	
지가·사무소 임대료등	8. 공업단지(토지) 구입 가격(평방미터 당)	159.88	98.84
	9. 공업단지 임대료(月額) (평방미터 당)	11.32 ~ 14.38	7.00 ~ 8.89
	10. 사무소 임대료(月額) (평방미터 당)	107.38	66.38
	11. 주재원용 주택차용료(月額)	3,154.32	1,950.00
통신비	12. 전화가설료	188.18	116.33
	13. 전화기본요금(月額)	월 기본요금 : 26.08 1분당 통화요금: 0.054	월 기본요금 : 16.12 1분당 통화요금: 0.0336
	14. 국제통화요금(한국에 3분간)	주간 : 3.27, 야간 : 2.78, 주말: 2.64	주간 : 2.02, 야간 : 1.72, 주말 : 1.63

	15. 휴대전화 가입료	57.02	35.25
	16. 휴대전화 기본통화료	22.63	13.99
	17. 인터넷 접속요금(전화회선)	21.84	13.50
	18. 인터넷 접속요금(브로드밴드)	313.62	193.88
공공요금	19. 업무용 전기요금(KWh 당)	0.122 ~ 0.124, 월 기본요금 : 9.80 ~ 11.60	0.076 ~ 0.077, 월 기본요금 : 6.06 ~ 7.17
	20. 일반용 전기요금(KWh 당)	월 기본요금 : 없음 1kwh 당 요금 : 0.1679	월 기본요금 : 없음 1kwh 당 요금 : 0.1038
	21. 업무용 수도요금 (입방미터 당)	상수도 : 0.7346 하수도 : 0.5498	상수도 : 0.4541 하수도 : 0.3399
	22. 일반용 수도요금 (입방미터 당)	상수도 : 1.01 하수도 : 0.70 월 기본요금 : 7.28	상수도 : 0.62 하수도 : 0.43 월 기본요금 : 4.50
	23. 업무용 가스요금 (입방미터 당)	N.A.	N.A.
	24. 일반용 가스요금 (입방미터 당)	0.036, 월 기본요금 : 없음	0.0222, 월 기본요금 : 없음
자동차	25. 승용차 구입가격 (1500cc 세단)	21,991.26	13,595.00
	26. 대형차 구입가격 (2500cc 이상의 세단)	35,587.19	22,000.00
	27. Regular 가솔린 가격(1 리터)	1.24	0.769
환율	28. 현지통화 대 달러 비율 (1 달러)	0.6182 英 파운드	
세제	29. 법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이 1 만 파운드 이하는 0%, 1 만 ~ 5 만 파운드까지는, 係數를 19/400 로 한 한계경감세율이, 5 만 1 ~ 30 만 파운드는 19%, 30 만 1 ~ 150 만 파운드에는 係數 11/400 로 한 한계경감세율이, 150 만 파운드 이상에는 기준 비율의 30%가 적용 된다.	
	30.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 가운데, 처음 1,920 파운드까지 10%, 1,921 ~ 27,980 파운드는 22%,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40% 과세되어, 이들을 積算한 것이 소득세가 된다.	
	31. 부가가치세(%)	17.5	
	32. 일본으로의 이자송금과세(%)	10	
	33. 일본으로의 배당송금과세(%)	10(2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경우), 15(기타)	
	34. 일본으로의 료열티 송금과세(%)	10	
투자 인센티브	35. 투자우대조치	N.A.	

□ 출처 및 注

- 국민통계국 Labour Market New Earnings Survey 2002
- 국민통계국 Labour Market New Earnings Survey 2002(Process and production engineers)
- 국민통계국 Labour Market New Earnings Survey 2002 (Production, works and maintenance managers)
- 무역산업성 (2002년 10월)
- 内國歳廳(기준 비율)
- 국민통계국 Labour Market Trends(2002년 12월)
- 공업단지 소재지 : Milton Keynes, 税, 諸 경비의 내역은 N.A.
- 소재지 : 상동, 토지임차료 : 4.49 → 6.2, Council Tax 등
제경비 : 2.24, 보험 : 0.27 → 0.45(파운드/평방미터)
- London(City), 税, 제경비의 내역은 N.A., 출처 : DTZ Research Global Office Occupancy Cost Survey 2003
- 런던(Hampstead), 침실2의 아파트, 출처 : Knight Frank (London Lettings Review)
- BT 비즈니스를 위한 요금 (VAT포함)
- BT 비즈니스를 위한 요금 (VAT포함) 1분당 통화요금은 런던市内
- BT 비즈니스를 위한 요금 (VAT포함)
- Vodafone社の 비즈니스를 위한 요금(VAT포함)
- Vodafone社の 비즈니스를 위한 요금(VAT포함)
- Netscalibur Dial (56Kbps) (VAT포함)
- Netscalibur ADSL (2 Mb) (VAT포함)
- 납부방법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1개월 = 30일로 계산).
- 출처 : London Electricity(VAT별도)
- 3개월 사용량이 225Unit미만의 요금. 그 이상은 0.0638파운드. London Electricity (VAT별도)
- 1입방미터당 요금, 연간사용량 등으로 단가가 다르다. 출처 : Thames Water(VAT별도)
- 파이프직경 15mm이하인 경우의 요금. 파이프직경에 따라 기본요금이 다르다.
출처:상동
- 3개월 사용량이 1,143Unit미만인 경우. 그 이상은 0.023파운드. London Electricity (VAT별도)
- 복스홀(Astra Elegance) 1600cc, 차량가격 10,970.21파운드, VAT1,919.79파운드, 諸경비 705 파운드
- 재규어(X-type) 2500cc V6, 차량가격 18,123.40파운드, VAT3,171.60파운드, 諸경비 705 파운드
- 셀프서비스 가격
- 2003년 1월 17일부 인터뱅크 레이트
- 國稅, 17.5%가 표준세율. 이 외에 5%, 0%가 있다.
- 출처 : INCOME TAX The Double Taxation Relief(Taxes on Income)(Japan) Order 1970 Article 12 (2)
- 출처 : INCOME TAX The Double Taxation Relief(Taxes on Income)(Japan) Order 1970 Article 11 (2)
- 출처 : INCOME TAX The Double Taxation Relief(Taxes on Income)(Japan) Order 1970 Article 13 (2)

나. 투자방식 개요

외국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로는 크게 i)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ii)새로운 영국회사(비공개/공개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1) 사무소(영업장, Place of Business)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규정 (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자료 처리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등기로 (Register)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 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 이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함.)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 (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691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일자 법적 공고

□ 사무소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 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 본사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 개월이다.
- 신고내용 변동
 - 등록 후 신고내용 변동 시 소정의 서식으로 변동사실을 영국 등기소에 신고

2) 지점(Branch) 등록

-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
- 지점은 외국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 1 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
- 지점을 설립한 외국회사는 지점 개설 후 1 개월 이내에 서식 BRI 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비용은 20 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번역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등록번호를 서식 BRI 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회사 현황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증된 영문판 문서와 더불어)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국가, 설립국가에서의 법인등록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 3 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기관인지의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회사는 추가로 아래사항을 신고해야 함.
 - 회사의 설립근거 법
 - 설립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금액
 - 본사의 회계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기한
 -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범위(즉, 위임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대표인 경우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보고서 작성, 회계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
 - 지점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보고서 사본을 번역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
 - 사무소 관련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등기소에 회계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보고서는 등록비 15 파운드와 함께 제출
- 등록사항 변경: 변경 후 21일 내에 변경 신고

라. 새로운 영국회사설립

□ 영국의 회사종류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 칙허회사(Chartered corporation)
- 무한회사(unlimited companies)
- 보증부 유한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비공개주식회사
 -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양식은 회사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 파운드이다. (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 파운드)
 - 회사설립 시 (모든) 자본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정관 사본 (이때 자본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없음)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
 - (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 법 1985 에서 규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 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을 발급함. 회사설립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회사설립 후 신고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 년 4. 1 일 이후 설립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설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 데, 이 때는 서식 225 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 일이 소요 되나 100 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 명 변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이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회사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 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은행 및 회계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후의 보고의무
 - 회계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 (registrar) 에 제출
 - 연차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 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 제출수수료 £ 15.
 - 연차주주총회 개최: 매년 1 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해야 함.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설립
 - 비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 는 자금 조달방법으로 주식공모가 가능하다.
 - PLC 는 비공개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주식 회사로 설립 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 회사로 설립한 후 PLC 로 전환 것은 처음부터 PLC 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 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않으면서도 PLC 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 PLC 설립방법은 비공개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 로 명기해야 한다.
 - PLC 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 로 끝나야 한다.
 - PLC 는 최저 2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최저 1 명의 이사
 - PLC 의 수권자본금은 £50,000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1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자본금 제한 없음.
 - PLC 의 발행주식 총액은 수권자본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 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PLC 가 최저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 조가 규정한 설립인가증이 회사등기소 (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동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행위가 금지된다.

37. 입지선정

가. 입지 선정

영국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특정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선택보조금을 받고 Greenfield 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투자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지역을 Industrial Estate(공장지), 또는 Industrial Park(공업지), Business Park(사업장) 등으로 지정, 기업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선택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제도를 통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RSA 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부지구입, 공장건축비, 설비투자비 등 공장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선택보조금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단지와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공단은 없으나 RSA 수혜가능 지역별로 20 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 스코틀랜드 37, 웨일즈 21, 북 잉글랜드 59 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기업은 모두 영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 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 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전체의 1 년 예산은 05/06 년 기준 21 억 6 천만 파운드 규모이다.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투자청(UKTI)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RDA)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지역의 경우 이미 16 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숙련된 인적 자원 확보의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주요 기업 단지

영국 내에서 기업단지(Enterprise Zones)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 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 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지난 2005 년 말까지 특혜가 남아 있던 기업단지(Enterprise Zones)는 Dearne Vally (2005 년 11 월 만료), East Durham(2005 년 11 월 만료), East Midlands(2005 년 11 월 만료), Tyne Riverside 4 개 단지였으며 이 중 Tyne Riverside 만이 아직 그 특혜가 유효하나 이도 올 해 2 월, 8 월 10 월을 끝으로 지역에 따라 만료 될 예정이다.

기업 단지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기업세나 법인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산업/상업용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100% 환세를 받을 수 있다.

다.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 (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38. 공장설립

공장설립법과 같은 단일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진출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투자 사안에 비추어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체계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내외국인 투자 촉진 취지는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각 지역개발청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개발청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력확보, 공장가동까지 turn-key base 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가장 모범적인 투자유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 북아일랜드의 경우 > 원칙적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제출서류나 승인절차가 없으며, 투자계획서 및 최근 3 개년간 재무제표, 투자금액, 공장부지 면적, 기계설치, 신규 고용계획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단지 지원을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1988 년 북아일랜드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D 전자의 경우 북아일랜드 개발청(IDB)에 투자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역선택보조금 신청절차 및 IDB 공장 건설 팀과의 공장설립계획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IDB 공장건설 팀은 투자기업으로부터 공장설계도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6-8 개월 내에 부지조성에서 생산라인 설치까지의 전공정을 TURN-KEY BASE 로 완성, 투자기업에 공장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따라서 투자희망기업은 충분한 영국 시장 타당성 조사후 각 지역개발청을 접촉, 투자 인센티브 및 개발청의 지원범위 등을 확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영국은 해외공관-중앙정부(UK Trade & Investment)-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각 지역별로 12 개의 투자

유치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지역 상호간 치열한 경쟁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체계로 운영

가. 해외조직

43 개 해외 공관 내에 UK Trade & Investment 사무소가 설치되어 약 130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각국 주재 영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상무관실에서 동 업무를 담당함.

나. 중앙정부 조직, UK Trade & Investment

1) 조직 구성

- 직제상으로는 영국 통산부 (DTI)소속의 국이나 인원은 외무성의 직원들과 함께 7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외무성과 통산성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음.
- 투자 유치 조직인 Invest UK 와 무역진흥기구인 Trade Partners UK 는 대외무역청 (British Trade International) 산하 조직으로 그 동안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03 10.27 부로 명칭을 통합하여 UK Trade & Investment 로 개칭
- UK Trade & Investment 는 지역 편제에서 산업 편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아태, 중동/아프리카, 유럽, 미주지역으로 대별되는 지역별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산업 분야별 조직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2) UK Trade & Investment 의 주요기능

- 영국 투자조사단 초청 및 안내
 - 영국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였거나 유치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각국 기업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영국전역에 대한 투자안내 브리핑은 물론 각 지역별 투자최적지에 대한 안내, 자료제공 등으로 참가업체들이 영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홍보 활동을 수행함.
 - 참가업체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여행경비의 일체의 경비를 UK Trade & Investment 가 부담(지방에서의 숙박 및 체재비는 지역개발공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에서 부담)하며 각 지역별 투자유치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 행사를 실시함.
- 투자최적지 안내
 - 영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각 지역별 가용인력수준, 주변산업 여건, 용수공급, 원자재조달, 주력시장과의 근접도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투자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최적지를 선정토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투자에 따른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 영국 내 회사설립방식, 설립방법, 절차 등 회사설립에 관한 정보제공
 - 공장부지선정, 공장건축회사를 알선, 실제 생산라인가동, 원부자재 구입 등 생산시설이 가동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및 각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 교육, 훈련 등 투자인센티브 안내
 -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GRANT, 교육훈련 보조금 등은 물론 각 지방별 투자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에 대한 안내 서비스제공
-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접촉 알선
 -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전반적인 법률문제해결을 위해 소관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접촉을 주선
 - 부품공급업체, 용수, 전력 공급 업체 등을 알선
- 기타 해외투자유치 활동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외국인투자가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다. 지방조직

본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지방조직은 없으나 DTI 지방 사무소 및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개발청이 UK Trade & Investment 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에는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독립 Agency(지방정부 기관이면서 기능 및 운영은 민간조직과 동일)가 12 개가 설치되어 UK Trade & Investment 및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상호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England 지역
 - Greater London: London First Center
 - South East: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 South West: South West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ast of England: East of England Investment Agency
 - East Midlands: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West Midlands: We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North West: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 Yorkshire and the Humber: Yorkshire Forward
 - North East: One North East
- Wales 지역: Welsh Development Agency WDA)
- Scotland 지역: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Northern Ireland 지역: Invest Northern Ireland

라. 기타

1)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 (UK)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2)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 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 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 Home Office
 -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020 7804 6763
 - Website: 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
 - KPMG LLP
 - 38Floor, Canary Wharf, One Canada Square, London EC14 5AG
 - Tel: 020 7311 6404
 - Fax: 020 7311 4121
 - Website: www.kworld.kpmg.com
 - Email: sangmin.nam@kpmg.co.uk
- 한영 회계법인
 - ERNEST & YOUNG KOREAN DESK
 -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Tel: 020 7951 0707
 - Fax: 020 7951 9305
 - Website: www.ey.com/uk
 - Email: kbang@uk.ey.com

- RICHARDS BUTLER
 - Beaufort House, 15 St. Botolph Street, London EC3A 7EE
 - Tel: 020 7247 6555
 - Fax: 020 7247 5091
 - Website: www.richardsbutler.com
 - Email: law@richardsbutler.com
- STEPHENSON HARWOOD
 - One St. Paul's Churchyard, London EC4M 8SH
 - Tel: 020 7329 4422
 - Fax: 020 7329 7100
 - Website: www.shlegal.com
- ㈜ 우리 엔터프라이즈 (영국이민국 공인 컨설턴트)
 - Woori Enterprise LTD
 - Suite 24 Fitzroy House, Lynwood Drive, Worcester Park, Surrey KT4 7AT
 - Tel: 020 8337 4994
 - Fax: 020 8337 9449
 - Website: www.woori-enterprise.com
 - Email: info@woori-enterprise.com

41. 노무관리

가. 노동여건

1) 개요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우는 전문업체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고용계약

□ 고용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가장 일반적인 고용조건으로는 의료진단(medical examination), 동인의 영국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사본, 노동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음.

□ 고용주의 고용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의무가 있음.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함.

- 고용개시일
- 급여액, 급여계산방법, 급여지급일
- 근로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주요 업무
- 근무지
- 징계정책 및 불만사항 처리방법

상기 고용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음.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종업원의 법적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러한 최소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됨.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고용만료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계약만료 통지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기간은 2 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 주씩 증가(최고 12 주까지)함. 즉,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만료 통지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4 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최저급여(minimum wage): 1999. 4. 1 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3 년 10 월 1 일부로 조정된 최저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2 세 이상 종업원: 시간당 £5.35
 - 18 ~ 21 세 종업원: 시간당 £4.45
 - 16 ~ 17 세 종업원: 시간당 £3.30

□ 명시조항(express terms)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의 고용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명시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서화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음. 명시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음.

- 비밀유지조항: 종업원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경쟁금지(non-competition) 조항: 종업원은 고용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됨.
- 지적재산권 조항: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

□ 묵시조항(implied terms)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조항 중 대표적인 것임.

□ 위임조항(incorporated terms)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음.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임. 위임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수준, 유급휴가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음.

3) 고용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고용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임.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됨.

-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고용 계약서상 고용기간의 종료
- 고용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
- 종업원의 자발적인 시작
-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해고
 - 종업원이 고용계약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에 따라 통지 기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 가짐.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부당해고
 -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정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음.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사회보장제도

1) 개요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국민보험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를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 세 이상 남자, 60 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 주기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소 52 주간의 면제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의무가 없다.

42. 조세제도

가. 개요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당해연도 세출규모 결정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며 국세청(Inland Revenue)가 소득세, 자본소득세, 인지세 등을, 관세청(HM Customs & Excise)가 VAT, 기타 관세, 사회보장세 등, 교통환경부가 도로 관련세 징수 행정을 맡고 있다. 영국 정부 주요 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세제

-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산 매각 소득세
 - 석유세(PRT)

- 거래에 관한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및 물품세
 - 보험료세
 - 항공 통행세
 - 인지세
 - 상속세
- 재산에 관한 조세
 - 단일 영업세율
- 항공 통행세
 - 영국 공항에서의 여행에 대한 물품세
 - 영국과 EU 회원국내 기착지의 경우 승객당 5 파운드
 - 기타 지역이 기착지인 경우 10 파운드
- 기타 조세
 - COUNCIL TAX
 - 사회보장세

2) 소득세(Income Tax)

- 과세연도: 매년 4. 6 ~ 익년 4. 5 일
- 과세대상: 영국내 소득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제도와 소득신고
 - 원천징수(PAYE):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 근로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종합소득신고: 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투자소득이 있는 자, 해외파견 주재원 등은 종합소득세신고서(SA 100)을 작성. 제출함.
- 근로소득세율
 - 근로소득액에 따라 각각 아래 3 단계로 세율이 적용, 종합 산출됨
 - Starting rate(Lower Rate) : 10%. 최초 소득 1,920 파운드에 한해 적용
 - Basic Rate : 22%. £1,920 초과 ~ £29,900 미만 소득에 대해 적용
 - Higher Rate : 40%. £45,385 이상 소득에 대해 적용
- 세금경감혜택
 - 각종 개인공제, 주택구입 대출금, 고령자에 대해선 일정 한도까지 세금 공제

3)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신고
 - 회사가 영국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

-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음.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체결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
- 영국 내 자회사(Subsidiary) : 해외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 부과.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됨.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Corporate tax self-assessment: CTSA)에 따라 법인이 회계 기간(4.1 ~ 익년 3.31) 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
 - 자진신고 제도로 변경 이후 이전세(Transfer Pricing)과 해외관계회(CFS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세액 등에 대한 책임은 신고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진출법인들은 세금신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전문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세율
 - Full Rate: 30%. £1,500,000 이상 기업이익
 - Small companies' rate: 19%. 당해연도 기업 이익 £300,000 미만 회사
 - Effective marginal rate: £300,001 ~ £1,500,000 기업이익 * 11/400
 - 법인세 30%는 EU 국 중 최저세율로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일조하고 있음.
- 세무조정사항(세금공제)
 -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 접대비
 - 자본적 지출(법률비용, 수선비, 특허, 상표권 관련비용) 등

43. 외환관리

1979. 10. 24 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한 환율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영국에서 주거용 주택은 부동산(estate agency)을 통해 구한다. 부동산은 각 동네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GA 등 큰 부동산은 전국에 체인을 두고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주택 매입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8~12%로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서 작성비 명목으로 100~150 파운드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주택 임차시에는 특히 향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전에 비품목록(inventory list)를 작성, 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퇴거시 상호체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행정절차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의 영국 방문 시 한국측이 공식의제로 제기, 현재 한국인은 외국인 등록대상에서 면제되어 있으며, 주거가 확정 되는데로 주영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면 된다.

다. 계좌개설

부동산거래 및 각종 계약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credit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과금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거 확정 후 소속회사 거래은행 또는 접근이 편리한 은행을 선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전국지점망이 잘 확충되어 있는 바클레이즈, HSBC, Natwest, Halifax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계좌 개설시 현금 카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라. 전화신청

전화는 국영 BT(British Telecom)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반주택의 전화번호 발급 및 라인개설 등의 자세한 문의는 영국 전역에서 국번 없이 152번 BT Residential Service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기 전화선이 있는 경우 전화국원의 직접가정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 3일 내에 개통된다.

마. 비품구입

영국 주택은 가구 및 기본 생활비품 비치여부에 따라 furnished와 unfurnished로 나뉘어진다. furnished house/flat의 경우 침대를 비롯, 그릇 등 기본 생활비품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별다른 비품구입은 필요 없으나, unfurnished의 경우 가구가 전혀 없으므로 현지 부임/이주전 주거하게 될 주택의 종류를 확인한 후 출국전 이에 맞게 물품구입을 하도록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플러그 모양과 헤르쯔가 한국과 달라 특히 모터가 달린 제품은 사용수명이 단축되거나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무리하게 전자제품을 완비해서 이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국이 가전제품을 비롯, 전 공산품의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헤르쯔 차이 등에 큰 관계가 없는 물품은 준비해오는 것도 좋다.

영국은 유통구조가 대형체인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high street라고 불리는 동네의 변화가에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자제품, 가구, 생필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Sainsbury's, Tesco, Waitrose 등의 대형 슈퍼에서도 웬만한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슈퍼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 있다.

바. 주거환경

현지 주재원들은 기차 및 지하철 이용시간 1시간 내외의 교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큰 불편 없이 임차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직원의 경우 임대료는 월 1,000 파운드 -1,500내외가 보통이다.

임차주택 입주시 1개월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선납하게 되는데, 임차 계획 해약시 주택 파손 부분에 대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금 회수에 따른 시비가 일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주인과 타협을 하게 된다.

사. 한국식품 조달여건

런던지역 및 교포 밀집지역에 상당수 한국식품점이 있어 최소한의 한국식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보관상태 및 재고처리상의 문제로 한국식품점들이 다양한 품목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나 주곡, 라면, 양념류, 국산차 등 기본식품들은 현지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 병원·약국

1) 의료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NHS, 국립보건기구)제도로 인해 전국민(체재 외국인 포함)이 간단한 질병에서부터 수술까지 무료로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GP(일반의)가 거의 모든 동네에 있어 GP가 일차적으로 모든 질병을 진료하며 GP는 전문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환자를 인계한다.

2) 병원

GP는 일요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으나 긴급 환자의 경우 특별진료를 하며, 위급한 경우 종합병원의 EMERGENCY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약국

원칙적으로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해 주며, 약은 어린이 및 노인은 무료이고, 그 외에는 유료이며,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을 열며(09:00-17:00), 봉대, 반창고 등 의사처방이 불필요한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

자. 레저 여건

전통의 나라로 불리어지듯이 많은 역사적 유적, 유물, 유산 등이 있다.

박물관과 공원들이 특히 많으며, 많은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들이 연중 공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성(Castle), 정원들이 많으며 많은 여행코스 및 피크닉 장소들이 있어 주말과 휴가철에는 대부분이 여가활동을 하고, 각 커뮤니티 단위로 스포츠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골프의 발상지로서 많은 Public Course (일반대중을 위한 비회원제 골프장) 및 Private Course(회원제)들이 있다. 산재되어 있는 공원에서 축구, 크리켓, 테니스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차. 치안상태

야간에 혼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상태가 좋은 편이나, 최근 런던 시내에서는 총기 사고를 포함한 강력사건들이 가끔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며, 특히 실업증가와 더불어 도난, 강탈사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서울올림픽 개최,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투자,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다.

타. 자녀 교육여건

연령에 따라 영국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며, 정원내 공석이 있는 한 입학신청서 및 여권사본 제출로 곧바로 입학이 된다.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민학교부터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하며, 학교가 많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교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교육 환경은 양호하다.

현재 영국에는 전역에 걸쳐 7개의 한인학교가 있으며,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규교과과정을 학습시키고 있다. (1주일에 토요일에만 교육)